



정책자료 2024-06

# 유사 사회복지사업 전달비용과 지출효율성

고제이  
나원희·오윤섭



BIG  
DATA



## 연구진

|       |            |                                     |
|-------|------------|-------------------------------------|
| 연구책임자 | 고제이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 공동연구진 | 나원희<br>오윤섭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br>前 감사연구원 사회감사연구팀장 |

정책자료 2024-06

## 유사 사회복지사업 전달비용과 지출효율성

발행일 2024년 12월  
발행인 강혜규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전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9년 4월 27일(제2015-000007호)  
인쇄처 (사)아름다운사람들

## 발|간|사

급격한 사회 변화와 재정 여건의 제약 속에서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사회보장지출의 효과성을 높이고,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는 사회복지 분야 유사 사업 가운데 대표적인 사례인 아동돌봄사업을 중심으로, 전달체계에 따른 비용 구조를 분석하고 지출 효율화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특히 이 연구는 다양한 전제와 가정을 바탕으로 수행된 실험적 접근으로, 실제 정책 조정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 진단의 성격을 가진다.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달비용과 손실비용을 추정함으로써, 유사사업의 통합 가능성과 그 한계를 함께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는 완결된 해답이라기보다, 유사사업 조정을 둘러싼 정책 논의를 실증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출발점이자 실험적 시도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향후 보다 정밀한 비용분석과 정책 설계를 위한 체계적인 논의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2024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직무대행  
강 혜 규



# 목 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     |
|--------------------------------------|-----|
| 요약 .....                             | 1   |
| 제1장 서론 .....                         | 5   |
|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 7   |
| 제2절 연구 방법 및 구성 .....                 | 11  |
| 제2장 유사 사업의 개념과 사회보장 분야 관리제도 현황 ..... | 13  |
| 제1절 유사 사업의 개념 .....                  | 15  |
| 제2절 유사 사업의 발생 원인과 관리 의의 .....        | 19  |
| 제3절 우리나라 사회보장 분야 유사 사업 관리 현황 .....   | 25  |
| 제4절 유사 사업 관리체계의 한계 .....             | 42  |
| 제3장 아동돌봄사업 지출효율성 분석 .....            | 45  |
| 제1절 아동돌봄사업 개요 .....                  | 47  |
| 제2절 유사 사업 현황 .....                   | 52  |
| 제3절 비용분석 .....                       | 100 |
| 제4절 전달비용과 지출효율성 .....                | 124 |
|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                   | 133 |
| [부록] 아동돌봄사업 시도 담당 인력 업무기여율 .....     | 147 |
| Abstract .....                       | 159 |

## 표 목차

---

|                                                    |    |
|----------------------------------------------------|----|
| 〈표 2-1〉 GAO의 유사 개념의 구조 .....                       | 16 |
| 〈표 2-2〉 유사 사업 식별을 위한 기준 .....                      | 18 |
| 〈표 2-3〉 유사중복 사업 정비 방식 .....                        | 28 |
| 〈표 2-4〉 유사중복 정비 현황(2011~2020년) .....               | 29 |
| 〈표 2-5〉 보조사업 타당성 기준 중 유사중복 여부 검토사항 .....           | 30 |
| 〈표 2-6〉 협의 기준 .....                                | 32 |
| 〈표 2-7〉 유사중복 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초점 .....                   | 35 |
| 〈표 2-8〉 2023, 2024년도 예산안 분석 기준 유사중복 사업 현황 .....    | 40 |
| 〈표 2-9〉 유사중복 해소 방안 검토 의견 현황 .....                  | 41 |
| 〈표 3-1〉 외부기관 지적 및 조치 사항 .....                      | 49 |
| 〈표 3-2〉 아동돌봄사업 목적 및 설치 근거 .....                    | 55 |
| 〈표 3-3〉 아동돌봄사업의 정책 대상 .....                        | 57 |
| 〈표 3-4〉 아동돌봄사업 센터 입소 우선선정 기준 .....                 | 58 |
| 〈표 3-5〉 아동돌봄사업 운영시간(학기 중) .....                    | 60 |
| 〈표 3-6〉 아동돌봄사업 운영시간(방학 중) .....                    | 61 |
| 〈표 3-7〉 아동돌봄사업 정책 대상 및 운영시간 .....                  | 62 |
| 〈표 3-8〉 아동돌봄사업 프로그램 내용 .....                       | 64 |
| 〈표 3-9〉 지역아동센터 운영 주체 .....                         | 66 |
| 〈표 3-10〉 지역아동센터 연도별 신고정원 및 이용아동 현황 .....           | 67 |
| 〈표 3-11〉 지역아동센터 연도별-학년별 이용아동 현황 .....              | 67 |
| 〈표 3-12〉 지역아동센터 우선돌봄 이용아동 현황(2022년 12월 말 기준) ..... | 68 |
| 〈표 3-13〉 연도별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현황 .....                   | 70 |
| 〈표 3-14〉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아동 현황(2022년 12월 말 기준) .....     | 71 |
| 〈표 3-15〉 다함께돌봄센터 학년별 이용 현황(2022년 12월 말 기준) .....   | 72 |
| 〈표 3-16〉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아동의 가구 유형(2022년 12월 말 기준) ..... | 72 |
| 〈표 3-17〉 다함께돌봄센터 기관연계 이용 현황 (2022년 12월 말 기준) ..... | 73 |
| 〈표 3-18〉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이용아동 현황 .....                  | 74 |



|                                                                   |     |
|-------------------------------------------------------------------|-----|
| 〈표 3-19〉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이용률 .....                                     | 74  |
| 〈표 3-20〉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우선돌봄 아동 이용 현황(2024년 기준) .....                 | 75  |
| 〈표 3-21〉 지역아동센터 추진체계 .....                                        | 79  |
| 〈표 3-22〉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담당 인력 및 업무기여율 .....                         | 80  |
| 〈표 3-23〉 아동권리보장원 지역아동센터 담당 인력 및 업무기여율 가정 .....                    | 81  |
| 〈표 3-24〉 시·도의 담당 인력 및 업무기여율(시·도 일부) .....                         | 83  |
| 〈표 3-25〉 다함께돌봄사업 추진체계 .....                                       | 87  |
| 〈표 3-26〉 보건복지부 담당 인력 및 업무기여율 가정 .....                             | 87  |
| 〈표 3-27〉 아동권리보장원 다함께돌봄센터 담당 인력 및 업무기여율 가정 .....                   | 88  |
| 〈표 3-28〉 시도의 담당 인력 및 업무기여율(시도 일부) .....                           | 89  |
| 〈표 3-29〉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추진체계 .....                                    | 93  |
| 〈표 3-30〉 여성가족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담당 인력 및 업무기여율 가정 .....                  | 94  |
| 〈표 3-31〉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담당 인력 및 업무기여율 추정 .....             | 95  |
| 〈표 3-32〉 시도의 담당 인력 및 업무기여율 추정(시도 일부) .....                        | 96  |
| 〈표 3-33〉 지방자치단체 돌봄 관련 인프라 사업 .....                                | 99  |
| 〈표 3-34〉 지출 항목 분류와 고려사항 .....                                     | 102 |
| 〈표 3-35〉 지역아동센터 예산(국비) .....                                      | 105 |
| 〈표 3-36〉 2023~2024년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단가 .....                           | 106 |
| 〈표 3-37〉 2024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단가 .....                             | 106 |
| 〈표 3-38〉 지역아동센터 지원(지역지원계정)사업에 편성된 다함께돌봄센터<br>운영시간 연장 추가 지원비 ..... | 107 |
| 〈표 3-39〉 지역아동센터 전달비용 추계 .....                                     | 108 |
| 〈표 3-40〉 다함께돌봄센터 예산(국비) .....                                     | 113 |
| 〈표 3-41〉 2022~2024년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단가 .....                          | 114 |
| 〈표 3-42〉 2022~2024년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단가 .....                       | 114 |
| 〈표 3-43〉 다함께돌봄센터 면적별 설치비 차등 지원 기준 .....                           | 115 |
| 〈표 3-44〉 다함께돌봄센터 전달비용 추계 .....                                    | 116 |

---

|                                                       |     |
|-------------------------------------------------------|-----|
| 〈표 3-45〉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세부사업명: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 예산(국비) ... | 120 |
| 〈표 3-46〉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운영비 단가 .....                    | 120 |
| 〈표 3-47〉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전달비용 추계 .....                     | 121 |
| 〈표 3-48〉 2024년 아동돌봄사업 사업비 단가 비교 .....                 | 125 |
| 〈표 3-49〉 아동돌봄사업 비용구조 비교 .....                         | 128 |
| 〈표 3-50〉 2022년 예산불용 현황(국비) .....                      | 129 |
| 〈표 3-51〉 전달비용과 손실비용 추정치 비교(2023년) .....               | 130 |
| 〈부표 1-1〉 지역아동돌봄센터 시도 담당 인력 및 업무기여율(%) .....           | 147 |
| 〈부표 1-2〉 다함께돌봄사업 시도 담당 인력 및 업무기여율(%) .....            | 15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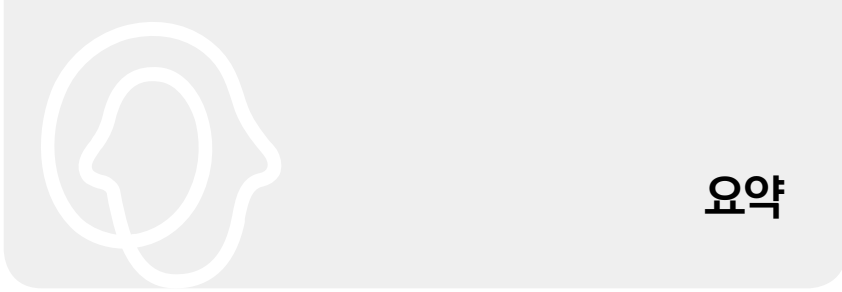
# 그림 목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    |
|--------------------------------------|----|
| [그림 1-1] 국가 채무와 관리재정수지 현황 .....      | 8  |
| [그림 2-1] 유사중복 사업 선정 및 정비 절차 .....    | 28 |
| [그림 2-2] 복지사업 협의·조정 절차 .....         | 33 |
| [그림 2-3] 사회보장제도 협의 미성립 시 조정 절차 ..... | 34 |
| [그림 3-1] 연도별 지역아동센터 현황(개소수) .....    | 65 |
| [그림 3-2] 지역아동센터 전달체계 .....           | 77 |
| [그림 3-3] 다함께돌봄사업 전달체계 .....          | 86 |
| [그림 3-4]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 전달체계 .....    | 92 |





## 요약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정부는 재정적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복지정책의 재정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준칙을 도입하려고 노력하는 한편, 사회보장제도의 통합적 관리와 전달체계 효율화를 중심으로 한 복지재정 혁신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한편에서는 전통적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아동을 양육하는 젊은 부모세대를 포함한 청년층까지 재정적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여 부모급여 도입, 육아휴직 확대 등 자녀양육 부담을 고려한 다양한 정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사한 정책 목적과 대상을 갖는 복지사업이 여러 부처와 기관을 통해 서로 다른 전달체계를 갖춰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확인되며, 그에 따른 비효율성이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복지 분야의 유사 사업 관리 실태를 살펴보고, 최근 재정 투입이 확대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유사 사업으로 지적되고 있는 아동돌봄사업에 대한 비용분석을 통해 지출효율화 가능성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 2. 주요 연구 내용

사회보장 분야의 유사 사업 관리 현황 분석 결과, 몇 가지 한계점을 확인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유사 사업 관리는 행정부와 국회로 이원화되어 재정당국, 각 부처, 사회보장위원회, 감사원 그리고 국회예산정책처 등 다수가 참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다원적 관리체계에서 유사 사업의 판정 기준이나 절차 등이 공개되어 있지 않으며, 판정은 주로 전문가의

## 2 유사 사회복지사업 전달비용과 지출효율성

판단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유사 사업의 검토 시기나 내용이 관리 주체별로 상이하며, 검토 결과에 대한 체계적 관리 또한 미흡하다. 무엇보다 유사 사업 검토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비용이나 사업 조정에 따른 기대 편익에 대한 추정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이 유사 사업 관리에서 가장 큰 걸림돌로 보인다. 유사 사업의 관리는 그것이 발생한 원인에 대한 분석에서 시작하여 각 전달체계에서 나타나는 중복 비용을 확인하고, 유사 사업 추진에 따른 기타 손실비용 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아동돌봄사업을 대상으로 비용분석을 수행하여 상이한 전달체계를 갖는 사업들의 전달비용과 손실비용을 추정하고, 사업 조정에 따른 지출효율화 가능성을 진단해보았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에 대한 비용분석 결과, 2023년 기준 사업별 전달비용은 총비용 대비 각각 2.3%, 3.8%, 1.5%로 나타났다. 세출 사업인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사업에 대하여 불용예산과 유휴자원의 손실비용을 추정한 결과, 총비용 대비 각각 1.5%와 15.8%로 나타났다. 두 사업이 지원 대상과 내용에 있어 차별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통합적 조정을 통해 지출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3. 결론 및 시사점

아동돌봄사업 비용분석 결과, 정책 목적과 대상이 유사한 복지사업이 여러 집행 주체에 의해 서로 다른 전달체계를 통해 개별적으로 추진될 경우, 행정비용의 중복이나 사업 운영에 따른 손실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았다. 이는 유사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의 통합

적 추진을 통해 재정 낭비를 최소화하는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유사 사업의 판정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더불어 표준화된 평가 절차를 마련하여 유사 사업 관리의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유사 사업 검토가 현행과 같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 셋째, 사회복지 분야 유사 사업의 검토는 단순한 사업 조정을 통한 비용 절감이 아니라 정책 목표 달성에 효과적인 조정전략을 구상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밀한 비용분석이 요구되며 더불어 수혜자 편익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유사 사업의 검토 결과나 조정 과정에 대한 정보의 체계적 관리가 요구되며, 해외의 사례를 참고하여 관련 정보의 표준적 기록 및 보고 방식을 마련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돌봄사업에 대한 비용분석을 통해 유사 사업 조정에 따른 지출효율화 가능성을 진단해보고자 하였다. 다만, 가용 자료의 한계로 본 연구의 비용분석 결과는 여러 가지 가정을 전제하고 있다. 특히 검무 관리자의 업무 비율이나 이를 반영한 인건비 추정 및 손실비용의 추계 등을 위한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는 데 제약이 있다는 점에서 엄밀한 비용산출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정부나 국회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유사 사업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의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비용분석의 정확성과 활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자료의 한계를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주요 용어: 유사 사업, 전달비용, 손실비용, 지출효율성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제 1 장

##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방법 및 구성



# 제 1 장 서론

##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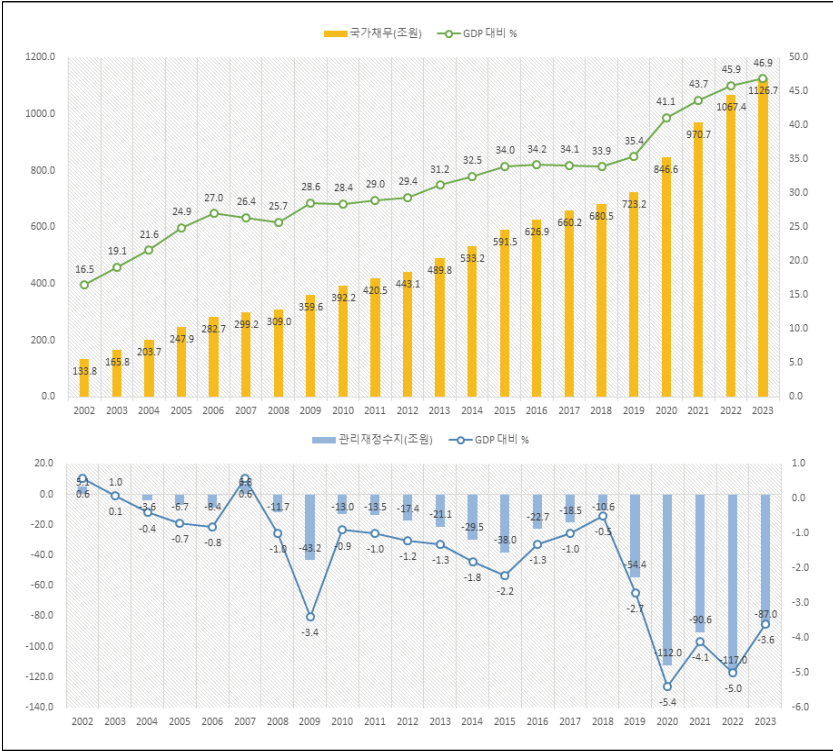
최근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긴축 기조가 강화되고 있고, 동유럽과 중동지역의 분쟁이 격화하면서 세계경기가 하강함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세도 둔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수 기반이 위축되는 가운데, 예상보다 빠른 인구고령화로 사회보장지출을 중심으로 재정수요가 증가하여 재정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이다. 사회보장성 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2007년에 일시적으로 흑자를 기록한 이래 16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위한 확장 재정으로 유례없이 큰 폭의 재정적자가 발생함에 따라 국가채무가 빠르게 누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의 채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순채무를 합산한 국가 채무는 2023년 결산 기준 1,126.7조 원, GDP(2020년 기준연도) 대비 46.9%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하였다(열린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이처럼 우호적이지 않은 재정운용 여건에서 새로이 들어선 윤석열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재정지출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그 일환으로 전통적인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강화와 함께,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생활 안정을 위한 청년자산형성지원 등을 비롯하여 부모급여의 도입, 육아휴직 확대 등 최근 들어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주목받고 있는 청년세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한편에서 재정당국은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을 제도화하고, 의무

8 유사 사회복지사업 전달비용과 지출효율성

지출 사업도 포함하여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모색하고 있다.

[그림 1-1] 국가 채무와 관리재정수지 현황



출처: “국가 채무(결산 기준)”, 열린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 <https://www.openfiscaldata.go.kr/op/ko/sm/UOPKOSMA17?acntSYr=2019&acntEYr=2025&langCd=ko>(검색일: 2024.11.20.); “재정수지”, NABO STATS 재정경제통계시스템, <https://www.nabostatats.go.kr/portal/stat/directStatPage.do>(검색일: 2024.11.20.) 기초로 작성.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22년 9월, 국회에 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 3% 이내로 유지하되, 국가 채무 비율 60% 초과 시 - 2% 이내로 관리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회기 만료에 따라 자동폐기되었다(국가재정법 일부개정 법률안, 의안번호 2117428, 2022.9.20. 제안). 이에 재정당국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와 재정 누수를 차단하기 위하여 '무분별한' 현금지원 사업 등 복지급여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를 예고한 바 있다(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3.4.4.). 이어서 정부는 사회보장 전략 회의(2023.5.31.)를 개최하여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라는 비전 아래, '약자 복지', '서비스 복지', 그리고 '복지재정 혁신'을 중심으로 하는 복지국가 전략을 구체화하였다. 이 중에서 특히 복지재정 혁신과 관련하여 중앙부처 단위에서 사업을 패키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와 사회보장 전달체계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3.5.31.).

자산시장 불황과 수출 부진, 고금리에 따른 신용경색과 소비회복세 둔화 등 경기가 악화하면서 대규모 세수결손이 지속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개선되지 못한다면, 머지않아 복지급여 프로그램을 비롯한 재정사업 전반에 대한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이 요청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제22대 국회에서도 지난 회기에 폐기되었던 재정준칙 도입 법안이 재발의되어 있고(국가재정법 일부개정 법률안, 의안번호 2202844, 2024.8.14. 제안), 재정수지 관리 준칙을 포함하여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등 지출관리를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정건전화법안이 발의되어 있다(재정건전화법안, 의안번호 2200529, 2024.6.17. 제안).

복지급여 프로그램의 경우 그 구성이 의무지출이나 경직성 재량지출로 특정 인구집단을 지원 대상으로 하기에 재정 규모가 크고 따라서 지출관

리의 효과 역시 이에 비례하여 크게 나타난다. 이러한 이유에서 지출구조 조정의 핵심 대상으로 지목되기 쉬우며, 이는 선진국의 재정개혁 사례에서도 어렵지 않게 확인되는 사실이다. 통상적인 상황에서 지출효율성 제고를 위한 일반적인 지출구조조정의 형태는 유사 사업의 조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공공재정 관리에 있어 유사 사업 문제는 주로 연방주의(federalism) 국가인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를 중심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다. 이들 국가에서 유사 사업의 부정적 효과와 관리 필요성은 정치인들이 공공재정의 압박 속에서 공공부문 개혁의 일환으로 빈번히 주장하는 주제이다.

그러나 오스트레일리아와 캐나다 학계에서는 유사 사업의 가외성(redundancy) 특성을 강조하거나, 유사 사업은 독자적인 정책·사업으로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경쟁 결과로서 연방주의(federalism)의 장점으로 인식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유사 사업을 통폐합하여 관리할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중앙과 지방 정부 간의 경쟁이 원활하게 하는 것을 정책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특히 다양한 인적 속성을 지닌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프로그램의 경우 정책 목적과 대상이 유사하더라도 통폐합 같은 지출구조조정의 결과 수급자 편의 변동을 야기할 수 있고 예상하지 못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무엇보다 정책 목적별 사업의 구성과 내용 그리고 세부적인 비용구조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절감 가능한 중복 비용의 존재 여부를 먼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지출효율화 가능성에 대한 진단이 가능할 것이다.

## 제2절 연구 방법 및 구성

충분한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한 급여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고 관련 재정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정부 세입을 재원으로 하여 정책 목적과 대상이 유사한 복지급여 사업에 대한 지출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제2장에서는 유사 사업의 개념과 발생 원인, 그리고 관리의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이어서 행정부 차원과 국회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유사 사업 관리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현행 제도의 한계에 대해 논한다. 제3장은 최근 들어 정책 수요와 투입 재정이 확대된 아동돌봄사업의 지출효율성 분석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는 유사중복 여부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비용구조를 분석하여 전달비용과 손실비용을 추정하는 다음, 유사 사업 조정에 따른 지출효율화 가능성을 검토한다. 제4장은 결론이다.





## 제2장

### 유사 사업의 개념과 사회보장 분야 관리제도 현황

제1절 유사 사업의 개념

제2절 유사 사업의 발생 원인과 관리 의의

제3절 우리나라 사회보장 분야 유사 사업의 관리 현황

제4절 유사 사업 관리체계의 한계



## 제2장 유사 사업의 개념과 사회보장 분야 관리제도 현황

### 제1절 유사 사업의 개념

우리나라에서 ‘유사’라는 개념은 명확히 정해진 정의가 없고, 영어의 중첩(overlap)과 중복(duplication) 등의 개념에서 차용하고 있다. 영어의 중첩(overlap), 중복(duplication), 뒤얽힘(entanglement)은 유사한 현상을 묘사하며, 이 중에서 중첩(overlap)은 이들 단어를 포괄하는 광의의 의미로 정의된다(Brown, 1994).

중첩(overlap)은 두 개 이상의 정부나 기관(이하 기관)이 유사하거나 같은 재화와 서비스를 유사하거나 동일한 정책 대상에게 제공하는 현상을 의미한다.<sup>1)</sup> 또한, 두 개 이상의 기관이 어떤 한 주어진 정책 영역에 활동할 때에도 중첩이 있다고 한다. 이 경우 다소 경멸적 의미로 ‘얽힘’이라고도 표현한다. 중복(duplication)은 방금 정의한 중첩의 부분집합으로 두 개 이상의 기관이 같은 클라이언트에게 같은 재화와 용역을 제공할 때를 의미한다. 두 개 이상의 기관이 동일한 클라이언트에게 동일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고객에게 다소간 추가적인 편익을 제공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로써 광의의 개념인 중첩은 흔히 사용하는 용어인 유사중복에서의 중복뿐만이 아니라 분절 현상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보면 유사 사업의 구분 기준은 서비스/재화, 수혜자, 정책 영역이 된다.

1) 여기서 정부는 중앙정부-지방정부,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학술적인 정의보다 실무적으로 유사 기능 또는 사업으로 인한 문제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사 사업을 정의하기도 한다. 유사 사업 관리를 제도화하여 가장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미국에서 유사 사업의 개념을 정의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의 유사 사업 관리 전담 기구인 연방 최고 감사기구 GAO(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는 공공행정에서 자주 관측되는 조직 또는 사업의 비효율적인 상태를 중첩(overlap), 중복(duplication), 분절(fragmentation)로 구분한다 (GAO, 2015).

〈표 2-1〉 GAO의 유사 개념의 구조

| 판단 대상 1           | 판단 대상 2               | 판단 기준 | 판정         |
|-------------------|-----------------------|-------|------------|
| 복수의 기관,<br>복수의 사업 | 목표-활동/전략,<br>목표-수혜자   | 유사    | 기관, 사업의 중첩 |
| 복수 기관,<br>복수 사업   | 활동,<br>수혜자-서비스        | 동일    | 기관 사업의 중복  |
| 기관, 기관 내 부서       | 국가의 책임<br>영역-개선 기회 존재 | 동일    | 기관 기능의 분절  |

출처: “Fragmentation, Overlap, and Duplication: An evaluation and Management Guide”, GAO, 2015, 재구성.

복수의 연방기관이나 프로그램이 유사한(similar) 목표를 가지고, 목표 달성을 위해 유사한 활동이나 전략을 추구하는 경우 혹은 유사한 수혜자를 그 대상으로 할 때 중첩(overlap)이라고 한다. 반면, 중복(duplication)은 두 개 이상의 기관이나 프로그램이 동일한 활동을 하거나 수혜자에게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한편, 앞에서 설명한 중첩에 속한 분절(fragmentation)은 두 개 이상의 연방정부 기관 또는 한 개의 연방기관 내 두 개 이상의 부서가 동일한 국가의 책임 영역(area of national needs)에 관여되어 있어, 서비스 전달에 있어 개선의 여지가 있는

상태와 관련된다(GAO, 2015, p.11).

GAO의 중첩, 중복, 분절 구분은 공공부문에서의 잠재적 비효율 상태를 기준으로 유형화한 것으로, 명확하게 정의된 사업이나 프로그램 단위 혹은 기관 단위로 접근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비효율성은 기관 또는 부서의 활동/사업, 활동 영역의 차별성(다름, 유사, 동일)을 기준으로 판정되며, 다름에서 동일로 갈수록 추가되는 편익이 적어진다고 보아 비효율성이 큰 것으로 가정한다.

중첩, 중복, 분절 개념은 효율성 관점에서 유사 사업 검토에 응용할 수 있다. 즉, 사업의 내용이 비슷하거나 같은 경우에는 각각 중첩과 중복으로 분류하고,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와 같지 않더라도 활동 영역이 같은 경우에는 기능의 분절로 분류하여, 비효율 가능성을 인정하여 일종의 포괄적 유사성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 실무적 정의에 따르면 앞에서 정의한 중첩과 중복 외에 분절까지도 구분하여 포함하여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의는 우리나라 기획재정부, 감사원, 예산정책처에서도 차용되고 있다.

GAO의 비효율 구분은 유사성 관점에서 보면 포괄적인 접근으로 보이며, 이는 유사성 판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선택한 전략으로 보인다. 판단 대상을 수행 주체, 사업, 활동, 활동영역 단위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유사성을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각 단위에서 포착하지 못한 비효율은 다음 단위에서 포착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GAO가 실무적으로 유사 사업의 식별을 위해 개념을 더욱 확장하여 정립하였지만, 실제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브라질 회계감사원인 TCU(Tribunal de Contas da União)는 GAO의 유사 사업 개념 정의를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층 더 구체화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18 유사 사회복지사업 전달비용과 지출효율성

〈표 2-2〉 유사 사업 식별을 위한 기준

| 관점          | 중첩                                                | 중복                                                     | 분절                                                                                |
|-------------|---------------------------------------------------|--------------------------------------------------------|-----------------------------------------------------------------------------------|
| 목표          | 사업들이 유사한 목표를 가짐                                   | 사업들이 동일 또는 유사한 목표를 가짐                                  | 사업들이 다수의 목표를 가짐<br>목표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모호함<br>사업 목표들이 핵심 이슈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              |
| 고객          | 고객이 유사한 또는 다른 목적 달성을 위해 같은 또는 다른 제공자로부터 서비스를 공급받음 | 고객이 동일한 또는 다른 목적 달성을 위해 같은 또는 다른 과정 또는 주체로부터 서비스를 공급받음 | 사업이 여러 고객 집합을 대상으로 함<br>고객 집합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모호함<br>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고객의 부분 집합이 존재함      |
| 서비스         | 유사한 서비스를 2개 이상의 제공자가 공급                           | 동일한 서비스를 2개 이상의 제공자가 공급                                | 사업 또는 과정이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설계됨<br>사업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광범위하거나 모호하게 구체화 목표 달성하기에는 서비스가 부족함 |
| 관리자         | 관리책임이 복수의 사람에게 부여됨                                | 동일한 관리책임이 복수의 사람에게 부여됨                                 | 관리책임이 여러 관리자에게 나누어져 있음<br>관리책임이 광범위하거나 모호함<br>관리책임이 미부여됨                          |
| 과정          | 1개의 과정 또는 일부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목표를 가짐                | 1개의 과정 또는 과정의 일부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목표를 가짐                 | 사업이 지나치게 많은 과정으로 설계됨<br>과정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정의됨<br>과정이 전무하거나, 부적절한 과정으로 제공됨       |
| 정보 시스템 (IS) | 유사한 정보를 통합하는 IS가 없음                               | 동일한 정보를 통합하는 IS가 없음                                    | IS 지원 사업, 목표, 과정이 다수임<br>IS(유사 정보 유, 무)가 미통합됨<br>IS 지원 사업, 목표, 과정이 전무함            |

출처: “Addressing Fragmentation, Overlap and duplication in the Brazilian Government: an Approach for TCU”, Braga, C.R.A., James, B. 2019, pp.19-20.

Brown과 GAO의 정의를 보면 모두 중첩, 중복, 분절을 공공부문에서 기관 간, 정부 간 정책 추진 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중첩, 중복, 분절 현상이 나타나는 사업을 유사 사업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 제2절 유사 사업의 발생 원인과 관리 의의

### 1. 발생 원인

정책과 사업에서 유사 사업이 발생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유사 사업의 발생 원인은 환경적 요인, 행태적 요인, 구조적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김찬수·오윤섭, 2013, p.25).

먼저, 유사 사업은 외생적인 환경 변화에 대한 정부의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기도 한다. ICT, 인공지능, 경제위기, 선진국의 보호무역 강화 추세, 인구구조 변화, 기후변화 등 기술·경제·사회 환경이 급변하면서, 각국은 새로운 도전과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으로 정책·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신규 기관과 조직이 만들어지면서 유사 사업(중첩, 중복, 분절)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또한, 이러한 환경에서 등장하는 새로운 도전과제는 복합적 처방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부처별, 개인별 대응 시 중첩되고 중복되며 분절된 정책·사업 개발 위험 역시 커진다.

한편, 전자정부 시대가 도래하면서, 공공부문에서 IT 기술의 적용은 일상화되었다. 행정의 전 영역에 정보화 시스템 구축이 확산되고, IT 시스템을 이용한 데이터의 집적과 분석 활용은 행정의 한 축으로 자리 잡으면

서, 유사 시스템 운영이라는 새로운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그동안 비효율 때문에 논의됐던 정책과 사업, 전달체계상의 유사성이 문제가 아니라, 관련 유사 데이터 구축, 정보 처리 과정과 연관된 유사 활동 및 시스템, 운영 등에서의 유사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행태적 요인은 공공관리자의 가치관, 태도, 욕구, 동기에 바탕을 둔 의사결정을 기초로 한다. 대표적인 행태적 요인은 부처 이기주의 또는 할거주의이다. 공공부문에서 공공관리자는 자신이 속한 기관의 권한과 예산을 확대하려는 성향이 강하며, 이 과정에서 다른 부처나 기관의 기능과 중첩 또는 중복되면서, 유사 정책과 사업이 발생하기도 한다(김찬수·오윤섭, 2013; 윤건, 2013, pp.282-283). 또한, 각 정책부서는 정책 오류를 최소화하면서 새로운 정책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모방(benchmarking) 전략을 취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유사 사업의 난립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정부 부처 간 할거주의와 특정 정책 분야에 대한 독점 경향(policy monopoly), 새로운 사업에 대한 경쟁, 그리고 정치권의 인기 영합주의적 지지와 방임을 통해 정책사업 간 모순과 갈등 또는 시너지 창출의 가능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정책사업이 설계되고 추진되는 것도 유사 사업의 증가에 한몫한다(강신욱 외, 2011). 정부 조직에서 기관 간 의사전달이 활발하지 않은 것도 유사중복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 경쟁부처끼리 정보 공개나 공유를 꺼려서 사전에 중복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윤건, 2013, p.283).

마지막으로, 공공부문에서 역사적·제도적으로 지워진 특징인 구조적 원인이 유사 기능과 사업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은 중앙 부처 간, 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능 배분이다. 현재 「정부조직법」과 「지방자치법」은 중앙부처 간 기능 배분과 중앙-지방 간 기능 배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중앙부처는 신규사업을 추진해야

조직이 유지되거나 확대되기 때문에 신규사업을 추진하려는 유인이 크다. 국정과제의 명분과 정부조직법의 추상적인 업무 구분 영역이 결합하면서 중앙정부 각 부처는 업무 관련성을 확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법의 규정이 중앙-지방 간 사무 또는 기능 구분을 위한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사중복 문제가 발생하는 국고보조사업이 설계될 수 있다.

언급된 환경적·행태적·구조적 발생 요인들은 서로 고립되어 유사·중복성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관을 맺으며 정책사업의 유사·중복성을 강화한다.

## 2. 유사 사업 관리의 의의

유사 사업은 관리가 필요한 것인가? 이 사안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상반되는 의견이 대립한다. 유사 사업의 병존을 자원의 낭비로 보는 효율성(efficiency) 관점과 유사 기능, 사업은 시스템 기능 유지에 꼭 필요한 가외성(redundancy)으로 보는 관점이 공존한다. 효율성 관점에서는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업 통폐합 등 유사 사업에 대한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가외성 관점에서는 가외성이 제공하는 긍정적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유사 기능이 적절히 발휘될 수 있는 환경 및 조건 형성 등 관리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아래에서는 각각의 관점에서 유사 사업 관리의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 가. 효율성 관점

효율성 관점에서 유사 현상은 일종의 자원 낭비로 간주된다. 기능 또는 사업의 중첩, 중복 등은 비효율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현상으로 유사한 기능 또는 사업은 통폐합하는 등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속해서 주장됐다. 유사 사업의 비효율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효율성 개념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효율성은 기술적/생산적 효율성(technical/productive efficiency)과 경제적 효율성(economic efficiency)으로 구분된다.<sup>2)</sup> 생산적 효율성은 투입-산출과의 관계와 관련되어 주어진 투입물로 얻어진 산출물의 양으로 표시된다. 이 관점에서 보면, 투입물이 주어져 있을 때 효율적인 프로그램은 더 많은 산출물을 생산한다. 또는 정해진 생산목표를 더 적은 자원을 통해 달성할 수 있으며, 절약된 자원은 다른 생산에 전용할 수 있고, 이로써 한정된 자원으로 더 많은 재화와 용역을 생산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아무리 기술적 효율성이 충족되었더라도 자원을 투입하여 생산한 물자가 쓸모가 없다면 그 생산은 자원을 낭비한 것이다. 자원을 기술적 효율성에 더해 사회적 필요를 최대한 충족시키도록 배분하여야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 경제적 효율성의 기준은 ‘사회적 필요’를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서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구체화한다.

Brown(1994)은 유사 사업으로 인한 비효율성은 가치를 증식시키지 못하는 중복, 목표 간 갈등, 조정비용, 규모의 경제, 과잉생산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첫째, 유사 사업 중 한 개의 사업이 제공하는 편익에 다른 사업이 추가적인 어떤 편익도 제공하지 않은 경우로, 한 개

2) Farrell(1957)은 효율성을 기술적(technical), 자원 배분적(allocative), 경제적(economic) 효율성으로 나누었다.

의 사업만으로도 기대한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이다. 이때 유사 사업은 반드시 동일한 서비스와 동일한 고객이라는 특성을 가질 필요는 없다. 추가적 편익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순전한 자원의 낭비에 해당한다. 둘째, 유사 사업의 경우 한 사업이 추구하는 성과가 다른 유사한 사업으로 인해 상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한 지역에서 이미 한 개의 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가운데 다른 기관이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면, 이 두 기관은 한 지역에서 동일한 목적의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제한된 서비스 인력 등 자원을 놓고 경쟁을 하게 되고, 한 기관의 서비스 확장은 다른 기관의 서비스 축소를 초래할 수 있다. 셋째, 중복 또는 중복으로 인해 조정 메커니즘이 필요하거나 조정비용이 발생한다면, 예를 들어 복수의 중앙부처가 지방자치단체(광역시도)에서 유사한 사업 또는 활동을 시행한다면, 그 결속성(cohesiveness)을 달성하기 위해 조직 간, 정부 간 조정 과정이 필요할 수 있고, 여기에는 직간접 비용이 발생한다. 넷째, 유사한 서비스나 재화를 다수의 기관이 생산함으로써, 규모의 경제의 이익을 누릴 수 없어 비효율이 발생한다. 다수의 기관이 동일한 서비스를 각각 제공하면, 공공부문 전체적으로 얻을 수 있는 규모의 경제를 구현하지 못한다. 단일기관은 소규모의 다수 기관보다 노동의 전문화, 행정과 고정비용을 다량의 생산에 분산시킴으로써 더 효율적인 위치에 있으며, 낮은 비용으로 정해진 서비스와 재화를 생산할 수 있다 (Brown, 1994, pp.30-36).

유사 사업의 효율성 관련 또 다른 주장은 정부 활동이 과잉 상태라는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복수의 부처, 기관 또는 부서가 같은 영역에 개입함으로써 정부의 활동 총량이 커지게 된다. 복수의 주체가 부처 이기주의나 이익단체의 압력으로 상대방을 능가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공급하려고 함으로써 전체 정부 활동은 과잉 공급되게 된다.

경제 전체적으로 자원이 필요한 수준 이상으로 공공부문에 집중됨으로써 경제적으로 비효율적 상태에 이른다.

유사 사업은 경제적 비효율성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의 반응성(responsiveness)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반드시 비효율적이라고 할 수 없다. 복수의 주체가 공급하는 경우, 자신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찾지 못한 개인이나 사업체는 유사 사업을 통해 다른 주체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즉, 클라이언트들은 경쟁 중인 복수의 주체가 제공한 프로그램 사이에서 판단하며, 공급 주체는 각각 다른 선호에 반응하는 것이다. 정부가 대중의 선호에 가장 잘 부합하는 영역으로 자원을 배치하는 것이므로 경제적 효율성은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 나. 가외성 관점

Landau(1969)는 중첩, 중복, 분절 등 유사 현상에 내려지던 필요 이상의 과잉(excess)이며, 쓸모없고, 낭비적이어서 제거되어야 하는 부정적 의미의 가외성(redundancy)을 사회시스템이 갖추어야 할 긍정적이고 권장하여야 할 현상으로 설명하였다. 기능의 중첩과 중복 현상은 일종의 가외성(redundancy)으로, 시스템 기능의 정상화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주장한다. 가외성 개념은 행정에서의 유사중복 논의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시스템의 기능을 극대화하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서 중첩과 중복은 의도적으로 시스템 설계 시 또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연방주의(federalism)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의도적인 가외성(intentional redundancy) 상태를 유발하여 후생을 극대화하려는 정치 제도이며, 이러한 정치체제에서는 중복, 중첩, 분절 같은 유사 기능과 사

업은 보편적이다(Aagaard, 2011, p.278).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오차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체계의 신뢰성과 적응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회시스템은 가외적인 기능의 원칙(principle of redundant functions)에 의해 형성된다. 그러나 가외성은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여유 역량(excess capacity)을 의미하기 때문에(Streeter, 1992, p.97) 반드시 비용의 증대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능률성의 대척점 이므로 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최적화하는 접점을 찾아야 한다(김영평, 1995, pp.204-206).

### 제3절 우리나라 사회보장 분야 유사 사업 관리 현황

우리나라에서 유사 사업의 관리는 크게 정부 차원의 관리와 국회 차원의 관리로 나눌 수 있다. 정부 차원의 유사 사업 관리는 크게 기획재정부 차원, 각 부처 단위, 정책별 관련 위원회 단위, 최고 감사기구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국회 차원에서는 예결산 심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행되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유사중복 사업 검토 작업이 있다.

#### 1.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의 유사 사업 관리는 지출 관리정책의 일환으로 지출 규모 관리정책과 함께 추진되고 있는 재정사업관리를 통해 이루어진다. 재정사업관리정책은 재정사업의 필요성 검토 후 불필요한 사업 정비, 재정사업 유사중복성 확인 후 통폐합을 통한 사업 정비, 재정사업 지출구조를 효율화하여 감축 방안 제시,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나뉜다(지은초, 2023. p.51).

우리나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에서 유사 사업과 관련한 최초 규정은 2009년 1월 30일 신설된 제22조(목적 외 사용금지) 제3항에 유사한 목적의 사업에 한하여 보조금 사업자의 보조금 사용을 허용한다는 조항이다. 이 조항은 당초 보조사업자와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원래의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었다. 그러나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고 자체 노력으로 보조금 예산을 절감한 경우 그 초과액을 반납하지 않고,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보조금 사용에 대한 동기를 제공할 목적으로 개정되었다(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09.1.30. 일부 개정).

2011년 동법 제20조 보조금 통합 운용에서 그동안 영세 보조사업 중심의 통합을 유사 사업 통합으로 확장하는 조항을 신설하면서부터 유사 사업에 대한 관리 의지가 반영되기 시작한다. 기획재정부는 보조금법을 개정한 이유에 대해 보조사업 집행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보조금 관리체계 개선 등을 들고 있다. 보조금법 제 20조 3항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목적이 유사한 보조사업의 예산을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다. 동법 시행령은 보조사업 통합 가능성 및 효율성 등 통합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관리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 이로써 기획재정부는 유사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 권한이 부여되었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0조(보조금의 통합 운용)

- ③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목적이 유사한 보조사업의 예산을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25.]

## 【시행령】

## 제8조(보조금의 통합기준 등)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사업 목적이 유사한 보조사업의 예산을 통합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각 보조사업 간 집행금액의 변경 가능성, 보조사업 예산을 통합 집행하는 경우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사업 간 집행금액의 변경 가능 범위, 구체적인 집행 방법 및 절차 등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10.26.]

출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11.7.25., 일부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 10.26., 일부개정.

이에 기획재정부는 2016년 12월 개정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 4조 제3항 중앙관서장의 의무에서 유사중복 사업의 통폐합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2017년부터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을 운영하여 유사중복 사업을 검증하여 통폐합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 【통합관리지침】

## 제4조(보조사업 관련자의 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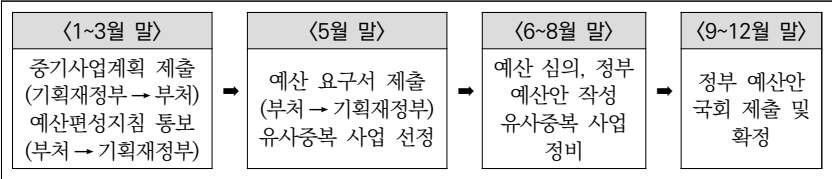
- ② 기획재정부장관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2. 보조시스템 구축 및 운영, 통합관리지침 마련  
 ...  
 ③ 중앙관서의 장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2. 부정수급 실태점검 및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출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기획재정부공고 제2017-1호, 2016.12.23., 일부개정.

우리나라에서 유사중복 점검 및 통폐합은 별도의 추진체계를 두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획재정부가 주도하는 예산 편성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감사원, 2017. p.5). 기획재정부는 예산편성지침 예산안 요구

양식의 세부사업 설명자료에 외부 지적 사항 및 평가 결과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는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평가항목이 포함된 재정사업 자율평가(심층평가 포함) 결과와 국회 등의 지적 사항 등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정부 부처의 예산 요구안에는 유사중복에 관한 각종 정부 평가 결과와 외부 지적 사항을 기재하며, 예산 부서는 이를 총괄하여 개별적으로 점검한다.

[그림 2-1] 유사중복 사업 선정 및 정비 절차



출처: “복지사업 협의·조정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 감사원, 2017, p.6.

한편 2024년 예산안 편성지침에서는 강력한 지출구조 혁신, 재정사업 관리 강화, 투자재원 확충 다변화의 3대 재정혁신 방안을 설정하였고, 이중 재정사업 관리 강화 방안에는 유사중복 사업 정비가 포함되어 있다.

아래 표는 기재부의 유사중복 사업 정비 방식을 요약한 내용이다.

<표 2-3> 유사중복 사업 정비 방식

| 구분  | 내용                                                                                                                                                                                                                                                                                                |
|-----|---------------------------------------------------------------------------------------------------------------------------------------------------------------------------------------------------------------------------------------------------------------------------------------------------|
| 통폐합 | 부처별 기능에 부합하도록 프로그램, 단위사업 등을 통폐합<br>(예시 1) 정책 여건 변동, 사업방식 변경으로 통폐합이 필요한 사업<br>(예시 2) 2개 이상의 유사 사업 또는 중복 사업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에 분산 추진되고 있는 사업<br>(예시 3) 하나의 수행기관이 여러 개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 사업을 통폐합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br>*동일 출연기관을 통해 집행되는 여러 사업을 OO출연사업으로 신설하여 통합<br>(예시 4) 소규모 사업 등 별도 재정사업으로 유지할 필요가 낮은 경우 등 |

| 구분              | 내용                                                                     |
|-----------------|------------------------------------------------------------------------|
| 전달체계 등<br>부분 통합 | 사업 목적에 부합하도록 수행기관, 전달체계, 대상자 등 일부 통합<br>(예시) 정책 여건 변동, 사업 방식이 변경된 경우 등 |
| 연계·범위 조정        | 사업 목적에 부합하도록 수행기관, 전달체계, 대상자 등 일부 통합<br>(예시) 정책 여건 변동, 사업 방식이 변경된 경우 등 |
| 예산 규모 조정        |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능별 역할을 감안하여 투자 규모 조정 등                                     |

출처: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으로 공공부문 구조개혁에 도움을!”, 기획재정부 공식 블로그, 2015. 2024.7.8. 검색 [https://blog.naver.com/mosfnet/220483853473?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photoView=3](https://blog.naver.com/mosfnet/220483853473?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photoView=3).

다음은 지난 10여 년 동안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유사 사업 관리 현황을 요약한 것이다.

〈표 2-4〉 유사중복 정비 현황(2011~2020년)

| 시기   | 지출관리 중 유사중복 사업 정비 현황                             |
|------|--------------------------------------------------|
| 2011 | 성과 미흡 사업, 유사중복 사업 정비                             |
| 2014 |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조세지출-예산사업 중복지원 조정 연계                |
| 2015 | 유사중복 통폐합을 통한 300개 이상 사업 정비 추진                    |
| 2016 | 유사중복 통폐합: 2015년 예산 370개, 2016년 예산안 300여 개 사업 통폐합 |
| 2017 | 유사중복 통폐합: 205개 사업(365개 → 160개) 통폐합               |
| 2020 |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

출처: “지출구조조정의 성과 및 과제”, 2023, 지은초, pp.48-49, 〈표 IV-5〉 수정 인용.

2.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2017) 시행사항을 반영하여 2020년 「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을 개정하였다.

동 규정 제4조(보조사업 관련자의 의무)는 재정운용 담당관에게 유사 중복 사업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유사중복 통폐합 계획의 수립 등 총괄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있다. 또한, 동 규정 5조에서는 보조사업을 신설하거나 계속하고자 할 때는 사업의 타당성 검토 시 반드시 유사중복성을 검토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보조사업의 타당성 점검 기준은 사업 목적의 타당성, 사업 내용의 명확성과 구체성, 유사중복성 여부,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사중복성 여부의 판단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2-5〉 보조사업 타당성 기준 중 유사중복 여부 검토사항

| 세부 기준   | 검토 사항                                                                                                                                                                |
|---------|----------------------------------------------------------------------------------------------------------------------------------------------------------------------|
| 유사중복 여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타 사업과 유사중복성이 있는가?</li> <li>- 타 부처의 다른 사업과 유사중복성이 있는가?</li> <li>- 사업 목적 및 수혜 대상의 유사성이 외부 기관 및 내부 평가에서 지적된 적이 있는가?</li> </ul> |

출처: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별표 1] 보조사업 선정기준(제5조 관련), 2020.9.11., 타법 개정.

또한 제11조(보조사업적격성 심사)에서는 보조금 규모가 100억 원 이상인 신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주관하에 유사중복 여부 등을 포함한 적격성 심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제12조(교부 조건)에서는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부처 차원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유사 사업 관련 지침에 따라 유사중복 사업의 구체적인 관리를 위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 중이다. 주로 매년 예산 요구안 작성 시 신규사업이나 계속사업에 대한 사업 타당성 검토를 통해 유사중복성을 점검하며, 일정 규모(100억 원) 이상인 경우 사전 적격성 심사 요청서를 작성할 때 유사중복성 검토가 이루어진다.

### 3. 사회보장위원회

복지부 차원에서 부처 내 사업 그리고 타 부처 사업과의 유사중복성을 검토하는 것 이외에 사회보장위원회 차원에서의 검토 및 조정 과정도 존재한다.

이 과정은 사회보장사업이 그 특성상 한번 시작하면 중단하기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은 타 지방자치단체에도 영향을 미치기 쉬우므로 사업의 신설·변경과 관련하여 사전에 협의,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정부는 2012년 1월 26일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을 통해 신규사업을 추진하거나 기존 사업의 지원 대상이나 지원 수준 등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와 사전에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협의하는 ‘복지사업 협의·조정 제도’를 도입하였다.

-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 -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 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가 이를 조정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출처: 사회보장기본법, 2012. 1. 26., 전부개정.

사회보장사업 관련 협의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신설·변경 사업의 타당성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이루어진다. 특히 유사사업과 관련해서는 기존 사업과의 관계와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협의 항목을 통해 검토가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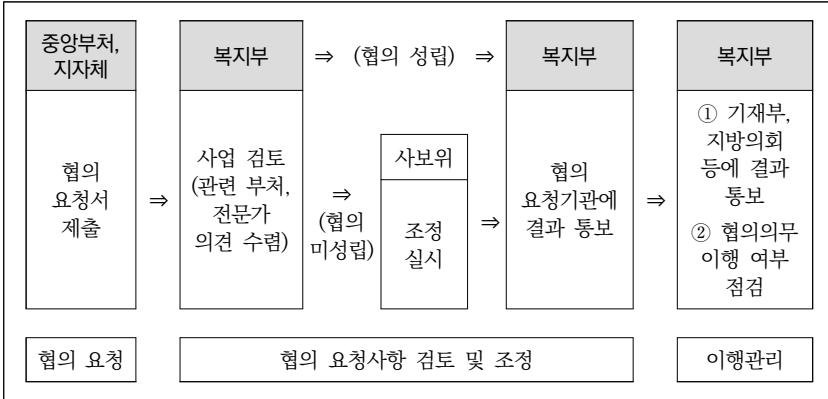
〈표 2-6〉 협의 기준

| 협의 항목               | 내용                                                                                                                           |
|---------------------|------------------------------------------------------------------------------------------------------------------------------|
| 1. 사업의 타당성          | ① 사업 추진 근거의 명확성(추진 근거)<br>② 지역문제의 시급성, 지역 내 우선순위, 지역 특수성<br>③ 사업 취지(목적)와 사업 내용 간 연계성<br>④ 공공재원 투입의 필요성                       |
| 2. 기존 제도와의 관계       | ⑤ 사회보장제도 중장기 발전 전략과의 부합 여부<br>⑥ 지원 대상자에 대한 유사 급여·서비스 여부<br>⑦ 사업 시행에 따른 중복, 누락(해소), 편중(해소) 효과<br>⑧ 정부와 지자체 사업 간 연계를 통한 보충성 확보 |
| 3.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 ⑨ 전달체계의 과부하/분절성 심화에 따른 비효율 여부<br>⑩ 수혜자 접근성(편의성), 급여 제공의 적시성                                                                  |
| 4. 재정에 미치는 영향       | ⑪ 재원 규모 및 조달 계획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br>⑫ 재정 집행의 효율성                                                                                  |
| 5.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 ⑬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보건의료계획 등 중장기 사업 계획 수립<br>⑭ 지역 주민참여 및 복지 수요 반영<br>⑮ 지역자원 활용 및 연계                                                |
| 6. 기타               | ⑯ 성과지표 활용 등 성과관리 계획 수립<br>⑰ 제도 시행 예정 시기의 적절성                                                                                 |

출처: 2024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 2024,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p. 31.

사회보장위원회의 신설 또는 변경 협의 대상은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동법 제3조 제1호)’ 및 ‘평생 사회안전망(동법 제3조 제5호)’에 해당하는 제도이다. 사회보장제도는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개인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 및 서비스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평생 사회안전망은 생애 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 욕구와 특정한 사회 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 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이로써 선별적 복지뿐만이 아니라 보편적 복지제도를 포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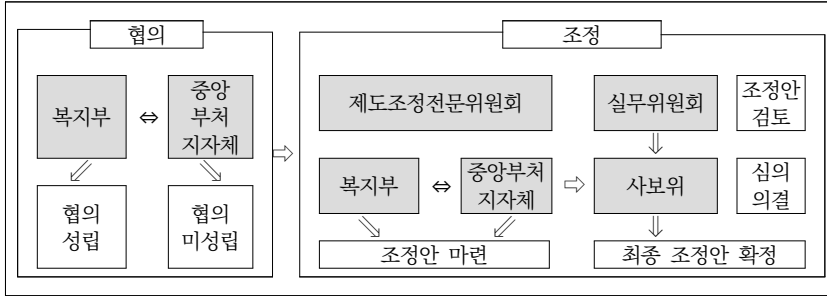
[그림 2-2] 복지사업 협의·조정 절차



출처: “복지사업 협의·조정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 2021, 감사원, p.6.

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 협의 요청기관은 사업 시행 전년도 4월 말까지 협의요청서 등을 첨부하여 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한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서 관련 부처 의견조회,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협의 요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협의 요청기관에 협의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전문적인 판단을 요하는 신규 쟁점 사업의 경우에는 최대 6개월 이내에 협의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또한 협의 결과는 예산 심의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사업과 지자체 사업에 대하여 각각 기획재정부와 지방의회에 통보된다. 한편, 복지부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사회보장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아래 그림과 같다(감사원 2021, pp.5-6).

[그림 2-3] 사회보장제도 협의 미성립 시 조정 절차



출처: “복지사업 협의·조정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 2021, 감사원, p.6.

#### 4. 감사원

감사원의 유사·중복 사업 관리는 감사 사항별로 유사·중복성 검토, 기획재정부의 유사 사업 통폐합 조치 등을 대상으로 한 감사, 유사중복 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의 3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진다.

먼저 감사원은 재정사업의 유사·중복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고, 따라서 감사 사항별로 필요한 경우 유사·중복 실태에 관한 감사초점을 설정하여 감사를 수행한다. 특히 유사·중복성이 심하다고 판단되는 영역인 일자리 사업, 복지사업, 연구개발사업, 농업 분야 사업 등에 대해서는 유사·중복성에 대한 점검이 관련 분야 감사 시 자주 이루어진다. 감사원 연구조직인 감사연구원을 통해 유사중복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둘째, 정부가 2013년부터 재정 개혁의 일환으로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을 추진하면서, 2017년 주요 재정사업 유사중복 통폐합 등 추진실태 감사와 같이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조치만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감사는 주로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시행되며, 따라서 운영성과 분석에서 운영상의 문제점 발굴을 목표로 감사가 진행된다.

〈표 2-7〉 유사중복 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초점

| 구분                         |                    | 내용                                                                                                                       |
|----------------------------|--------------------|--------------------------------------------------------------------------------------------------------------------------|
| 유사중복<br>사업<br>통폐합<br>추진 점검 | 성과분석               | 어떠한 방법을 통해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이 추진되었는지?<br>유사중복 사업의 통폐합 효과로 절감된 예산액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br>유사중복 사업의 통폐합에 다른 사업 수 감축 실적을 적정하게 산정하고 있는지? |
|                            | 개별사업<br>정비의<br>적정성 | 통폐합 후 법령상 예산상 제약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는 사례는 없는지?<br>실질적인 정비 없이 형식적으로 통합하거나 불완전하게 통폐합한 사례는 없는지?                                |
| 추가 정비 필요사업<br>점검 분야        |                    | 부처 간 협력 및 연계가 필요한 사업은 없는지?<br>부처 간 업무 구분이 모호하여 비효율이 우려되는 사업은 없는지?<br>유사한 사업을 여러 회계에서 분산 추진하고 있는 사례는 없는지?                 |

출처: “주요 재정사업 유사중복 통폐합 등 추진실태”, 감사보고서, 2017, 감사원, p.2.

감사원은 이 감사에서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실적 관리를 개선할 것과 일부 개별사업의 통폐합이 부실하게 이루어진 사례, 추가로 통폐합이 필요한 사례들을 발굴하여 제시하였다.

셋째, 또한, 2021년 복지사업 협의·조정 운영실태와 같이 유사중복 관리제도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기도 한다. 2016~2017년에 걸쳐 감사원은 유사중복 사업의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14~2015년에 걸쳐 정부가 실시한 유사중복 통폐합 추진실태를 점검한 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 감사원은 영국의 최고감사기구 NAO가 영국 내 유사 사업과 관련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감사를 실시하는 것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5. 국회예산정책처

행정부 차원의 유사 사업 점검 외에 국회 차원의 유사중복 검토도 이루어진다. 국회 지원조직인 예산정책처는 오래전부터 부처별 예산안 분석에서 유사중복에 대한 검토를 수행해 왔고, 세입세출 결산 분석에 유사중복에 대한 시정 조치 사항을 수록해왔다.<sup>3)</sup> 주로 예산안 분석 시 분야 또는 부문별 분석에서 유사중복에 관한 지적 사항을 다루어 왔다.

그러나 2008년 “2009년도 예산안 분석 I (총괄 및 중점분석)”에서는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부분을 구분해서 부처별 예산안 분석 결과 중 유사중복 사업을 요약하여 별도로 제시하고 있다(국회예산정책처, 2008). 이때 정책 수행의 대상과 영역, 정책 수단 등을 유사 사업 판단 기준으로 고려하였고,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이들 유사중복 사업 및 예산액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국회예산정책처, 2008. p.28).

특히, 2009년도에 2010 예산안 분석 가이드라인<sup>4)</sup>과 2010년에 2009 회계연도 결산 분석 가이드라인이 공개되면서 예·결산 분석에서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분석이 체계화되기 시작했다.

예산안 분석 가이드라인은 예산사업을 계속사업, 신규사업, 새로운 정책 테마와 관련하여 다수 부처에서 도입되는 사업으로 나누어 유사중복을 분석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 중 신규사업은 부처 내 타 사업, 타 부처 사업과의 유사중복성을 검토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유사중복 검토는 예산안 심의에서 관련 사업들을 조정하도록 할 목적으로 분석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국회예산정책처, 2009a, p.48; 국회예산정책처, 2010a, pp.36-37).

3)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에 공개된 가장 오랜 자료는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분석이다.

4) 예산안 분석 가이드라인은 2010년에 다시 발표되었다.

한편, 결산 분석 가이드라인은 결산 분석의 기본방향에 맞춘 12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 ‘가이드라인 9: 유사한 사업의 중복 추진 점검’에서는 (i) 사업의 목적이나 대상이 유사한 사업을 중복으로 추진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는 없는지 점검하고 (ii) 사업 간 연계를 통해 효과성을 증대할 수 있음에도 연계가 미흡한 사업을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하였다(국회예산정책처, 2010c, p.22). 이로써 사업 목적, 사업 대상, 사업의 분절 등이 유사중복의 판단 기준으로 제시된 것이다. 부처별 결산 분석 시 반드시 유사중복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상임위·예결위 지적 사항에 유사중복 사업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예산안 분석 및 결산 분석 가이드라인에 유사중복에 대한 검토가 명시됨으로써 유사중복 검토 내용은 국회 예결산 분석 보고서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sup>5)</sup>

2010, 2011 회계연도에 대한 예산안 분석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었지만, 2010년도와 2011년 예산안 분석에서 유사중복에 대한 검토는 그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2010 회계연도에는 신규사업에서 유사중복 사업을 검토하여 목록을 제시하였고(국회예산정책처, 2009b), 2011 회계연도에는 계속사업과 신규사업 중 유사중복 사업을 검토하여 제시하였다(국회예산정책처, 2010b).

2012년 예산안을 분석하면서, 예산정책처는 유사중복 사업(목적, 내용, 업무 영역)이 예산 낭비의 소지가 있고, 사업관리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등 재정정책의 효과를 악화시키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시정조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예산사업을 연례적 유사·중복 지적사업,<sup>6)</sup> 신규사업 중 유사중복 사업, 유사중복으로 인해 집행실적이나 성과

5) 2017~2022년 기간에는 유사중복성 분석이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고, 부처별 예결산 분석에 포함되어 제시되었다.

6) 과거 국회의 유사중복 지적에 대한 시정 요구를 받은 사업, 유사중복으로 인해 집행실적

가 부진한 사업,<sup>7)</sup> 법, 제도가 미비한 유사중복 사업<sup>8)</sup>의 4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유사중복성을 검토하였고, 각 유사중복 사업별로 사업 간 통합 조정, 예산액 삭감 등 유사중복성 해소를 위한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이어 “지난 4년간 유사중복 사업 현황과 문제점”에서는 유사중복 사업의 시정 요구 사항과 조치 결과 내역, 부처별 유사중복 사업 현황과 문제점, 2010년 결산 심사 결과와 2012년도 예산안 현황, 과거 4년 유사중복 사업 목록을 제시하였다(국회예산정책처, 2011a).

2013년 예산안 분석에서는 사업 유형에 부처 간 또는 부처 내에서 다수사업과의 유사·중복성이 있는 사업을 추가하여 분석하였다(국회예산정책처, 2012a).

2014년 예산안 분석에서는 유사중복성 판단 기준에 대한 논의를 미국 감사원 GAO, 기획재정부, 감사원의 정의에 기초하여 검토한 후 유사중복 사업을 사업의 목적, 내용, 및 지원 대상이 서로 비슷하거나 같아서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통폐합 검토가 필요한 사업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사업 유형별 분석도 이전의 5개 유형을 부처 내(신규, 기존), 부처 간(신규, 기존) 유사·중복 사업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국회예산정책처, 2013, p.160).

2015년 예산안 분석에서는 전년도 분석틀을 유지하고, 추가된 “개선 방안”에서는 유형별 유사중복의 발생 원인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부처 간 유사중복 사업은 부처 간 기능·업무 중첩 등이 그 원인이며, 부처 내 유사중복 사업은 이해관계가 관련된 경우가 많아 자체적인

---

이나 성과가 부진한 사업

7) 목적과 내용이 유사한 사업을 중복적으로 추진할 경우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지원조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부처의 사업

8) 유사중복 우려가 있는 사업의 경우 법령의 시행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거나 법적 근거가 없이 수행되는 사업

조정을 통한 근본적인 해결이 쉽지 않은 것으로 진단하였다. 그럼에도 유사중복 사업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산안 편성 시 정부 내에서 부처 간 또는 부처 내 유사·중복 사업의 사전 검증 및 국무조정실과 감사원의 정부정책 조정·평가기능을 강화하여 조정 기제의 제고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어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유사중복으로 지적된 사업 중에서 사업 간 통합, 조정, 시정조치가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 결산 심사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다(국회예산정책처, 2014).

2016년에는 유사중복 사업을 사업 목표, 사업 내용, 지원 대상을 기준으로 2개 이상의 사업이 유사하거나 동일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황, 나. 분석의견 (1) 부처 내 유사중복 (2) 부처 간 유사중복으로 구분하여 예산안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국회예산정책처, 2015a). 이로써 유사중복 시정조치 현황은 예산안 분석에서 삭제되었다. 2017년 예산안 분석에서 유사중복 분석은 전년도 분석 틀에 유사중복 개선 방안이 추가되었다(국회예산정책처, 2016). 개선 방안은 크게 ① 사업 간 연계로 효과성을 제고, ② 사업의 필요성을 고려하되 차별화 또는 역할 분담 ③ 예산의 비효율성을 유발하므로 통·폐합 또는 예산의 조정을 통한 정비라는 3가지 방향으로 제시되었다.

2017년에서 2021년까지는 유사중복성 검토 내용이 별도로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부처별 예산안 분석 내용에 유사중복성 검토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sup>9)</sup> 2022년과 2023년에는 다시 예산안을 기준으로 그 예산안 분석 과정에서 유사중복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예산안 총괄분석에 포함되었다. 유사중복 사업의 정의로는 미국 감사원 GAO의 분절(fragmentation), 유사(overlap), 중복(duplication)과 한국 감사원의

9) 2018년 예산안부터 2022년 예산안이 이에 해당한다.

정의를 제시하였다. 유사중복 분석 의견에서는 먼저, 총평에서 유사중복 분석 결과를 제시했는데, 예산안 심사에서 유사중복 해소를 위한 논의 방향으로 (i)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필요성 재검토, (ii) 유사 사업 간 통합 추진, (iii) 사업 간 차별성 강화, (iv) 중복지원 배제, (v) 사업 간 연계 추진이 있고, 논의 방향별 사업들이 제시되었다. 이어 유형별 분석은 부처 내, 부처 간, 부처 내·부처 간으로 나누어 유형별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 2022, 2023).

〈표 2-8〉 2023, 2024년도 예산안 분석 기준 유사중복 사업 현황

(단위: 개, 백만 원)

| 구분   | 부처 내 |        | 부처 간 |        | 부처 내·부처 간 |       | 합계   |         |
|------|------|--------|------|--------|-----------|-------|------|---------|
|      | 사업 수 | 예산안    | 사업 수 | 예산안    | 사업 수      | 예산안   | 사업 수 | 예산안     |
| 2023 | 10   | 96,156 | 11   | 63,285 | 4         | 6,969 | 25   | 166,410 |
| 2024 | 14   | 71,344 | 9    | 87,113 | 3         | 5,249 | 26   | 163,706 |

출처: 2023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I, 국회예산정책처, 2022, p.278; 2024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I, 국회예산정책처, 2023, p. 280.

그리고 식별된 유사 사업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필요성을 재검토하거나, 중복지원을 배제하고, 유사 사업 간 통합 추진, 사업 간 연계 추진, 사업 간 차별성 강화 등 유사성과 중복성 해소를 위한 조치 등 다양한 권고 방향을 제시하였다.

〈표 2-9〉 유사중복 해소 방안 검토 의견 현황

(단위: 개, 백만 원)

| 구분   |      | 신규 추진<br>재검토 | 중복 지원<br>배제 필요 | 통합 추진<br>필요 | 사업 간<br>연계 필요 | 차별성<br>강화 필요 | 합계      |
|------|------|--------------|----------------|-------------|---------------|--------------|---------|
| 2023 | 사업 수 | 5            | 6              | 7           | 2             | 5            | 25      |
|      | 예산안  | 12,923       | 10,867         | 90,267      | 14,102        | 38,251       | 166,410 |
| 2024 | 사업 수 | 2            | 6              | 5           | 5             | 8            | 26      |
|      | 예산안  | 30,000       | 23,338         | 33,773      | 22,634        | 53,961       | 163,706 |

출처: 2023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I, 국회예산정책처, 2022, p.280; 2024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I, 국회예산정책처, 2023, p.282.

결산 분석에서 유사중복성에 대한 분석은 예산 분석에서보다는 그 중요성이 작으나, 부처별 유사중복성을 검토하여 해소 방안을 제시하여 왔다. 2010 회계연도부터는 사업 목적, 사업 내용, 업무 영역을 기준으로 유사중복성을 판단하였다(국회예산정책처, 2011b). 결산 분석에서 유사중복성이 확인된 사업의 경우 재정사업 심층평가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유사중복성을 확정하고, 통폐합 방안, 사업 간 통합 조정을 통한 업무 효율화 및 사업 차별화를 하도록 권고하였으며, 이를 실현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산액 삭감을 제안하기도 했다.

2011 회계연도 결산 분석부터는 신규 재정사업 분석에서 유사중복성을 분석하여 사업 현황 및 해소 방안을 제시하기 시작하였고(국회예산정책처, 2012b), 2014 회계연도부터는 결산 분석 내용 중 신규사업에 대한 결산 분석 시에 집행실적, 사업계획 또는 사전검토, 성과분석 등과 기준과 함께 유사중복성을 검토하여 신규 재정사업 분석(또는 결산)에 그 결과가 기록되었다(국회예산정책처, 2015b). 예산안에서 이루어진 분석보다는 그 심도가 떨어지나 특히 신규사업에서의 유사중복성에 관한 관심은 지속되었다. 그러나 2017년 결산 분석에서 신규사업에 관한 결산 분석 기준이 바뀌면서 유사중복성 기준이 삭제되었고, 이후 유사중복성의

중요성은 급격히 떨어져 현재에는 부처별 사업 분석 내에서 유사중복이 언급되는 수준이다.

현재 국회 차원에서는 예산정책처에서 예산안을 기준으로 매년 유사중복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며, 그 검토 결과는 각 상임위원회에 제출되어 예산 심의에 활용된다. 유사중복 사업 식별 결과는 국회의 예산안 심사와 정에서 유사성과 중복성 해소를 위한 논의에 활용되며, 해당 사업 소관 부처의 집행 과정에서 유사·중복성 해소 방안을 모색하고, 추진에도 활용토록 하고 있다.

## 제4절 유사 사업 관리체계의 한계

우리나라 유사 사업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정부와 국회로 이원화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 각 부처, 사회보장위원회, 감사원, 국회 예산정책처 등 다수의 주체가 참여한다. 우리나라 유사 사업 관리제도에서의 한계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행정부 내에는 기재부, 각 부처, 정책 분야별 위원회별로 각각 유사 사업에 대해 검토를 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공개된 구체적인 유사 사업 판정 기준이 없으며, 부처와 위원회에서 실행하는 유사 사업 검토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때 전문가마다 각자의 기준으로 판정한다. 이렇게 각각 검토된 의견은 각 부처와 위원회의 담당 부서가 보관하며, 그 유사성을 지적받았거나, 판정받은 사업들의 특성뿐만 아니라 유사중복이라고 검토된 결과는 거의 공개되지 않는다.

둘째, 유사 사업 검토 시기도 기획재정부에서는 비정기적으로 점점 시점을 정해 유사 사업을 점검하는 방식이며, 부처에서는 예산안 제출과 재

정사업 자율평가 시기에 맞추어 주로 점검한다. 사회보장위원회에서는 신규사업 또는 기존 사업의 변경 시 유사 사업을 검토한다. 점검 주체별로 유사 사업 검토 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에, 검토 및 조치 결과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고하는 주체가 없다면 유사 사업의 관리 경험은 축적되지 못하고, 검토 당시의 이슈로 잠시 부각되었다가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유사 사업 판단 결과는 부처별 예산안 작성 시 기재부에 보고하게 되어 있으나, 아직 행정부의 자체적인 유사 사업 검토 결과와 조정 실적에 대한 명확한 통계가 집계된 것은 없다.

셋째, 국회의 예산정책처에서 수행 중인 유사중복 검토도 유사중복을 검토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는 점 등은 행정부 차원의 유사 사업 관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행정부 차원의 유사중복 검토와 큰 차이를 보였던 점은 유사중복 검토 결과에 대한 보고이다. 예산안 분석 보고 또는 결산안 분석보고서를 통해 회계연도별로 검토 결과와 유사 사업에 대한 조치 사항을 정리·보고하여 왔었다. 그러나 2018년 이후부터는 예·결산 분석 보고서에서 제외되었고, 사업별 분석에 포함되어 언급되는 수준이다.

넷째, 유사 사업에 대한 판정 기준이 모호하여, 유사 사업으로 판정되었어도, 조정 방향을 정하기 쉽지 않다. 유사 사업 판단 기준이 정해지지 않는다면, 해당 사업 관리자와 관련자 이외에는 어떤 기준에 의해 유사 사업으로 판정되었는지 알 수 없고, 이러한 유사 사업 발생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으므로, 유사 사업의 체계적 관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유사 사업의 발생은 환경적, 행태적, 구조적 요인 등 다양하므로, 불필요한 유사 사업을 관리하려면, 유사 사업의 식별 후 조치뿐만이 아니라 유사 사업이 만들어지는 환경을 이해하여, 문제를 해소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사회보장위원회 차원에서는 협의·조정 과정을 통해 유사 사업의 조정이 이루어지나, 유사 사업 관리가 예산 조정에 강하게 초점을 두

는 경향이 많다. 영국이나 미국의 경우처럼 행정조직의 수직·수평 분화가 가속화되거나, 복잡한 사안의 해결을 위한 정책사업의 경우, 다부처의 개입이 필수적이며, 이때 부처 간 협업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특히 사업 및 전달체계 분절 등과 같은 유사 사업의 발생은 필연적이다.

이상과 같은 우리나라 유사 사업 관리에 있어서의 한계 중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점은 유사 사업에 따른 비용이나 유사 사업 정비를 통해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편익 추계 등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혹은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 최고감사기구 GAO가 연차보고서에서 유사 사업 판정을 받은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유사 사업의 관리는 그 발생 원인을 포함한 전달체계에서 발생하는 중복 비용, 유사 사업 추진에 따른 기타의 기회비용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요한다. 이에 이하에서는 대표적인 다부처 사업인 아동돌봄지원 사업별로 전달체계에 따라 투입되는 자원의 구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중복 비용의 발생 여부와 규모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또한 효율성 관점에서 여러 사업을 통해 동시에 아동돌봄이라는 공공서비스가 공급됨으로써 발생하는 기회비용을 고려하여 유사 사업에 대한 비용분석을 수행하여 지출효율화 가능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 제3장

### 아동돌봄사업 지출효율성 분석

제1절 아동돌봄사업 개요

제2절 유사 사업 현황

제3절 비용분석

제4절 전달비용과 지출효율성



## 제3 장 아동돌봄사업 지출효율성 분석

### 제1절 아동돌봄사업 개요

#### 1. 아동돌봄사업의 정책 경과

우리나라의 아동돌봄은 취약아동 지원을 중심으로 출발하여 지원 대상과 내용을 달리하는 제도의 양적 성장을 통해 오늘날과 같은 보편적 아동돌봄체제로 성립하였다. 2000년대 초반부터 아동돌봄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면서 본격적인 제도화가 이루어졌다. 1980년대부터 민간 영역에서 공부방 형태로 운영되었던 시설들이 2004년 지역아동센터로 편입되면서 저소득가구 아동 등 취약아동의 돌봄지원이 시작되었다. 같은 해에 교육부 고시를 통해 초등돌봄교실이 도입되면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서비스가 시작되었고, 다음 해인 2005년에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시범사업이 추진되면서 유초등아동 돌봄사업이 확대되었다. 2013년 무상보육체계의 성립은 보편적 아동돌봄의 실현을 지원하였고, 2018년 온종일돌봄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돌봄서비스로 확대되면서 아동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018년 4월 정부는 「온종일돌봄체계 구축·운영 계획」을 발표하고,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2020~2024)」의 4대 추진과제 중 하나로 ‘공정한 출발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를 제시하였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에서는 ‘아동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강조한 바 있다. 이어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46)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촘촘한 아동돌봄체계 마련」을 명

시하고, 교육 분야의 핵심 국정과제로 맞춤형 교육·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유보통합 추진과 늘봄학교 시범운영 및 확산 계획을 제시하였다. 최근의 아동돌봄 정책의 주요 경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아동돌봄이 ‘개인·가정책임’에서 ‘국가책임’이라는 인식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루었고, 둘째, 소득수준 등에 따른 이용 자격에 차등을 둔 ‘선별적 돌봄’에서 ‘보편적 돌봄’으로 확대됨에 따라 대상에 대한 관점이 전환되었다. 셋째, 초등돌봄교실 위주로 추진되었던 ‘학교돌봄’에서 다함께 돌봄, 온종일 돌봄생태계 구축, 학교돌봄터 사업 등 신규 정책들이 추진됨에 따라 ‘마을돌봄’으로 돌봄 문화가 확산되었다. 넷째, 기존 사업 확산 및 신규 사업 추진에 따른 양적 확대를 이루었다(김은희, 2023, p. 1.).

## 2. 아동돌봄사업의 유사중복성 문제

아동돌봄정책은 여러 정부 부처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대표적인 다부처 사업이다. 현재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각각의 소관에 따라 다양한 돌봄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들은 부처 간, 중앙-지방, 돌봄기관 간에 분절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로 인해 부처 간·기관 간 연계와 협력이 어려워지고 유사·중복 사업 문제가 발생하여, 역할 조정과 상호 연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이태수, 2011; 이정임 외, 2013; 조영희, 2014; 구슬이, 2014; 김송이, 2022, p.17에서 재인용).

다함께돌봄센터는 기존의 지역아동센터에서 제공하던 취약 아동 보호 기능을 확장하여, 지역사회 내 초등학생 아동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다함께돌봄센터의 안정적 운영은 보편적인 아동복지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다. 이는 취약계층이나 요보호 아동에게 국한된 서비스 체계가 갖는 낙인 효과를 줄이고,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의 일상성을 보장하는 보편적 돌봄서비스로 자리 잡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다함께돌봄센터 설립과 관련하여 방과 후의 아동 보호를 위해 지역아동센터가 양적으로 증가하고, 초등학교 내의 돌봄교실도 활성화된 상황에서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또 설립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박영숙, 2017; 박유리, 2022, p.3에서 재인용), 같은 서비스가 지역 내에서 기관을 달리하여 중복적으로 제공되는 것은 복지 서비스의 효용성을 낮추고, 정작 필요한 자원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윤근, 2018; 박유리, 2022, p.3에서 재인용) 등 유사중복의 문제가 끊임없이 거론되어 왔다. 국회와 각종 위원회에서도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 지원 방식 개선, 다함께돌봄사업의 실집행률 제고, 공간 적합성 검토,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사업의 통합 방안 검토 등 다양한 개선 과제를 지적해왔다(〈표 3-1〉). 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두 사업의 통합을 포함한 보육돌봄체계의 중장기 개편을 논의하고 그에 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자 했으나(2021년), 윤석열 정부에서 2024년 시작된 ‘늘봄학교’에서도 이들 사업이 연계·통합되지 않고 각각 운영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표 3-1〉 외부기관 지적 및 조치 사항

| 구분       | 기관          | 지적 사항                                                                                      | 조치                                                                                                                                  |
|----------|-------------|--------------------------------------------------------------------------------------------|-------------------------------------------------------------------------------------------------------------------------------------|
| 지역 아동 센터 | 국회 결산 시정 요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0 결산) 특성별 지역 아동센터의 운영비 지원 방식 개선 필요</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개선방안」 연구용역 추진을 통해 개선 방안 마련</li> <li>특화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방식 개선(안) 도출</li> </ul> |

50 유사 사회복지사업 전달비용과 지출효율성

| 구분        | 기관          | 지적 사항                                                                                                                                                                                                                                    | 조치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2 결산) 실제 근무 인원이 예산 편성 기준에 미달, 주요 원인은 낮은 임금 수준으로 인한 이직 및 채용 반복에 기인함. 취약계층 아동 돌봄공백 최소화를 위해 아동복지교사 처우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사항은 확인되지 않음</li> </ul>                                                                                                                       |
| 다함께 돌봄 사업 | 국회 결산 시정 요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0 결산) 다함께돌봄사업 실행을 개선을 위한 정부 차원의 방안 마련 필요(제도 개선)</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행행렬 제고를 위하여 다함께 돌봄센터 의무설치 등 설치 가능 장소 확대에 필요한 제도 개선 지속 추진</li> <li>◦ 지자체 수요 및 예산 집행률 등을 고려하여 2022년 다함께돌봄센터 신규 설치 규모 조정 (850 → 450개소)</li> </ul>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1 결산) 예산의 명확한 추계를 통해 실행행렬 제고, 설치 센터의 면적 및 공간 상황이 돌봄활동에 적합한지 검토 필요, 사업효율성 제고를 위한 성과목표 재설정(주의, 제도 개선)</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3년 예산부터 지자체 설치 수요를 반영하도록 편성 방식 변경, 시설 규모에 따른 설치비를 차등 지급함으로써 장소 확보가 더 용이하도록 지원 기준을 개선, 2022년부터 성과관리 내실화 및 돌봄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성과지표를 '이용자 만족도'로 변경</li> </ul>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2 결산) 다함께돌봄사업 및 학교돌봄터 사업 실적 저조. 학교돌봄터사업은 교육부 초등돌봄교실 사업과 대상, 이용방식, 운영시간, 사업 내용 등이 유사함. 재정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학교돌봄터 사업추진방식에 대한 조율과 더불어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 사업과 적절한 연계 및 조정 방안을 마련할 것(시정 요구, 제도 개선)</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사항은 별도로 제시되지 않음</li> </ul>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3 결산) 보건복지부는 돌봄 수요에 상응하도록 다함께돌봄센터 확충과 실행행렬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시정 요구, 제도 개선)</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사항은 확인되지 않음</li> </ul>                                                                                                                       |

| 구분 | 기관       | 지적 사항                                                                                            | 조치                                                      |
|----|----------|--------------------------------------------------------------------------------------------------|---------------------------------------------------------|
|    | 국정<br>감사 | ◦ (2021년)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의 목적과 프로그램이 유사한 만큼 아동돌봄센터를 통합하는 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 ◦ 「보육돌봄체계 중장기 개편방안 연구용역」 추진 및 연구보고서 검토를 통한 중장기 정책 방향 논의 |
|    |          | ◦ (2022년)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불투명 및 학교돌봄터 축소로 인해 온종일 돌봄체계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교육부, 지자체와 협력하여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 | ◦ 교육부, 지자체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돌봄 확충 및 서비스 질 제고 노력 지속         |

출처: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보건복지부, 2023b, pp. 3953-3954, p.3965;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보건복지부, 2024c, pp. 3941-3942, p.3953;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 p. 1150, p.1182;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 p.1229. 참고하여 저자 작성.

### 3. 연구 범위 및 분석 자료

아동돌봄사업은 초등돌봄서비스의 빈틈이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온종일 돌봄을 목표로 하며, 국가, 교육청, 지자체가 협력하여 공공의 책무성을 바탕으로 아동돌봄의 통합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표방한다. 2024년 교육부를 중심으로 ‘늘봄학교’가 시행된 이후, 늘봄학교를 중심으로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의 돌봄사업이 보조적인 지원체계로 변화하면서, 정책 대상에 대한 중첩성 때문에 충원율이 낮은 시설에 대한 강사·관리직원 인건비 문제, 시스템 구축 비용 등 전달체계의 지출효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장에서는 향후 사업의 조정 가능성을 가늠해보기 위하여, 늘봄학교와 병행하여 추진되고 있는 지역사회 기반 돌봄체계인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중심으로 사업 간 중첩성과 전달체계에서 발생하는 전달비용과 기회비용을 비교해보고, 지출효율화 가

능성을 가늠해 보고자 한다. 연구 내용으로는 제2절에서 각 부처가 시행하는 아동돌봄사업의 정책 대상, 이용자 및 시설 현황을 살펴보고, 제3절에서는 전달체계에 따른 소요 예산과 예산 항목별 구성을 분석하여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사업들이 행정 및 재정적 비효율을 초래하는지 검토한다.

## 제2절 유사 사업 현황

### 1. 중앙정부의 아동돌봄사업 분석

#### 가. 추진 근거 및 목적

아동돌봄사업 중 가장 먼저 시작된 지역아동센터<sup>10)</sup>는 전통적으로 사회경제적 취약성을 지닌 아동의 전방위적 복지 지원에 방점을 두고 추진된 사업으로, 「아동복지법」 제50조~제52조에 따른다. 동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동조 제2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동조 제3항).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동조 제4항). 「아동복지법」 제51조는 휴업·폐업 등의 신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52조는 아동복지시설의 종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10) 80년대부터 빈곤 밀집 지역 중심으로 지역사회에서 자생적으로 운영된 복지시설(최초에는 민간 공부방으로 시작됨)

는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지역아동센터 등이 있고,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의미한다(「아동복지법」 제50조~제52조).

다함께돌봄사업은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할 목적으로 도입되었다(보건복지부, 2024b, p.3.). 다함께돌봄센터 도입은 지역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돌봄 공동체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내 돌봄 수요 및 자원을 고려하여 아동돌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내 틈새 돌봄 기능을 강화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이다(보건복지부, 2024b p.3). 정부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계획」을 발표(2018.4.4.)함에 따라 2019년 12월 말 기준 173개 다함께돌봄센터가 설치·운영되었고(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4c, p.3.), 2020년 424개소, 2021년 694개소, 2022년 903개소, 그리고 2023년 현재 1,048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4c, p.4.).<sup>11)</sup> 「아동복지법」 제44조 2에 따르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

11)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의 2022년 12월 말 기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다함께돌봄센터는 2022년 12월 말 기준으로 설치된 903개소, 운영 중인 센터는 870개소임. 그러나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 사업 설명자료에는 2022년 말 기준 829개소로 제시되어 있음(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4b), 2022년 12월 말 기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현황 보고서, p.4.; 보건복지부, (2023b), 2023년도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p. 3961).

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이 해당된다(「아동복지법」 제44조 2).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은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한다. 이 법 제48조 2는 ‘청소년 방과후 활동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의 정규교육으로 보호할 수 없는 시간 동안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 및 활동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고, 종합적인 지원 방안 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청소년기본법」 제48조 2).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33조에서는 종합기본계획 수립, 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사업 실시 및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여성가족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지원센터를 방과 후 사업 운영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지원센터는 방과 후 종합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방과 후사업의 운영관리, 컨설팅 및 평가,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 지원을 위한 국·내외 자료조사, 방과후사업의 업무 종사자를 위한 교육연수, 방과후사업의 운영모형 개발, 그 밖에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을 수행한다(「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33조 5).

〈표 3-2〉 아동돌봄사업 목적 및 설치 근거

| 구분           | 보건복지부                                                                   |                                                  | 여성가족부                                       |
|--------------|-------------------------------------------------------------------------|--------------------------------------------------|---------------------------------------------|
|              | 지역아동센터                                                                  | 다함께돌봄사업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
| 추진 시기        | 2004년                                                                   | 2017년                                            | 2005년                                       |
| 목적           |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br>지역사회 아동(특히<br>사회경제적 취약성을 지닌<br>아동)을 위한 종합적인<br>복지서비스 제공 | 지역 중심<br>돌봄체계 구축,<br>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br>청소년을 위한<br>종합서비스 제공         |
| 설치 근거<br>(법) | 「아동복지법」<br>제50조~제52조<br>(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br>종류)                            | 「아동복지법」<br>제44조의 2<br>(다함께돌봄센터)<br>「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 「청소년기본법」<br>제48조의 2<br>(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br>지원) |
| 재원           | 국고보조금<br>지방비                                                            | 국고보조금<br>지방비                                     | 국고보조금<br>지방비                                |

출처: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의 성과 및 과제”, 이희현·김효정·최형주·김은경·손호성, 2021, 한국  
교육개발원, pp. 39-40. 참고하여 저자 수정.

나. 정책 대상 및 운영시간

사업별 지원 대상의 연령 기준을 보면, 지역아동센터는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단,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1) 지역아동센터를 이용 중인 아동이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경우의 고등학생, 2) 18세 이상이나 계속해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고등학생, 3)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형제·자매가 미취학아동이거나 고등학생인 경우와 형제·자매가 지역아동센터를 모두 이용하려는 경우로 그중 1명이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이고 다른 1명은 미취학아동 또는 고등학생인 경우, 4)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 18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5) 지역적인 특성 등으로 어린이집·유치원 등을 이용할 수 없는 미취학 아동 등은 예외적으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4a, p.38.). 한편, 지역아동센터와 중복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료를 지원받으면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아학비를 지원받으면서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 등 유사한 목적으로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와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없다. 다만, 교육부의 늘봄학교(초등돌봄교실)와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이용하는 아동의 시간대를 달리하여 이용하는 경우, 미취학 아동이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미 이용하고 있는 경우라도 취학 전 졸업반인 경우,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등을 이미 이용하고 있으나 시간대를 달리하여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미취학 아동 등은 이용이 가능하다(보건복지부, 2024a, pp.40-4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지원 대상은 초등 4학년~중등 3학년까지이며(여성가족부, 2024b, p.1.), 다함께돌봄센터는 돌봄이 필요한 만 6~12세 초등학생 아동 혹은 6세이나 입학 전 아동을 포함한다(보건복지부, 2024b, p.53.). 다함께돌봄센터는 다른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미 이용 중인 경우에도 병행 이용이 필요할 때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함께돌봄센터와 병행 이용하려는 다른 돌봄시설이 병행 이용에 대한 별도 기준을 가지고 있을 경우, 이를 따라 병행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병행 이용 기준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와 함께 이용이 불가능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24b, p.56.). 즉,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는 기본적으로 중복 이용이 불가능한 구조임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세 개 사업은 만 9세에서 만 12세 아동을 모두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어 중첩성이 확인되며, 특히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는 만 6세에서 8세 구간에서도 중첩성이 나타난다. 아동돌봄사업 중에서 정책 대상 연령이 가장 넓은 사업은 지역아동센터로 만 13세에서 만 17세까지의 연령대를 모두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 아동돌봄사업의 정책 대상

| 구분           | 정책 대상 연령 |    |    |    |    |     |     |     |     |     |        |
|--------------|----------|----|----|----|----|-----|-----|-----|-----|-----|--------|
|              | 6세 미만    | 6세 | 7세 | 8세 | 9세 | 10세 | 11세 | 12세 | 13세 | 14세 | 15~17세 |
| 지역아동센터       |          |    |    |    |    |     |     |     |     |     |        |
| 다함께돌봄센터      |          |    |    |    |    |     |     |     |     |     |        |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          |    |    |    |    |     |     |     |     |     |        |

주: 연두색 블록은 세 기관이 모두 정책 대상으로 하며, 노란색 블록은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만 해당, 파란색 블록은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만 해당하고, 보라색 블록은 지역아동센터만 정책 대상으로 함.

출처: “2024 다함께돌봄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24b, p. 53;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 정책 사례집”,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2023, p. 50; “2024년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침”, 여성가족부, 2024b, p.1. 참고하여 저자 작성.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시설별 신고정원의 50% 이상은 우선돌봄 아동이어야 하며, 일반 아동은 50% 범위 내에서 등록이 가능하다(기존 40%에서 2022년에 일반 아동 이용 비율 확대). 우선돌봄 아동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자활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등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인 아동,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2호에 따른 모자 가족 또는 부자 가족의 아동,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이루어진 조손 가구의 아동,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인 아동,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아동이 해당된다(보건복지부, 2024a, pp. 38-39.). 또한, 일반 아동에 해당되나 보호자가 질병(중증 만성질환, 암 등)으로 가정 내 돌봄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보호자의 실직으로 가정 내 돌봄이 열악하여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귀가 후 장시간 홀로 남겨 지거나 열악한 지역 여건으로 사회복지관 등 다른 기관의 이용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맞벌이 가정의 아동으로서 다함께돌봄센터 등 다른 기관을 이용하기가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등도 돌봄 특례를 적용받는다(보건복지부, 2024a, p.39.). 한편, 다함께돌봄센터 입소 우선순위를 보면 소득수준은 무관하며, 맞벌이 가정 및 한부모 가정의 부 혹은 모가 일하는 경우, 다자녀 가구 및 가구 내 장애·요양·환자가 있어 자녀에 대한 돌봄이 어려운 경우, 초등학교 저학년, 부모의 근로시간이 길거나 출퇴근 소요 시간이 긴 경우가 해당한다(보건복지부, 2024b, p.53.).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우선순위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조손·다문화·장애 가정·2자녀 이상 가정·맞벌이 가정 등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이 해당한다(여성가족부, 2024b, p.1.).

〈표 3-4〉 아동돌봄사업 센터 입소 우선선정 기준

| 구분           | 우선선정 기준 |     |                           |                       |                              |        |                      |               |
|--------------|---------|-----|---------------------------|-----------------------|------------------------------|--------|----------------------|---------------|
|              | 맞벌이 가정  | 저학년 | 저소득층 가정 <sup>1)2)3)</sup> | 장애인인 아동 <sup>4)</sup> | 한부모 <sup>5)</sup> , 조손 가정 자녀 | 다자녀 가정 | 다문화 가정 <sup>6)</sup> | 부모의 출퇴근 소요 시간 |
| 지역아동센터       |         |     |                           |                       |                              |        |                      |               |
| 다함께돌봄센터      |         |     |                           |                       |                              |        |                      |               |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         |     |                           |                       |                              |        |                      |               |

주: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2) 차상위 자활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등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3)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아동 또는 등록 장애인인 아동  
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2호에 따른 모자 가족 또는 부자 가족의 아동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 가족의 아동  
7) 빚진 부분은 일반 아동 중 돌봄 필요성이 인정되어 돌봄 특례를 적용받는 아동임.  
8) 연두색 블록은 세 개 사업이 모두 정책 대상으로 하며, 노란색 블록은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만 해당, 파란색 블록은 다함께돌봄센터만 정책 대상으로 함.  
출처: “2024 다함께돌봄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24b, p. 53;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2023, p. 50; “2024년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침”, 여성가족부, 2024b, p.1. 참고하여 저자 작성.

〈표 3-4〉에 정리된 우선선정 기준을 보면 세 개 사업 모두 공통적으로 맞벌이, 장애아동, 한부모·조손 가정 및 다자녀 가정에 대한 우선순위를 인정하고 있으며, 저소득가정과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해서는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에서 적용되는 등 전반적으로 입소 우선순위 기준에 큰 차이가 없다.

운영시간을 살펴보면, 지역아동센터는 월~금요일을 포함하여 주 5일, 1일 8시간 이상을 상시 운영하여야 하며, 학기 중은 14~20시, 방학(단기 방학 포함)은 12~17시가 필수 운영시간이다(보건복지부, 2024a, p.46.). 매학기 시작 전후(2~3월, 8~9월) 각 센터는 이용아동별로 돌봄이 필요한 시간을 확인하고, 19시 이후에 돌봄 수요가 없는 센터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자체에 보고한 후 필수 운영시간을 14~19시로 조정이 가능하다(보건복지부, 2024a, p. 46.). 다함께돌봄센터의 표준 서비스 제공 시간은 (학기 중 14~20시, 방학 중 09~18시) 주 5일(월~금요일 포함), 1일 8시간 이상을 상시 운영해야 한다. 돌봄서비스 신청서를 토대로 매 학기 시작(3월, 9월) 전후 센터별로 돌봄 필요시간 등 수요를 의무적으로 파악하여, 19시 이후 돌봄 수요가 없는 경우 시설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할 지자체에 보고한 후 표준 서비스 제공 시간을 14~19시로 조정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24b, p.54.).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방과 후부터 21시까지이며, 일반형과 주말형으로 구분된다. 일반형은 일 4시수를 기준으로 주 5~6일 주중 및 토요일 운영을 권장하고 있다. 주말형은 일 5시수로 주말 1~2일(토~일) 운영하며, 학교 방학 기간에는 평일 운영이 가능하다(여성가족부, 2024b, p.2.).

아동돌봄사업 운영시간을 종합하면,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다함께돌봄센터는 모두 14시부터 20시까지 공통적으로 운영된다. 13시부터 14시까지 운영하는 기관은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방과후아카

데미로 나타났으며, 20시 이후에는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sup>12)</sup>가 운영을 종료한다.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만이 21시까지 운영되며, 시간에 대한 돌봄 공백을 보완하는 역할은 세 기관 간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표 3-5〉 아동돌봄사업 운영시간(학기 중)

| 구분   | 수업 전<br>(7시~8시40분) | 방과 후   |        |        |        | 장소   |
|------|--------------------|--------|--------|--------|--------|------|
|      |                    | 13~15시 | 15~17시 | 17~20시 | 20~21시 |      |
| 학기 중 | 지역아동센터             |        |        |        |        | 학교 밖 |
|      | 다함께돌봄센터            |        |        |        |        | 학교 밖 |
|      | 청소년 방과후<br>아카데미    |        |        |        |        | 학교 밖 |

주: 연두색 블록은 세 기관 모두에 해당하며, 노란색 블록은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만 해당, 파란색 블록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만 해당함.

출처: “2024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24a, p. 46; “2024 다함께돌봄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24b, p. 54.; “2024년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침”, 여성가족부, 2024b, p.2. 참고하여 저자 작성.

방학 중 운영시간을 살펴보면, 세 기관 모두 공통적으로 12시부터 17시까지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경우 방학 중 운영시간에 대한 명확한 안내가 없기 때문에 학기 중과 동일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함께돌봄센터는 방학 중 돌봄 수요를 반영하여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추가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보다 유연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17시부터

12) 실제 운영시간에 대한 조사 결과, 다함께돌봄센터는 학기 중에 10~19시까지 운영하는 센터가 413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9~19시까지 운영하는 센터가 203개소로 나타났다. 표준 서비스 제공 시간인 20시까지 운영하는 센터는 174개소로 전체 기관의 2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4b, p.21).

18시까지 추가 운영하며, 18시 이후에도 유일하게 운영을 지속하여 늦은 시간까지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표 3-6〉 아동돌봄사업 운영시간(방학 중)

| 구분          |                | 9시 이전 | 9~12시 | 12~17시 | 17~18시 | 18시 이후 |
|-------------|----------------|-------|-------|--------|--------|--------|
| 방<br>학<br>중 | 지역아동센터         |       |       |        |        |        |
|             | 다함께돌봄센터        |       |       |        |        |        |
|             | 청소년방과후<br>아카데미 |       |       |        |        |        |

주: 연두색 블록은 세 기관 모두에 해당하며, 노란색 블록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와 다함께돌봄센터에 해당, 파란색 블록은 다함께돌봄센터만 해당, 보라색 블록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만 해당함.  
출처: “2024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24a, p. 46; “2024 다함께돌봄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24b, p. 54.; “2024년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침”, 여성가족부, 2024b, p.2. 참고하여 저자 작성.

종합해볼 때,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는 연령 기준이 거의 비슷하나, 지역아동센터는 만 13~17세 아동까지 추가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다. 아동이 두 기관을 중복하여 이용할 수 없으며, 전체 이용아동의 50% 이상이 우선돌봄 아동이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지역아동센터는 주로 우선돌봄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다함께돌봄사업은 일반 아동을 중심으로 정책 대상을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다함께돌봄사업에서도 일정 비율의 우선돌봄 아동이 이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 3-7〉 아동돌봄사업 정책 대상 및 운영시간

| 구분            |    | 지역아동센터                                    | 다함께돌봄센터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
|---------------|----|-------------------------------------------|-------------------------------------------|--------------------------------------------------|
| 정책 대상         |    |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 만 6~12세(초등학생) 이하 아동(6세이나 입학 전 아동 포함)      | 초등 4학년~중학교 3학년                                   |
| 지원 기준 (소득 기준) |    | 취약계층 아동과 일반 아동 (중위소득 100% 이하)             |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등 (소득수준 무관)               | 한부모·조손·다문화·장애 가정·2자녀 가정·맞벌이 가정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
| 지원 형태         |    | 무상 (일반 아동에 한해 이용료 월 10만 원 한도 내에서 수납 가능)   | 이용료 자부담 (월 10만 원 이내, 간식비는 실비 별도 부담)       | 무상                                               |
| 운영 시간         | 학기 | 주 5일<br>1일 8시간 상시 운영<br>(필수 운영시간: 14~20시) | 주 5일<br>1일 8시간 상시 운영<br>(표준 운영시간: 14~19시) | 방과 후~21시                                         |
|               | 방학 | 필수 운영시간<br>12~17시                         | 표준 운영시간<br>9~18시                          | 여건에 따라 자율                                        |

출처: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의 성과 및 과제”, 이희현·김효정·최형주·김은경·손호성, 2021, 한국 교육개발원, pp. 39-40; “2024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24a, pp. 157-158; “2024년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침”, 여성가족부, 2024b, pp.1-2. 참고하여 저자 작성.

다. 프로그램 내용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은 기본프로그램과 특화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기본프로그램은 보호·교육·문화·정서지원·지역사회 영역으로 구성되며, 특화프로그램은 지역사회 특수성 및 주요 대상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운영 프로그램을 의미한다(보건복지부, 2024a, p.47.). 다함께돌봄센터는 기본, 공통프로그램, 특별활동으로 구성되며, 저학년(1~2학년)은 놀이와 휴식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고학년(3~6학년)은 학습 및 야외·체험활동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보건복지부, 2024b, p.60.). 청소년

년방과후아카데미는 급식, 귀가 지도, 상담 등 기본적인 생활 지원 과정인 공통 운영 과정(5시수)과 지역의 특성 및 참여 청소년 수요에 따른 선택 운영 과정(15시수)으로 구분된다(여성가족부, 2024b, pp.11-12.). 선택 운영 과정을 체험·역량강화 활동으로 선택할 경우 역량개발, 진로체험, 동아리활동, 자원봉사, 디지털 체험활동, 지역사회프로그램 참여 등이 주시수로 편성되며, 보충학습과 교과학습에 대한 학습지원은 보조적으로 운영된다. 반면, 학습지원활동을 선택할 경우에는 반대로 보충학습, 교과학습 등이 주시수로 편성되고 체험·역량강화 활동은 보조적으로 운영된다(여성가족부, 2024b, p.11.).

운영 프로그램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달리 구성된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아동의 학습지원에 초점을 두고 다양한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비해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의 생활 전반에 대한 관리에 초점을 두고 보호와 교육을 포함한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다함께돌봄센터는 주로 놀이와 휴식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한편,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세분화된 구성을 갖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다함께돌봄센터와 매우 유사한 점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두 사업의 프로그램은 공통적으로 숙제지도를 포함한 학습지도와 안전 및 생활교육, 아동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체육활동, 참여활동을 한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참여활동을 ‘특별활동’이라는 명칭으로 사용하며,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은 지역아동센터에 한정된다.

〈표 3-8〉 아동돌봄사업 프로그램 내용

| 구분         | 지역아동센터                                                    |                                                                     |                                                        | 다함께돌봄센터                                                            |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                                                  |
|------------|-----------------------------------------------------------|---------------------------------------------------------------------|--------------------------------------------------------|--------------------------------------------------------------------|--------------------------------------------------------------|----------------------------------------------------------------|--------------------------------------------------|
| 운영 프로그램    | 보호(생활, 안전), 교육(학습, 특기 적성 등), 문화(체험활동 등), 정서지원(상담, 가족지원) 등 |                                                                     |                                                        | 놀이 중심, 학습 중심(교과학습 등), 놀이+학습 (창의역사 등)                               |                                                              | 프로그램 과정 (프로젝트, 동아리 등), 학습지원활동, 특별지원 과정, 생활지원 과정(1일 4시수)        |                                                  |
| 상세 운영 프로그램 | 기본 프로그램                                                   | 보호                                                                  | 생활(일상생활관리, 위생건강관리, 급식지도) 안전(생활안전지도, 안전귀가지도, 5대 안전의무교육) | 기본                                                                 | - 출결 확인<br>- 급간식 지원                                          | 공통                                                             | 급식, 귀가지도, 상담 등 기본적인 생활지원 과정                      |
|            |                                                           | 교육                                                                  | 학습(숙제지도, 교과학습지도) 특기 적성(예체능활동, 적성교육) 성장과 권리             | 공통 프로그램                                                            | - 놀이와 휴식<br>- 신체활동<br>- 숙제·독서지도<br>아동지원(일상생활교육, 아동 및 보호자 상담) | 일반                                                             | 보충학습, 교과학습 등                                     |
|            |                                                           | 문화                                                                  | 체험활동 참여활동                                              |                                                                    |                                                              |                                                                |                                                  |
|            |                                                           | 정서                                                                  | 상담(연고자 상담, 아동상담 등) 가족지원(보호자 교육, 행사·모임)                 |                                                                    |                                                              |                                                                |                                                  |
|            |                                                           | 지역사회연계                                                              | 홍보(기관 홍보) 연계(인적 연계, 기관 연계)                             |                                                                    |                                                              |                                                                |                                                  |
|            | 특화 프로그램                                                   | 지역사회 특수성 및 주요 대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운영 프로그램                                |                                                        | 특별활동                                                               | 언어활동(기초 외국어지도 등) 예체능, 과학, 체험활동                               | 선택 운영 과정                                                       | 역량개발, 진로체험, 동아리활동, 자원봉사, 디지털 체험활동, 지역사회프로그램 참여 등 |
| 담당 인력      | 고용 형태                                                     | 센터(사립) 소속 생활복지사 (정규직)                                               |                                                        | 지자체(직영) 또는 위탁기관 소속 돌봄교사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                                                              | 지자체(직영) 또는 위탁기관 소속 돌봄교사 (정규직, 계약직)                             |                                                  |
|            | 자격                                                        | 시설장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 및 관련 사업 5년 종사 경력 등), 생활복지사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 등) |                                                        | 센터장 (사회복지사 1·2급 자격증 및 관련 사업 3년 종사 경력 등), 돌봄 선생님 (사회복지사 1·2급 자격증 등) |                                                              | 팀장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 자격증 및 관련 업무 1년 이상 종사 경력 등), 담임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등)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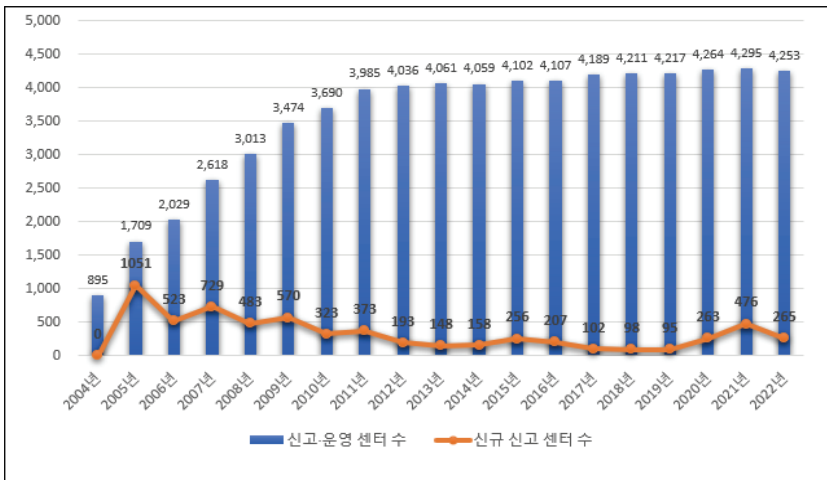
출처: “2024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24a, p.47.; “2024 다함께돌봄사업안내”, 여성가족부, 2024b, p.60.; “2024년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침”, 여성가족부, 2024b, pp.11-12. 참고하여 저자 작성.

## 라. 시설 수 및 이용 현황

### 1) 지역아동센터

2022년 12월 말 기준 신고·운영 중인 전국 지역아동센터는 총 4,253개소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1년 4,295개소에서 52개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아동센터는 2004년 법제화를 통해 신고제로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2011년까지 기존 공부방 형태의 시설이 신고하여 신규 센터 수가 빠르게 증가하였다가 2012년부터 증가세가 완만해졌다. 2022년 전체 센터가 42개소 감소한 것에 비해 신규 신고센터는 265개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 연도별 지역아동센터 현황(개소수)



출처: “2022년 12월말 기준 전국 지역아동센터 통계조사 보고서”,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4a, p.7. 바탕으로 그림으로 재구성함.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주체를 살펴보면, 개인이 운영하는 센터가 2,286개소(53.7%)로 가장 많고, 그 뒤를 이어 법인 1,654개소(38.9%), 일반단체 195개소(4.6%), 지자체 118개소(2.8%) 순으로 나타났다. 2020년 이후 개인 운영 센터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법인 운영 센터가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개인 운영이 50%를 넘고 있어 지역 아동센터의 운영이 공공성보다는 민간 주도에 기울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9〉 지역아동센터 운영 주체

(단위: 개소, %)

| 구분   |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
| 전체   |    | 4,211<br>(100.0) | 4,217<br>(100.0) | 4,264<br>(100.0) | 4,295<br>(100.0) | 4,253<br>(100.0) |
| 개인   |    | 2,951<br>(70.1)  | 2,949<br>(69.9)  | 2,818<br>(66.0)  | 2,484<br>(57.8)  | 2,286<br>(53.7)  |
| 법인   |    | 896<br>(21.3)    | 898<br>(21.3)    | 1,084<br>(25.4)  | 1,460<br>(34.0)  | 1,654<br>(38.9)  |
| 일반단체 |    | 288<br>(6.8)     | 280<br>(6.7)     | 255<br>(6.0)     | 237<br>(5.5)     | 195<br>(4.6)     |
| 지자체  | 직영 | 25<br>(0.6)      | 34<br>(0.8)      | 32<br>(0.8)      | 33<br>(0.8)      | 30<br>(0.7)      |
|      | 위탁 | 51<br>(1.2)      | 56<br>(1.3)      | 75<br>(1.8)      | 81<br>(1.9)      | 88<br>(2.1)      |

출처: “2022년 12월말 기준 전국 지역아동센터 통계조사 보고서”,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4a, p.10.

2022년 12월 말 기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수는 105,210명으로 조사되었고, 2021년 106,746명에 비해 1,536명(1.4%) 감소하였다. 신고정원 대비 이용아동 수 비중은 2019년 92.8%에서 2022년 92.6%로 약 0.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0〉 지역아동센터 연도별 신고정원 및 이용아동 현황

(단위: 개소, 명, %)

| 구분                 |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
| 센터 수 <sup>1)</sup> |                   | 4,138   | 4,081   | 4,008   | 4,057   | 4,005   |
| 신고정원               |                   | 118,192 | 116,773 | 114,668 | 115,645 | 113,660 |
| 이용<br>아동 수         | 전체                | 109,640 | 108,971 | 106,510 | 106,746 | 105,210 |
|                    | 이용률 <sup>2)</sup> | 92.8%   | 93.3%   | 92.9%   | 92.3%   | 92.6%   |
|                    | 남                 | 55,873  | 55,770  | 54,483  | 54,722  | 53,844  |
|                    | 여                 | 53,737  | 73,201  | 52,027  | 52,024  | 51,366  |
|                    | 센터당 평균            | 26.5    | 26.7    | 26.6    | 26.3    | 26.3    |

주: 1) 조사자료로 〈표 3-9〉의 센터 수 전체와 시설 수에 차이가 있음.

2) 이용률=정원 기준 이용아동 수 대비 정원 기준 이용아동 수

출처: “2022년 12월말 기준 전국 지역아동센터 통계조사 보고서”,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4a, p.44. 참고하여 저자 작성.

지역아동센터의 학년별 이용아동 수 현황은 2022년 105,210명 중 약 77.9%가 초등학생이 해당되며, 초등학생 저학년이 38.133명(36.2%), 초등학교 고학년이 43,846명(41.7%)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 이용아동 비중은 16.6%이며, 고등학생은 3.5%, 학교 밖 아동은 0.1%에 불과하다.

〈표 3-11〉 지역아동센터 연도별-학년별 이용아동 현황

(단위: 명, %)

| 구분       |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
| 전체       |     | 109,610<br>(100.0) | 108,971<br>(100.0) | 106,510<br>(100.0) | 106,746<br>(100.0) | 105,210<br>(100.0) |
| 미취학아동    |     | 1,798<br>(1.6)     | 2,146<br>(2.0)     | 1,900<br>(1.8)     | 2,067<br>(1.9)     | 1,972<br>(1.9)     |
| 초등<br>학생 | 저학년 | 43,438<br>(39.6)   | 44,094<br>(40.5)   | 40,199<br>(37.7)   | 38,471<br>(36.0)   | 38,133<br>(36.2)   |
|          | 고학년 | 44,063<br>(40.2)   | 43,681<br>(40.1)   | 43,492<br>(40.8)   | 44,260<br>(41.5)   | 43,846<br>(41.7)   |
| 중학생      |     | 16,321<br>(14.9)   | 15,531<br>(14.3)   | 17,207<br>(16.2)   | 18,064<br>(16.9)   | 17,495<br>(16.6)   |
| 고등학생     |     | 3,902<br>(3.6)     | 3,443<br>(3.2)     | 3,578<br>(3.4)     | 3,800<br>(3.6)     | 3,680<br>(3.5)     |
| 학교 밖     |     | 88<br>(0.1)        | 76<br>(0.1)        | 134<br>(0.1)       | 84<br>(0.1)        | 84<br>(0.1)        |

주: 2018년의 전체 이용아동 현황이 〈표 3-10〉과 상이하나, 복지부 보고자료를 따름.

출처: “2022년 12월말 기준 전국 지역아동센터 통계조사 보고서”,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4a, p.49. 참고하여 저자 작성.

지역아동센터는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아동에게 전방위적인 복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여 추진 중인 사업이다. 이러한 설립 취지에 맞추어 우선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이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장애 가정, 다문화 가정, 북한이탈주민 가정 등 취약아동은 얼마나 이용하는지 현황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아동의 특성을 살펴보면, 전체 아동 중 양부모 가정 아동이 68.8%로 가장 많았고, 그중 맞벌이 가정의 아동이 52.6%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저소득 가정, 장애인인 아동, 한부모 및 조손 가정 등이 우선돌봄 입소 순위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아동 중 돌봄 필요성이 인정되는 돌봄 특례 적용 대상인 맞벌이 가정 아동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지역아동센터의 당초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지역아동센터 대상 아동의 일반 아동 이용 비율을 기존 40%에서 50%로 확대하고 있는 추세에서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다함께돌봄사업과의 통합 운영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3-12〉 지역아동센터 우선돌봄 이용아동 현황(2022년 12월 말 기준)

(단위: 명, %)

| 구분     |           | 이용아동 수  | 비율    |
|--------|-----------|---------|-------|
| 전체     |           | 105,210 | 100.0 |
| 양부모 가정 | 소계        | 72,411  | 68.8  |
|        | 맞벌이 가정    | 55,342  | 52.6  |
|        | 아버지만 경제활동 | 13,048  | 12.4  |
|        | 어머니만 경제활동 | 2,635   | 2.5   |
|        | 경제활동 안 함  | 1,386   | 1.3   |
| 모자 가정  | 소계        | 18,251  | 17.4  |
|        | 경제활동 함    | 15,558  | 14.8  |
|        | 경제활동 안 함  | 2,693   | 2.6   |

| 구분          |          | 이용아동 수 | 비율   |
|-------------|----------|--------|------|
| 부자 가정       | 소계       | 11,070 | 10.5 |
|             | 경제활동 함   | 10,050 | 9.5  |
|             | 경제활동 안 함 | 1,020  | 1.0  |
| 조손 가정       | 소계       | 2,744  | 2.6  |
|             | 경제활동 함   | 1,537  | 1.5  |
|             | 경제활동 안 함 | 1,207  | 1.1  |
| 소년소녀가장      |          | 87     | 0.1  |
| 기타(친척 및 시설) |          | 647    | 0.6  |
| 장애          |          | 2,772  | 2.6  |
| 다문화 가정      |          | 24,088 | 22.9 |
| 북한이탈주민      |          | 333    | 0.3  |

주: 장애·다문화 가정·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는 이용아동은 가정 형태별-경제활동별 이용아동과 서로 배타적이지 않으며, 중복될 수 있음.

출처: “2022년 12월말 기준 전국 지역아동센터 통계조사 보고서”,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4a, p.52~53. 참고하여 저자 작성.

2) 다함께돌봄사업

연도별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현황을 보면, 2018년에는 17개소였는데, 이후 886개소가 증가하여 2022년에는 903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지역별 분포를 보면, 경기도에 전체 시설의 26.7%가 설치되어 있고, 서울시는 26.0%로 전체의 절반 이상인 476개소가 서울시와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경북 54개소(6.0%), 부산 51개소(5.6%), 전북 46개소(5.1%), 충남 41개소(4.5%)가 운영되고 있으며, 대구, 세종, 제주에서 5~7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표 3-13〉 연도별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현황

(단위: 개소 수, %)

| 연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비중)   |
|----|-------|-------|-------|-------|-------------|
| 전체 | 17    | 173   | 424   | 694   | 903 (100.0) |
| 서울 | 2     | 60    | 128   | 201   | 235 (26.0)  |
| 부산 | 1     | 8     | 28    | 42    | 51 (5.6)    |
| 대구 | 1     | 1     | 2     | 4     | 7 (0.8)     |
| 인천 | 1     | 4     | 12    | 21    | 27 (3.0)    |
| 광주 | 0     | 2     | 3     | 14    | 21 (2.3)    |
| 대전 | 0     | 2     | 5     | 10    | 23 (2.5)    |
| 울산 | 1     | 6     | 16    | 22    | 26 (2.9)    |
| 세종 | 1     | 3     | 5     | 6     | 7 (0.8)     |
| 경기 | 1     | 30    | 86    | 174   | 241 (26.7)  |
| 강원 | 0     | 11    | 18    | 25    | 34 (3.8)    |
| 충북 | 1     | 9     | 19    | 23    | 32 (3.5)    |
| 충남 | 3     | 4     | 18    | 30    | 41 (4.5)    |
| 전북 | 1     | 12    | 26    | 40    | 46 (5.1)    |
| 전남 | 2     | 7     | 15    | 20    | 27 (3.0)    |
| 경북 | 0     | 7     | 26    | 38    | 54 (6.0)    |
| 경남 | 2     | 7     | 16    | 22    | 26 (2.9)    |
| 제주 | 0     | 0     | 1     | 2     | 5 (0.6)     |

출처: “2022년 12월 말 기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현황 보고서”,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4b, p.9. 참고하여 저자 작성.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정원(정기돌봄 기준)은 면적 기준(아동 1인당 3.3㎡ 이상)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사무공간 등 부속 공간을 제외한 돌봄 공간(놀이공간 또는 활동실)에 맞춰 산정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4b, p.53). 2022년 12월에 신규로 설치된 센터를 제외하고 운영 중인 센터 870개소를 대상으로 이용률을 조사한 결과(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4, b p.35.), 전체 정원 대비 94.9%의 아동이 현재 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세종, 전남은 정원을 초과한 아동이 이용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하루 중 시간대별로 이용아동 수가 달라질 경우 인원이 중복 집계된 결과이다. 반면, 이용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대전으로, 정원의 절반 수준인 53.0%만이 센터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4〉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아동 현황(2022년 12월 말 기준)

(단위: 개소수, 명, %)

| 구분 | 센터 수 <sup>1)</sup> | 정원 기준  |               | 현원 기준  |               | 이용률(%) <sup>2)</sup> |
|----|--------------------|--------|---------------|--------|---------------|----------------------|
|    |                    | 이용아동 수 | 센터당 평균 이용아동 수 | 이용아동 수 | 센터당 평균 이용아동 수 |                      |
| 전체 | 870                | 21,661 | 24.9          | 20,547 | 23.6          | 94.9                 |
| 서울 | 232                | 6,004  | 25.9          | 6,432  | 27.7          | 107.1                |
| 부산 | 51                 | 1,074  | 21.1          | 978    | 19.2          | 91.1                 |
| 대구 | 6                  | 139    | 23.2          | 112    | 18.7          | 80.6                 |
| 인천 | 25                 | 578    | 23.1          | 496    | 19.8          | 85.8                 |
| 광주 | 21                 | 485    | 23.1          | 386    | 18.4          | 79.6                 |
| 대전 | 22                 | 606    | 27.5          | 321    | 14.6          | 53.0                 |
| 울산 | 26                 | 525    | 20.2          | 457    | 17.6          | 87.0                 |
| 세종 | 6                  | 140    | 23.3          | 154    | 25.7          | 110.0                |
| 경기 | 225                | 6,153  | 27.3          | 5,669  | 25.2          | 92.1                 |
| 강원 | 33                 | 895    | 27.1          | 768    | 23.3          | 85.8                 |
| 충북 | 31                 | 639    | 20.6          | 612    | 19.7          | 95.8                 |
| 충남 | 41                 | 1,019  | 24.9          | 946    | 23.1          | 92.8                 |
| 전북 | 43                 | 911    | 21.2          | 791    | 18.4          | 86.8                 |
| 전남 | 26                 | 664    | 25.5          | 739    | 28.4          | 111.3                |
| 경북 | 52                 | 1,203  | 23.1          | 1,128  | 21.7          | 93.8                 |
| 경남 | 25                 | 526    | 21.0          | 476    | 19.0          | 90.5                 |
| 제주 | 5                  | 100    | 20.0          | 82     | 16.4          | 82.0                 |

주: 1) 전체 센터 수 903개소 중 33개소는 2022년 12월에 설치되었으나, 운영 예정으로 제외함.

2) 이용률=정원 기준 이용아동 수 대비 현원 기준 이용아동 수

출처: “2022년 12월 말 기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현황 보고서”,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4b, p.35. 참고하여 저자 작성.

2022년 다함께돌봄센터의 학년별 이용아동 현황을 보면, 1학년이 6,615명, 2학년이 5,867명, 3학년이 3,867명으로 초등 저학년(1~3학년)이 16,349명이며, 전체 이용아동의 약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초등 저학년이 36.2%를 차지하는 것과 비교할 때, 다함께돌봄센터는 이용아동 중 초등 저학년 아동의 비중이 훨씬 높은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다.

〈표 3-15〉 다함께돌봄센터 학년별 이용 현황(2022년 12월 말 기준)

(단위: 명, %)

| 구분  |     | 인원     | 비율    |
|-----|-----|--------|-------|
| 전체  |     | 20,547 | 100.0 |
| 저학년 | 소계  | 16,349 | 79.6  |
|     | 1학년 | 6,615  | 32.2  |
|     | 2학년 | 5,867  | 28.6  |
|     | 3학년 | 3,867  | 18.8  |
| 고학년 | 소계  | 4,198  | 20.4  |
|     | 4학년 | 2,180  | 10.6  |
|     | 5학년 | 1,052  | 5.1   |
|     | 6학년 | 506    | 2.5   |
| 기타  |     | 460    | 2.2   |

출처: “2022년 12월 말 기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현황 보고서”,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4b, p.39. 참고하여 저자 작성.

가정 특성별 이용아동 현황은 맞벌이 가정 아동이 16,985명(82.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외벌이 가정 아동이 1,606(7.8%), 한부모 가정 아동은 1,381명(6.7%)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이 초등 저학년의 맞벌이 가정 아동이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센터 이용아동 중 다문화가정 아동은 847명으로 전체의 4.1%를 차지하며, 장애아동은 223명으로 1.1%에 불과하다.

〈표 3-16〉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아동의 가구 유형(2022년 12월 말 기준)

(단위: 명, %)

| 구분      |        | 인원     | 비율    |
|---------|--------|--------|-------|
| 전체      |        | 20,547 | 100.0 |
| 가정 특성별  | 맞벌이    | 16,985 | 82.7  |
|         | 외벌이    | 1,606  | 7.8   |
|         | 한부모 가정 | 1,381  | 6.7   |
|         | 조손 가구  | 95     | 0.5   |
|         | 기타     | 480    | 2.3   |
| 특별 이용아동 | 다문화 가정 | 847    | 4.1   |
|         | 장애 아동  | 223    | 1.1   |

주: 가정 특성별 아동과 특별 이용아동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으며, 중복 가능성이 있음.

출처: “2022년 12월 말 기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현황 보고서”,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4b, pp.40-41. 참고하여 저자 작성.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중 절반 이상(58.1%)이 학원 등 민간 기관도 함께 이용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방과후학교와 병행하는 아동이 30.6%를 차지했다. 다함께돌봄센터만 이용하는 아동은 22.5%로 매우 적으며, 서울(6.9%), 경기(6.7%), 충남(1.5%), 부산(1.0%)에서만 1%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지역에서는 다함께돌봄센터만 이용하는 아동 비중은 1% 미만에 그쳤다(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4b, p.42.).

〈표 3-17〉 다함께돌봄센터 기관연계 이용 현황 (2022년 12월 말 기준)

(단위: 명, %)

| 구분                 | 인원     | 비율    |
|--------------------|--------|-------|
| 전체                 | 20,547 | 100.0 |
| 다함께돌봄센터만 이용        | 4632   | 22.5  |
| 다함께돌봄센터+방과후학교      | 6279   | 30.6  |
| 다함께돌봄센터+초등돌봄       | 1370   | 6.7   |
| 다함께돌봄센터+방과후보육      | 242    | 1.2   |
| 다함께돌봄센터+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 193    | 0.9   |
| 다함께돌봄센터+학교돌봄터      | 337    | 1.6   |
| 다함께돌봄센터+학원 등 민간기관  | 11942  | 58.1  |

출처: “2022년 12월 말 기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현황 보고서”,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4b, p.42. 참고하여 저자 작성.

3)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2005년 9월부터 46개소를 시범 운영하여, 2006년에 전국적으로 확대하였으며, 2023년 12월 기준 전국의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의 공공시설에서 350개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운영되고 있다(여성가족부·복권위원회·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24. pp.17-18.).

〈표 3-18〉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이용아동 현황

(단위: 개소 수, 명)

| 연도    | 지원(개소) | 참여 인원(명) |
|-------|--------|----------|
| 2012년 | 200    | 8,060    |
| 2013년 | 200    | 8,200    |
| 2014년 | 200    | 8,091    |
| 2015년 | 244    | 9,490    |
| 2016년 | 250    | 9,745    |
| 2017년 | 250    | 9,773    |
| 2018년 | 260    | 10,742   |
| 2019년 | 280    | 11,584   |
| 2020년 | 304    | 12,341   |
| 2021년 | 332    | 13,147   |
| 2022년 | 342    | 14,059   |
| 2023년 | 350    | 14,588   |
| 2024년 | 355    | 14,017   |

출처: “2024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실무자 업무매뉴얼”, 여성가족부·복권위원회·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24, p.18.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이용아동 현황”,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내부자료, 2024c.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현원은 3개월 이상 참여한 청소년의 누적으로 산정되므로 정원을 초과할 수 있다. 이는 한 명의 청소년이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참여할 경우 중복 집계될 수 있기 때문이며, 입소와 퇴소가 빈번한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누적 방식으로 현원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표 3-19〉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이용률

(단위: 명, %)

| 연도별  | 정원     | 이용 청소년 수         |                   |
|------|--------|------------------|-------------------|
|      |        | 현원 <sup>1)</sup> | 이용률 <sup>2)</sup> |
| 2018 | 10,265 | 10,742           | 104.6             |
| 2019 | 11,985 | 11,584           | 96.7              |
| 2020 | 11,885 | 12,341           | 103.8             |
| 2021 | 12,800 | 13,145           | 102.7             |
| 2022 | 13,105 | 14,059           | 107.3             |
| 2023 | 13,355 | 14,588           | 109.2             |
| 2024 | 13,525 | 14,017           | 103.6             |

주: 1) 현원은 3개월 이상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참여한 누계 기준임.

2) 이용률=정원 기준 이용아동 수 대비 현원 기준 이용아동 수

출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이용률”,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내부자료, 2024d.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2024년 10월 기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우선돌봄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다자녀 가정의 아동이 전체 중 55.3%로 가장 많았으며, 한부모 가정 12.0%, 맞벌이 가정 11.2% 순으로 나타났다. 다자녀 가정, 한부모 가정, 맞벌이 가정을 합치면 전체의 78.5%를 차지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특히 다자녀 가정의 높은 비율은 이들 가정이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주요 수혜층임을 시사한다.

〈표 3-20〉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우선돌봄 아동 이용 현황(2024년 기준)

(단위: 명, %)

| 구분          | 인원     | 비율    |
|-------------|--------|-------|
| 전체          | 14,017 | 100.0 |
| 맞벌이 가정      | 1,571  | 11.2  |
| 조손 가정       | 140    | 1.0   |
| 기타(친척 및 시설) | 754    | 5.4   |
| 장애아동        | 254    | 1.8   |
| 다자녀 가정      | 7,757  | 55.3  |
| 다문화 가정      | 940    | 6.7   |
| 차상위계층       | 913    | 6.5   |
| 한부모 가정      | 1,688  | 12.0  |

주: 가정 특성별 아동과 특별 이용아동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으며, 중복 가능성이 있음.  
출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우선돌봄아동 이용현황”,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내부자료, 2024e.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2. 중앙정부 사업의 전달체계

이하에서는 사업별로 돌봄서비스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투입되는 관리 인력의 구성을 파악하고, 비용분석을 위하여 가용 자료를 토대로 투입 인력의 업무 기여율을 추정해본다.

투입 인력은 크게 관리자급과 전담 인력으로 나뉘며, 특히 관리자급의 경우 여러 사업을 동시에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직접 업무 시간을 측정하거나, 설문조사를 통해 업무 기여도를 파악하는 방법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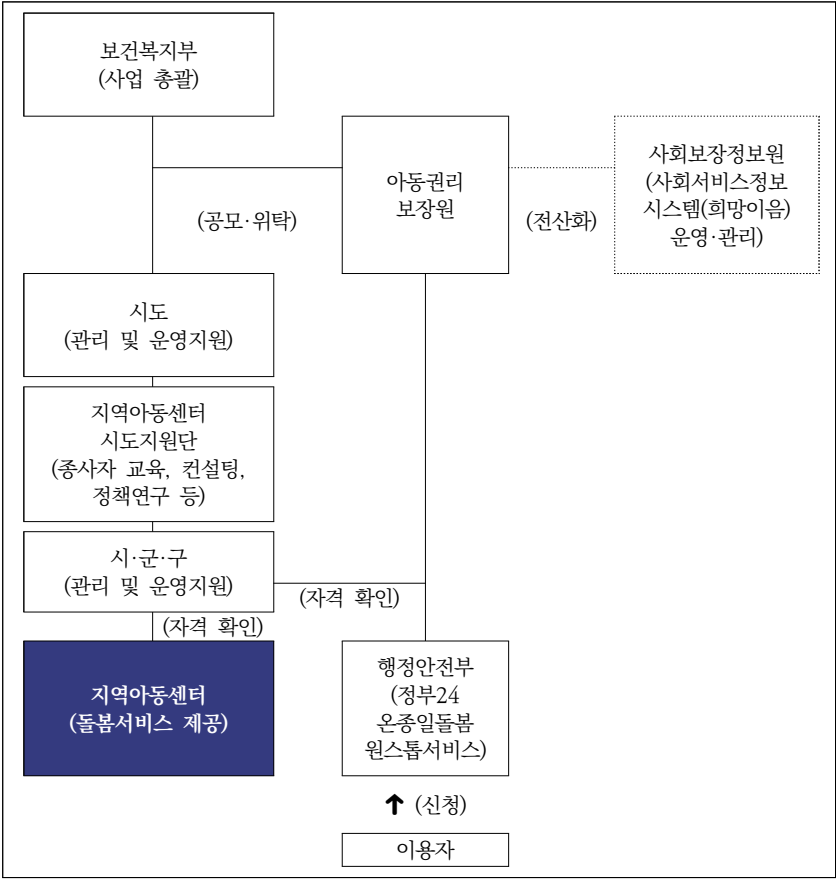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다루는 아동돌봄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며, 사업 총괄 부처를 비롯해 17개 광역자치단체, 226개 기초자치단체, 산하 서비스 제공기관 및 기타 지원기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전달체계를 갖추고 있어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기에는 시간적·예산적 제약이 크고, 각 기관 및 인력의 업무 시간을 일일이 파악하는 것 역시 한계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 인건비는 전달 비용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확인 가능한 자료를 활용해 분석을 시도하였다. 특히 하나 이상의 사업을 관리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각 사업의 예산 비율을 기준으로 업무 기여율을 추정하고, 이를 인건비 산정에 반영하였다. 직접적인 업무 시간 측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러한 간접 추정 방식은 모든 사업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어 사업 간 인건비 비중을 일관성 있게 비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방법이라 판단하였다. 구체적인 사업예산 비율 기반 업무기여율 배분은 다음의 사업별 전달체계 검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가.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의 전달체계를 담당하고 있는 각 기관의 역할을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는 사업을 총괄하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고, 법령과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국고보조금과 아동복지교사 예산을 지원하며, 사업 운영을 지도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림 3-2] 지역아동센터 전달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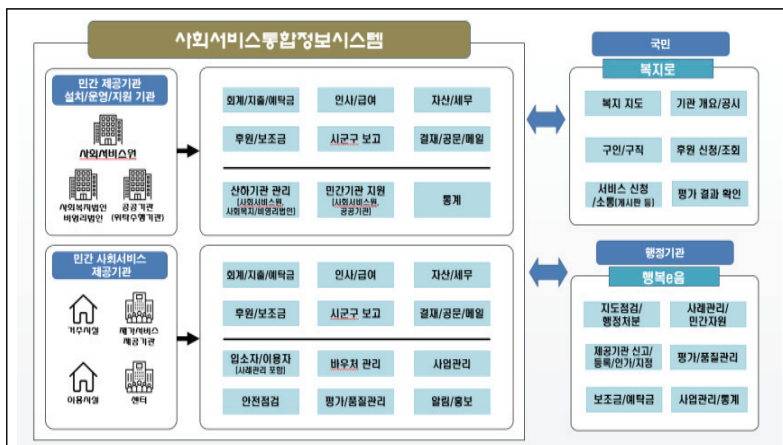
출처: “2024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24a, p.5. 참고하여 저자 작성.

각 기관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동권리보장원은 각 시설의 종사자 교육을 기획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시설 운영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시도지원단 사업을 조정·평가하고, 아동복지교사 운영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정보시스템 관리와 전산시스템 구축을 담당하며, 돌봄서비스의 연구개발과 평가를 지원한다.

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sup>13)</sup>에 해당 내용들을 전산화한다. 시·도는 각 지역의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조정하며, 국고보조금의 예산 집행을 담당한다. 또한, 관할 지역아동센터의 지원 사업을 지도·점검하고, 시도별로 아동복지교사의 운영을 총괄하는 등 지역 내 돌봄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책임진다.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은 종사자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여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보시스템 관리 및 평가사업을 지원한다. 시·군·구는 기초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을 관리하며, 예산 지원과 함께 이용아동의 관리, 아동복지교사의 채용 및 운영을 담당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아동센터는 돌봄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아동들에게 필요한 돌봄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한다.

- 13)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은 사회복지법인·시설 및 장기요양기관의 관리·평가, 회계·인사·후원금 등 기관행정 업무를 정보화 기반으로 지원하여, 사회복지법인·시설의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고, 서비스 질 관리 지원 및 민관 정보연계·협업을 통한 효율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사업을 위한 운영, 관리는 해당 시스템의 영유아 복지서비스 중 극히 일부에 해당됨.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구성도〉



출처: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보건복지부, 2024c, p.1303.

〈표 3-21〉 지역아동센터 추진체계

| 추진 주체           | 주체별 역할                                                                                                                                                                                  |
|-----------------|-----------------------------------------------------------------------------------------------------------------------------------------------------------------------------------------|
| 보건복지부           | 기본계획 수립, 지침 마련, 법령·제도 개선 등 사업 총괄<br>국고보조금 지원, 아동복지교사 예산지원·사업 총괄 및 평가<br>사업운영 지도·점검, 평가 총괄 및 표준화 모델 개발·보급<br>시설정보시스템 개편 및 관리총괄<br>방과 후 돌봄서비스 추진 기관 간의 서비스 연계·조정 등                        |
| 아동권리<br>보장원     | 종사자 교육 기획, 프로그램 개발, 컨설팅 등 시설운영 지원<br>시도지원단 사업 조정·평가 및 아동복지교사 운영지원<br>시설정보시스템 관리지원 및 전산관리시스템 구축·관리<br>연구개발 및 시설 평가사업 지원<br>홍보, 민간자원 개발·연계 지원 등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br>중앙부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추진업무 지원 등 |
| 시·도청            | 사업계획의 검토·조정 및 국고보조금 예산집행<br>관할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에 대한 지도, 점검<br>아동복지교사 시도별 사업 총괄 및 지도점검<br>시도 평가사업 총괄<br>광역 돌봄협의회 등을 통한 시·도 방과 후 돌봄서비스 추진 기관 간의 서<br>비스 연계·조정 등<br>시도지원단 설치·지원 및 관리·감독        |
| 지역아동센터<br>시도지원단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교육, 컨설팅 등 시설운영 지원<br>정보시스템 운영·관리 및 평가사업 등 지원<br>시·도 특성에 따른 홍보, 정보관리, 민간자원 개발·연계 및 네트워크 구<br>축 등 지역아동센터 지원                                                                    |
| 시·군·구청          | 시·군·구 지역아동센터 관리, 예산지원 등 운영<br>시·군·구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이용·종결 관리<br>아동복지교사 예산 집행, 운영관리(채용·계약, 배정·노무, DB 관리)<br>기초돌봄협의회 등을 통한 시·군·구 방과 후 돌봄서비스 추진 기관 간의<br>서비스 연계·조정 등                           |
| 지역아동센터          | 지역아동센터 운영으로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br>방과 후 돌봄서비스 추진 기관 및 지자체 협조 등                                                                                                                                |

출처: “2024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24a, p.5.

지역아동센터 사업은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인구아동정책관〉인구정책총괄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과장 1명(겸무), 팀장 1명(겸무), 주무관 2명이 겸무 없이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나 이상의 사업을 담당하는 과장과 팀장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 사

업예산 대비 지역아동센터 사업예산 비중을 적용하여 업무기여율을 산정하고, 이후 인건비 추정 시 반영하였다.

〈표 3-22〉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담당 인력 및 업무기여율

| 보건복지부<br>담당부서                               | 인력    | 업무 내용                                                      | 비고 | 업무기여율<br>(해당 사업비/총사업비)                                      |
|---------------------------------------------|-------|------------------------------------------------------------|----|-------------------------------------------------------------|
| 인구·사회서<br>비스정책실><br>인구아동정책<br>관>인구정책<br>총괄과 | 과장 1  | 인구정책총괄과장<br>저출산고령사회 국민 인식 개<br>선 사업, 노후생활 관련 정책,<br>노인정책 등 | 겸무 | (2024년) 지역아동센터 사업<br>251,068백만 원/업무 전체<br>308,732백만 원=81.7% |
|                                             | 팀장 1  | 마을돌봄 TF 팀장<br>마을돌봄, 지역아동센터,<br>다함께돌봄사업 등                   | 겸무 | (2024년) 지역아동센터 사업<br>251,068백만 원/업무 전체<br>308,732백만 원=81.7% |
|                                             | 주무관 1 | 지역아동센터 제도 운영                                               |    | 공무원 보수 100% 적용                                              |
|                                             | 주무관 2 | 지역아동센터 예산                                                  |    | 공무원 보수 100% 적용                                              |

출처: “보건복지부 조직도”, 보건복지부, 2024.10.31. 검색, <https://www.mohw.go.kr/menu.es?mid=a10604010000>;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보건복지부, 2024c, pp.3922-3927. 참고하여 저자 작성.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지역아동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총 10명이며, 구성은 부장 1명(겸무), 팀장 1명, 과장 2명, 대리 1명, 주임 5명이다. 부장은 지역아동센터 업무 외에도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발달지원부 전체 업무에서 지역아동센터 사업이 차지하는 예산 비중을 바탕으로 업무기여율을 산출하였다.

〈표 3-23〉 아동권리보장원 지역아동센터 담당 인력 및 업무기여율 가정

| 인력   | 업무 내용                                                     | 비고 | 업무기여율<br>(해당 사업비/총사업비)                                                                                                                                                                                                          |
|------|-----------------------------------------------------------|----|---------------------------------------------------------------------------------------------------------------------------------------------------------------------------------------------------------------------------------|
| 부장 1 | 발달지원부 업무 총괄<br>드림스타트<br>지역아동돌봄사업<br>다함께돌봄센터<br>마을돌봄시설 컨설팅 | 겸무 | ① 마을돌봄서비스 지원/아동권리보장원 고유사업비(총액)<br>(22) 1,453백만 원/11,471백만 원 =12.7%<br>(23) 1,503백만 원/12,588백만 원 =11.9%<br>(24) 1,708백만 원/12,756백만 원 =13.4%<br>② 마을돌봄서비스는 지역아동돌봄과 다함께돌봄센터의 합산이므로 기여율을 5:5로 산정<br>(22) 6.3%, (23) 6.0%, (24) 6.7% |
| 팀장 1 | 지역아동돌봄사업팀 총괄                                              |    | 직원 평균 보수 100% 적용                                                                                                                                                                                                                |
| 과장 1 | 돌봄서비스 평가사업 총괄 및 지역아동센터 평가(신규, 재평가, 수시, 시스템), 중앙평가위원회      |    | 직원 평균 보수 100% 적용                                                                                                                                                                                                                |
| 과장 2 |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돌봄사업 미디어 홍보사업                                |    | 직원 평균 보수 100% 적용                                                                                                                                                                                                                |
| 대리 1 | 돌봄시설 컨설팅, 돌봄사업 공모전, 지역아동센터 문화나눔 확대 및 돌봄사업 자원연계            |    | 직원 평균 보수 100% 적용                                                                                                                                                                                                                |
| 주임 1 | 지역아동센터 공공성 강화 지원 및 집중 컨설팅, 돌봄사업 연구, 돌봄기관 관계자 간담회          |    | 직원 평균 보수 100% 적용                                                                                                                                                                                                                |
| 주임 2 | 돌봄사업(지침 및 평가) 및 아동복지교사 문의 대응                              |    | 직원 평균 보수 100% 적용                                                                                                                                                                                                                |
| 주임 3 | 지역아동센터 정기평가(기존 시설)                                        |    | 직원 평균 보수 100% 적용                                                                                                                                                                                                                |
| 주임 4 | 돌봄사업 언론 홍보, 마을돌봄시설 컨설팅                                    |    | 직원 평균 보수 100% 적용                                                                                                                                                                                                                |
| 주임 5 | 아동복지교사 관리 지원사업, 돌봄시설 평가 설명회                               |    | 직원 평균 보수 100% 적용                                                                                                                                                                                                                |

주: 인턴은 대상에서 제외함  
출처: “아동권리보장원 담당업무”, 아동권리보장원, 2024.10.10. 검색, <https://www.ncrc.or.kr/ncrc/cm/composition.do>;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보건복지부, 2024c, pp.644-656. 참고하여 저자 작성.

17개 시·도의 지역아동센터 담당 인력에는 지역아동센터 사업을 직접적으로 담당하거나 총괄하는 인력만 포함한다. 각 시·도의 지역아동센터 담당 공무원은 서울과 경기도 팀장 1명, 주무관 3~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부분의 시·도는 팀장 1명과 주무관 1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업무 기여율은 각 시도의 2022~2024년도 세출예산사업 설명자료에 제시된 예산액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이는 전체 업무의 총사업비 중 지역아동센터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전체 시·도별 담당인력에 대한 업무기여율<sup>14)</sup>은 [부록 1] 참고).

14) 시도 담당 공무원의 지역아동센터 기여율 산출 방법(예시)

(단위: 천 원, %)

| 구분                            |                   |                                | 2022       | 2023        | 2024        |
|-------------------------------|-------------------|--------------------------------|------------|-------------|-------------|
| 비율(팀장)(B/A)                   |                   |                                | 21.1%      | 21.1%       | 22.1%       |
| 비율(주무관 1)(B/C)                |                   |                                | 90.3%      | 93.3%       | 92.4%       |
| 아동친화팀 전체(A) : 아동복지증진(아동수당 제외) |                   |                                | 88,122,231 | 101,679,247 | 102,073,432 |
| 주무관업무 전체(C=1+2)               |                   |                                | 20,549,468 | 22,974,799  | 24,422,610  |
| 지역아동센터 업무(B=1)                |                   |                                | 18,558,369 | 21,445,269  | 22,568,380  |
| 주무관업무<br>전체                   | 1. 지역아동센터 업무 내용   | 시도지원단 운영(지역아동센터)               | 168,000    | 168,000     | 172,780     |
|                               |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 11,376,180 | 2,547,000   | 2,646,531   |
|                               |                   |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                 | 200,000    | -           | -           |
|                               |                   |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 -          | 11,394,000  | 14,216,738  |
|                               |                   |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               | 276,300    | 309,240     | 310,500     |
|                               |                   | 지역아동센터운영 지원(구군)                | 4,464,125  | 4,897,570   | 3,389,396   |
|                               | 2. 다함께 돌봄센터 업무 내용 | 아동복지교사 파견                      | 2,073,764  | 2,129,459   | 1,832,435   |
|                               |                   | 다함께 돌봄 인건비 지원                  | 850,411    | 961,530     | 1,353,230   |
|                               |                   | 다함께 돌봄 운영비 지원                  | 38,700     | 108,000     | 153,000     |
|                               |                   | 다함께 돌봄 설치비 지원                  | 1,092,500  | 460,000     | 345,000     |
|                               |                   | 다함께 돌봄센터 아동출결관리시스템 설치 (주민참여예산) | -          | -           | 3,000       |
|                               |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시간 연장 시범사업 지원(인건비)   | 8,363      | -           | -           |
|                               |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시간 연장 시범사업 지원(운영비)   | 1,125      | -           | -           |

〈표 3-24〉 시·도의 담당 인력 및 업무기여율(시·도 일부)

| 시도 | 인력               | 지역아동센터 업무 내용                                                                                         | 비고 | 업무기여율(%)<br>(해당 사업비/총사업비) |      |      |
|----|------------------|------------------------------------------------------------------------------------------------------|----|---------------------------|------|------|
|    |                  |                                                                                                      |    | 2022                      | 2023 | 2024 |
| 서울 | 아동지원<br>팀장       | - 아동지원팀 업무 총괄<br>- 지역아동센터 관련 정책 개발 및 운영개선<br>- 지역아동센터 현안 사항, 협의조정                                    | 겸무 | 56.8                      | 99.2 | 99.3 |
|    | 주무관 1            | 지역아동센터 운영 총괄                                                                                         |    |                           |      |      |
|    | 주무관 2            | - 아동수당 지원<br>-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운영<br>- 디지털격차 해소를 위한 역량강화사업<br>- 지역아동센터 스마트센터블 보급사업 운영                     | 겸무 | 56.8                      | 99.2 | 99.3 |
|    | 주무관 3            | 지역아동센터 예산 총괄                                                                                         |    |                           |      |      |
|    | 주무관 4            |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특화센터 시범<br>운영<br>지역아동센터 아동돌봄교사 인력지원<br>사업                                                 |    |                           |      |      |
| 부산 | 아동청소년과<br>아동복지팀장 | 아동복지팀 업무 총괄<br>아동생활시설 운영지원, 지역아동센터,<br>드림스타트사업, 복지교사지원사업 등                                           | 겸무 | 31.1                      | 25.4 | 25.9 |
|    | 주무관 1            | 아동복지팀 내 비영리법인, 단체 설립<br>허가 및 지도감독<br>지역아동센터 지원단 운영 지원에 관<br>한 사항<br>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br>드림스타트사업 지원 | 겸무 | 85.1                      | 83.2 | 84.4 |
| 경기 | 아동돌봄과<br>아동돌봄팀장  | 아동돌봄팀 업무 총괄<br>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추진, 지역아동<br>센터, 가족돌봄수당                                                     | 겸무 | 55.6                      | 63.9 | 62.4 |
|    | 주무관 1            | 지역아동센터 운영                                                                                            |    |                           |      |      |
|    | 주무관 2            | 지역아동센터 업무                                                                                            |    |                           |      |      |
|    | 주무관 3            | 지역아동센터 지원업무                                                                                          |    |                           |      |      |

84 유사 사회복지사업 전달비용과 지출효율성

| 시도 | 인력                   | 지역아동센터 업무 내용                                                                                                                                          | 비고               | 업무기여율(%)<br>(해당 사업비/총사업비) |      |      |
|----|----------------------|-------------------------------------------------------------------------------------------------------------------------------------------------------|------------------|---------------------------|------|------|
|    |                      |                                                                                                                                                       |                  | 2022                      | 2023 | 2024 |
| 강원 | 육아지원팀장               | 육아지원팀 업무 총괄관리<br>육아기본수당 등 아동 관련 수당지원<br>총괄<br>다함께돌봄센터 및 지역아동센터 협<br>의회 관리<br>팀 소관 주요 계획 수립 및 업무총괄                                                     | 겸무               | 80.8                      | 80.8 | 81.6 |
|    | 주무관 1                |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운영<br>다함께돌봄사업 확충 및 운영지원<br>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br>추진<br>지역아동센터 강원지원단 운영지원 관리<br>지역협력형 아동돌봄사업 추진<br>온종일 돌봄체계 원스톱 서비스 및<br>학교돌봄터 지원        | 겸무 <sup>1)</sup> | 79.4                      | 84.2 | 82.9 |
| 전북 | 아동보호팀장               | 아동보호 업무 종합기획<br>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br>자립준비청소년 지원 협력체계구축<br>아동복지시설 기능전환<br>아동복지 신규시책 발굴                                                                      | 겸무               | 27.2                      | 42.2 | 42.6 |
|    | 주무관 1                | 아동정책 시행계획 수립지원<br>아동정책 영향평가 수행<br>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대응<br>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및 지도감독<br>지역아동센터 위원회 운영<br>지역아동센터지원단<br>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운영지원<br>돌봄협의체, 온종일돌봄체계<br>아동복지교사지원 | 겸무 <sup>1)</sup> | 79.4                      | 84.2 | 82.9 |
| 경남 | 보육정책과<br>아동시설<br>파트장 | 마을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원(다함께<br>돌봄센터 설치 등)<br>아동친화 담당 운영위원회 지원<br>지역아동센터 운영 내실화 업무<br>마을돌봄 관련 시책 발굴 추진<br>드림스타트 지원                                             | 겸무               | 33.3                      | 31.6 | 29.2 |

| 시도 | 인력    | 지역아동센터 업무 내용                                                      | 비고               | 업무기여율(%)<br>(해당 사업비/총사업비) |      |      |
|----|-------|-------------------------------------------------------------------|------------------|---------------------------|------|------|
|    |       |                                                                   |                  | 2022                      | 2023 | 2024 |
|    | 주무관 1 | 아동 관련 사회복지법인 인허가 등 관리<br>마을돌봄 추진계획 수립 및 지도점검<br>추진<br>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 검무 <sup>1)</sup> | 79.4                      | 84.2 | 82.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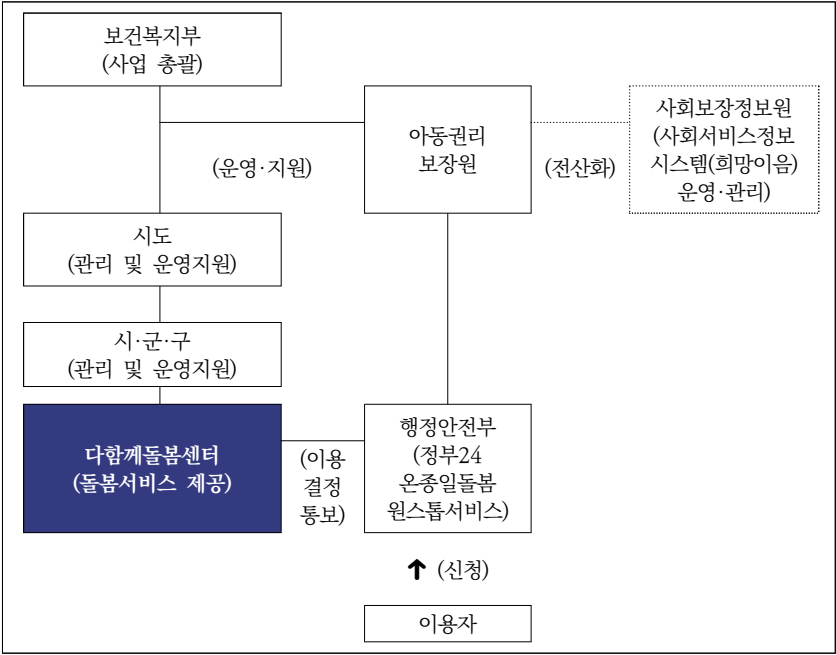
주: 담당업무의 예산액 구분이 어려운 경우, 기여율은 해당 직책 기여율 평균값을 적용함.

출처: “조직도”, 서울특별시, 2024.10.14. 검색, <https://org.seoul.go.kr/org/orgChart.do>;  
“서울시 2022~2024년 예산서(세출예산)”, 서울특별시, 2024.10.14. 검색, [https://news.seoul.go.kr/gov/archives/category/tax-news\\_c1/info\\_budget\\_c1/data\\_document\\_budget-n2](https://news.seoul.go.kr/gov/archives/category/tax-news_c1/info_budget_c1/data_document_budget-n2); “조직도”, 부산광역시, 2024.10.14. 검색, <https://www.busan.go.kr/bhororganization01>; “세입세출예산서”, 부산광역시, 2024.10.14. 검색, <https://www.busan.go.kr/ghstat>; “경기도 조직도”, 경기도청, 2024.10.14. 검색, <https://www.gg.go.kr/org/orgChart.do?menuId=1808>; “세입세출예산서”, 경기도청, 2024.10.14. 검색, <https://www.gg.go.kr/bbs/board.do?bsIdx=515&menuId=1946#page=1>; “조직도”, 강원특별자치도, 2024.10.14. 검색, <https://state.gwd.go.kr/portal/introduce/guidance/organization>; “세입세출예산서”, 강원특별자치도, 2024.10.14. 검색, <https://state.gwd.go.kr/portal/administration/finance/budget/2024>; “조직도”, 전북특별자치도, 2024.10.14. 검색, [https://www.jeonbuk.go.kr/index.jeonbuk?menuCd=DOM\\_000000101003001001](https://www.jeonbuk.go.kr/index.jeonbuk?menuCd=DOM_000000101003001001); “2024년 예산”, 전북특별자치도, 2024.10.14. 검색, [https://www.jeonbuk.go.kr/index.jeonbuk?menuCd=DOM\\_000000103001004050](https://www.jeonbuk.go.kr/index.jeonbuk?menuCd=DOM_000000103001004050); “2022년 예산”, 전북특별자치도, 2024.10.14. 검색, [https://www.jeonbuk.go.kr/index.jeonbuk?menuCd=DOM\\_000000103001004006](https://www.jeonbuk.go.kr/index.jeonbuk?menuCd=DOM_000000103001004006); “조직도”, 경상남도, 2024.10.14. 검색, [https://www.gyeongnam.go.kr/index.gyeong?menuCd=DOM\\_000000137001001000](https://www.gyeongnam.go.kr/index.gyeong?menuCd=DOM_000000137001001000);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서, 경상남도, 2024.10.14. 검색, [https://www.gyeongnam.go.kr/index.gyeong?menuCd=DOM\\_000000138003005001&searchYear=2024](https://www.gyeongnam.go.kr/index.gyeong?menuCd=DOM_000000138003005001&searchYear=2024);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서, 경상남도, 2024.10.14. 검색, [https://www.gyeongnam.go.kr/index.gyeong?menuCd=DOM\\_000000138003005001&searchYear=2022](https://www.gyeongnam.go.kr/index.gyeong?menuCd=DOM_000000138003005001&searchYear=2022)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나. 다함께돌봄

다함께돌봄센터의 추진체계는 보건복지부가 사업 총괄을 담당하고, 아동권리보장원은 전산시스템 구축과 홍보, 종사자 교육 등 시설 운영을 지원하며, 시·도, 시군구는 시·도별 사업계획 수립과 관리 및 운영지원, 다함께돌봄센터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림 3-3] 다함께돌봄사업 전달체계



출처: “다함께돌봄사업 수행체계”, 아동권리보장원, 2024.10.1. 검색, [https://dadol.or.kr/biz/biz\\_system](https://dadol.or.kr/biz/biz_system). 참고하여 저자 작성.

보건복지부는 다함께돌봄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과 보조금 교부 및 관리 등 사업 총괄을 담당하고, 아동권리보장원은 평가 및 컨설팅, 종사자 교육, 전산시스템 구축 및 관리 등을 담당한다. 또한, 시도 및 시군구는 사업을 수행하고,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돌봄협의체와 연계·조정 역할을 담당한다. 마지막으로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 대상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표 3-25〉 다함께돌봄사업 추진체계

| 추진 주체   | 주요 역할                                                                                                     |
|---------|-----------------------------------------------------------------------------------------------------------|
| 보건복지부   | 기본계획 수립, 법령 및 지침 제·개정 등 제도 개선<br>평가 및 컨설팅, 현장지도·점검 등 사업관리 총괄<br>국고보조금 교부 및 관리<br>자원 연계를 위한 부처 간 연계 및 조정 등 |
| 아동권리보장원 | 평가 및 컨설팅, 종사자 교육 등 시설운영 지원<br>다함께돌봄사업 전산시스템 구축·관리<br>다함께돌봄사업 홍보 및 연구·조사 등                                 |
| 시·도     | 시·도별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총괄<br>시·군·구 사업 지도·점검 및 국고보조금 예산 집행<br>광역 돌봄협의체를 통한 돌봄서비스의 연계·조정 등                       |
| 시·군·구   | 시·군·구 사업계획 수립 및 센터 설치·운영<br>예산 집행 및 지도·점검 등 센터 운영관리<br>기초 돌봄협의회를 통한 돌봄서비스의 연계·조정 등                        |
| 다함께돌봄센터 | 초등학생 대상 방과 후·방학 중 돌봄서비스 제공<br>학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과 돌봄서비스 연계·조정                                       |

출처: “2024 다함께돌봄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24b, p. 5.

보건복지부는 과장, 팀장, 주무관 각 1명이 다함께돌봄사업을 검무로 담당하고 있으며, 마을돌봄 TF와 같이 예산이 별도로 없는 업무의 경우는 업무기여율에 반영하는 데 제약이 있다. 이에 주무관의 경우 다함께돌봄사업을 전담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업무기여율을 100%로 산정하였다.

〈표 3-26〉 보건복지부 담당 인력 및 업무기여율 가정

| 인력    | 업무 내용                                                 | 비고 | 업무기여율(%)<br>(해당 사업비/총사업비)                                |
|-------|-------------------------------------------------------|----|----------------------------------------------------------|
| 과장 1  | 인구정책총괄 과장<br>저출산고령사회 국민인식 개선사업, 노후생활<br>관련 정책, 노인정책 등 | 검무 | (2024년) 다함께돌봄사업<br>57,664백만 원/업무 전체<br>308,732백만 원=18.7% |
| 팀장 1  | 마을돌봄 TF 팀장<br>마을돌봄,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사업 등                 | 검무 | (2024년) 다함께돌봄사업<br>57,664백만 원/업무 전체<br>308,732백만 원=18.7% |
| 주무관 1 | 마을돌봄 TF, 다함께돌봄사업                                      |    | 100%                                                     |

출처: “보건복지부 조직도”, 보건복지부, 2024.10.31. 검색, <https://www.mohw.go.kr/menu.es?mid=a10604010000>;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보건복지부, 2024c, pp.3922-3927. 참고하여 저자 작성.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다함께돌봄사업을 담당하는 인력은 총 4명으로, 부장 1명(겸무)과 주임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장은 다함께돌봄사업 외에도 지역아동센터와 드림스타트를 포함한 발달지원부 전체 업무를 총괄한다. 이에 따라, 담당 업무 전체 예산 대비 다함께돌봄사업 예산 비율을 부장의 업무기여율로 산정하였다.

〈표 3-27〉 아동권리보장원 다함께돌봄센터 담당 인력 및 업무기여율 가정

| 인력   | 업무 내용                                                     | 비고 | 업무기여율(%)<br>(해당 사업비/총사업비)                                                                                                                                                                                                                          |
|------|-----------------------------------------------------------|----|----------------------------------------------------------------------------------------------------------------------------------------------------------------------------------------------------------------------------------------------------|
| 부장 1 | 발달지원부 업무 총괄<br>드림스타트<br>지역아동돌봄사업<br>다함께돌봄센터<br>마을돌봄시설 건설팅 | 겸무 | ① 마을돌봄서비스 지원/아동권리보장원<br>고유사업비(총액)<br>(22) 1,453백만 원/11,471백만 원<br>=12.7%<br>(23) 1,503백만 원/12,588백만 원<br>=11.9%<br>(24) 1,708백만 원/12,756백만 원<br>=13.4%<br>② 마을돌봄서비스는 지역아동돌봄과 다<br>함께돌봄센터의 합산이므로 기여율을<br>5:5로 산정<br>(22) 6.3%, (23) 6.0%, (24) 6.7% |
| 주임 1 | 돌봄사업센터 운영현황 조사, 돌봄<br>시설 종사자 교육 기획·표준교안 개발                |    | 직원 평균 보수 100% 적용                                                                                                                                                                                                                                   |
| 주임 2 | 다함께돌봄센터 평가, 평가위원 관<br>리 및 문의응대                            |    | 직원 평균 보수 100% 적용                                                                                                                                                                                                                                   |
| 주임 3 | 다함께돌봄센터 평가(2차), 평가위<br>원 관리 및 문의 대응                       |    | 직원 평균 보수 100% 적용                                                                                                                                                                                                                                   |

주: 인턴은 대상에서 제외함

출처: “아동권리보장원 담당업무”, 아동권리보장원, 2024.10.10. 검색, <https://www.ncrc.or.kr/ncrc/cm/composition.do>;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보건복지부, 2024c, pp.644-656. 참고하여 저자 작성.

다함께돌봄사업을 담당하는 17개 시도의 담당자 및 업무 내용을 살펴 보면, 평균적으로 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에서 팀장 1명과 주무관 1명이 타 업무와 함께 다함께돌봄사업을 겸무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주무관은 다함께돌봄사업과 더불어 지역 돌봄사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고, 지역아동센터 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경우도 대체로 많았다. 2024년 기준으로 다함께돌봄사업의 업무기여율은 11.8% 수준이며, 이는 2022년과 2023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다만, 주무관의 경우 서울과 경기처럼 다함께돌봄사업에 100% 전담하는 사례도 있으나, 부산(6.6%), 강원(18.4%), 전북(15.0%), 경남(3.5%) 등에서는 겸무 비율이 높아 다함께돌봄사업에 대한 업무기여율이 낮은 시도가 많았다.

〈표 3-28〉 시도의 담당 인력 및 업무기여율(시도 일부)

| 시도 | 인력               | 다함께돌봄사업 관련 업무 내용                                                                                                                       | 비고 | 업무기여율(%)<br>(해당 사업비/총사업비) |                         |                         |
|----|------------------|----------------------------------------------------------------------------------------------------------------------------------------|----|---------------------------|-------------------------|-------------------------|
|    |                  |                                                                                                                                        |    | 2022                      | 2023                    | 2024                    |
| 서울 | 키움센터팀장           | 키움센터팀 업무 총괄<br>일반, 융합, 거점형 키움센터 운영 등<br>추진<br>키움센터 늘봄학교 연계 추진                                                                          |    |                           |                         |                         |
|    | 주무관 1            | 키움센터 늘봄학교 연계사업 총괄                                                                                                                      |    |                           |                         |                         |
|    | 주무관 2            | 일반, 융합형 키움센터 설치 운영 계획 수립                                                                                                               |    |                           |                         |                         |
|    | 주무관 3            | 키움센터 운영비(임차료) 관련 업무                                                                                                                    |    |                           |                         |                         |
|    | 주무관 4            | 거점형 키움센터 운영<br>늘봄학교 관련 연계 지원<br>늘봄학교 관련 유관기관 협력<br>학교 돌봄터 지원 사업                                                                        | 겸무 | 100<br>(늘봄<br>예산<br>없음)   | 100<br>(늘봄<br>예산<br>없음) | 100<br>(늘봄<br>예산<br>없음) |
| 부산 | 아동청소년과<br>아동친화팀장 | 아동친화팀장 업무 총괄<br>아동생활시설 운영지원,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사업, 복지교사지원사업 등                                                                               | 겸무 | 7.3                       | 6.7                     | 6.6                     |
|    | 주무관 1            | 다함께돌봄센터 업무 운영<br>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사항<br>아동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 아동보호구역에 관한 사항<br>어린이 박람회 행사에 관한 사항<br>아동권리 교육, 모니터링, 아동친화도시 홍보에 관한 사항 등 총 9개 업무 | 겸무 | 7.3                       | 6.7                     | 6.6                     |

90 유사 사회복지사업 전달비용과 지출효율성

| 시도 | 인력               | 다함께돌봄사업 관련 업무 내용                                                                                                                                        | 비고 | 업무기여율(%)<br>(해당 사업비/총사업비) |      |      |
|----|------------------|---------------------------------------------------------------------------------------------------------------------------------------------------------|----|---------------------------|------|------|
|    |                  |                                                                                                                                                         |    | 2022                      | 2023 | 2024 |
| 경기 | 아동돌봄과장           | 아동돌봄과 업무 총괄<br>아동정책팀, 아동돌봄팀, 언제나돌<br>봄팀, 아동보호팀, 아동학대대응팀,<br>아동자립지원팀                                                                                     | 겸무 | 19.8                      | 26.0 | 24.2 |
|    | 아동돌봄과<br>언제나돌봄팀장 | 언제나돌봄팀 총괄<br>아동돌봄센터, 학교돌봄터                                                                                                                              | 겸무 | 92.3                      | 100  | 96.0 |
|    | 주무관 1            | 경기도 아동돌봄광역지원센터 업무                                                                                                                                       |    |                           |      |      |
|    | 주무관 2            | 다함께돌봄센터(도비), 학교돌봄터                                                                                                                                      | 겸무 | 92.3                      | 100  | 96.0 |
|    | 주무관 3            | 아동돌봄센터                                                                                                                                                  |    |                           |      |      |
| 강원 | 육아지원팀장           | 육아지원팀 업무 총괄관리<br>육아기본수당 등 아동 관련 수당지<br>원 총괄<br>다함께돌봄센터 및 지역아동센터 협<br>의회 관리<br>팀 소관 주요계획 수립 및 업무총괄                                                       | 겸무 | 14.0                      | 17.1 | 18.4 |
|    | 주무관 1            |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 교사 운영<br>다함께돌봄사업 확충 및 운영지원<br>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br>추진<br>지역아동센터 강원지원단 운영지원<br>관리<br>지역협력형 아동돌봄사업 추진<br>온종일 돌봄체계 원스톱 서비스 및<br>학교돌봄터 지원      | 겸무 | 14.0                      | 17.1 | 18.4 |
| 전북 | 아동보호팀장           | 아동보호 업무 종합기획<br>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br>자립준비청소년지원 협력체계구축<br>아동복지시설 기능전환<br>아동복지 신규시책 발굴                                                                         | 겸무 | 4.4                       | 8.7  | 7.5  |
|    | 주무관 1            | 아동정책 시행계획 수립지원<br>아동정책 영향평가 수행<br>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대응<br>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및 지도감독<br>지역아동센터 위원회 운영<br>지역아동센터지원단<br>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운영지원<br>돌봄협의체, 온종일돌봄체계<br>아동복지 교사 지원 | 겸무 | 13.9                      | 17.1 | 15.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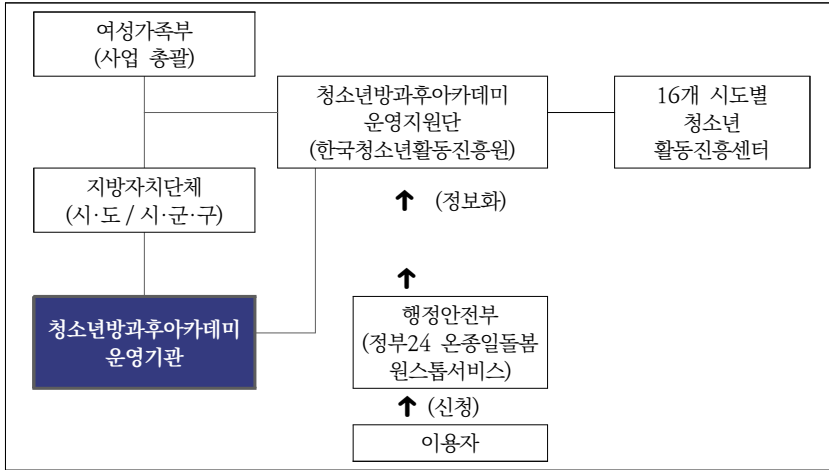
| 시도 | 인력               | 다함께돌봄사업 관련 업무 내용                                                                                                               | 비고 | 업무기여율(%)<br>(해당 사업비/총사업비) |      |      |
|----|------------------|--------------------------------------------------------------------------------------------------------------------------------|----|---------------------------|------|------|
|    |                  |                                                                                                                                |    | 2022                      | 2023 | 2024 |
| 경남 | 보육정책과<br>아동시설파트장 | 주요 업무계획 수립 및 도의회 관련 업무<br>마을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원(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등)<br>아동친화담당 운영위원회 지원<br>지역아동센터 운영 내실화 업무<br>마을돌봄 관련 시책 발굴 추진<br>드림스타트 지원 | 겸무 | 6.7                       | 4.2  | 3.5  |
|    | 주무관 1            | 결식아동 급식 지원<br>아동급식 위원회 운영<br>다함께돌봄센터 사업 추진<br>우리마을 아이돌봄사업 추진<br>아동수당 급여 지원<br>아동복지 교사 파견 지원                                    | 겸무 | 6.7                       | 4.2  | 3.5  |

주: 다함께돌봄센터 담당과(팀)의 업무 중 아동수당 업무에 대한 예산액은 제외함.

출처: “조직도”, 서울특별시, 2024.10.14. 검색, <https://org.seoul.go.kr/org/orgChart.do>; “서울시 2022~2024년 예산서(세출예산)”, 서울특별시, 2024.10.14. 검색, [https://news.seoul.go.kr/gov/archives/category/tax-news\\_c1/info\\_budget\\_c1/data\\_document\\_budget-n2](https://news.seoul.go.kr/gov/archives/category/tax-news_c1/info_budget_c1/data_document_budget-n2); “조직도”, 부산광역시, 2024.10.14. 검색, <https://www.busan.go.kr/bhorga/nization01>; “세입세출예산서”, 부산광역시, 2024.10.14. 검색, <https://www.busan.go.kr/ghstat>; “경기도 조직도”, 경기도청, 2024.10.14. 검색, <https://www.gg.go.kr/org/orgChart.do?menuId=1808>; “세입세출예산서”, 경기도청, 2024.10.14. 검색, <https://www.gg.go.kr/bbs/board.do?bsIdx=515&menuId=1946#page=1>; “조직도”, 강원특별자치도, 2024.10.14. 검색, <https://state.gwd.go.kr/portal/introduce/guidance/organization>; “세입세출예산서”, 강원특별자치도, 2024.10.14. 검색, <https://state.gwd.go.kr/portal/administration/finance/budget/2024>; “조직도”, 전북특별자치도, 2024.10.14. 검색, [https://www.jeonbuk.go.kr/index.jeonbuk?menuCd=DOM\\_000000101003001001](https://www.jeonbuk.go.kr/index.jeonbuk?menuCd=DOM_000000101003001001); “2024년 예산”, 전북특별자치도, 2024.10.14. 검색, [https://www.jeonbuk.go.kr/index.jeonbuk?menuCd=DOM\\_000000103001004050](https://www.jeonbuk.go.kr/index.jeonbuk?menuCd=DOM_000000103001004050); “2022년 예산”, 전북특별자치도, 2024.10.14. 검색, [https://www.jeonbuk.go.kr/index.jeonbuk?menuCd=DOM\\_000000103001004006](https://www.jeonbuk.go.kr/index.jeonbuk?menuCd=DOM_000000103001004006); “조직도”, 경상남도, 2024.10.14. 검색, [https://www.gyeongnam.go.kr/index.gyeongnam?menuCd=DOM\\_000000137001001000](https://www.gyeongnam.go.kr/index.gyeongnam?menuCd=DOM_000000137001001000);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서, 경상남도, 2024.10.14. 검색, [https://www.gyeongnam.go.kr/index.gyeongnam?menuCd=DOM\\_000000138003005001&searchYear=2024](https://www.gyeongnam.go.kr/index.gyeongnam?menuCd=DOM_000000138003005001&searchYear=2024);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서, 경상남도, 2024.10.14. 검색, [https://www.gyeongnam.go.kr/index.gyeongnam?menuCd=DOM\\_000000138003005001&searchYear=2022](https://www.gyeongnam.go.kr/index.gyeongnam?menuCd=DOM_000000138003005001&searchYear=2022)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 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그림 3-4]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 전달체계



출처: “2024년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침”, 여성가족부, 2024b, pp.5-6. 참고하여 저자 작성.

여성가족부는 기본 운영계획 및 운영지침 수립, 사업운영 평가 계획 수립 등 사업 총괄을 담당하며, 국고보조금을 교부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는 사업계획 수립과 검토, 조정하는 역할을 하며, 운영기관 선정 및 지도 감독 등을 수행하고, 국고보조금 교부 집행 및 지도점검, 관리한다. 다음으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방과 후 활동과 관련한 연간 사업·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수요조사 및 지역 맞춤형 홍보계획 수립, 대상 청소년을 발굴·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종사자에 대한 신규자 교육 및 직무연수 등과 현장점검(합동) 및 컨설팅 지원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담당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 또는 보호자는 거주지역의 방과후아카데미 운영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유·무선 전화로 면담 후 참여 신청이 가능하며, 정부24(www.gov.kr)의 온종

일 돌봄 원스톱 서비스(검색)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여성가족부, 2024b, p.14.).

〈표 3-29〉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추진체계

| 추진 주체                    | 주체별 역할                                                                                                                                                        |
|--------------------------|---------------------------------------------------------------------------------------------------------------------------------------------------------------|
| 여성가족부                    | 기본 운영계획 및 운영지침 수립<br>현장지도·점검, 컨설팅 총괄<br>사업 운영 평가 계획 수립<br>국고보조금 교부 및 관리<br>운영모델 개발·시범운영<br>방과 후 돌봄서비스 중앙부처 협력체계 구축 등                                          |
| 지자체<br>(시·도 및 시·<br>군·구) | 시·도 사업 총괄<br>사업계획 수립·검토·조정<br>운영기관 선정 및 지도 감독 등 수행<br>국고보조금 교부집행 및 지도점검, 관리<br>관내 방과 후 활동 수요조사 및 방과후아카데미 확대·홍보계획 수립<br>관내 돌봄서비스 기관 간의 연계·조정 등(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협조) |
| 운영기관                     | 연간 사업·운영계획 수립<br>방과 후 활동 수요조사 및 지역 맞춤형 홍보계획 수립<br>대상 청소년 발굴·지원<br>예산 집행 및 정산 결과 보고<br>지역 내 돌봄서비스 기관 간의 연계·협력                                                  |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운영 전담 인력 교육(신규자 교육 및 직무연수 등)<br>현장점검(합동) 및 컨설팅 지원<br>운영매뉴얼 제작 및 배포<br>사업 종합평가 및 우수사례 발굴<br>홍보, 민간자원 개발·연계 지원 등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br>법부처 공동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운영 지원 등     |

출처: “2024년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침”, 여성가족부, 2024b, pp.5-6. 참고하여 저자 작성.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관련 업무는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 내 청소년정책과와 청소년활동진흥과에서 담당한다. 담당 인력으로는 업무 총괄을 맡은 과장 1명과 주무관 1명이 있으며, 이들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업무 외에도 다양한 업무를 겸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장과 주무관의 업무 기여율은 청소년 참여 및 활동 지원 단위 사업 중에서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산출하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개년 동안 모두 9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0〉 여성가족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담당 인력 및 업무기여율 가정

| 인력    | 업무 내용                                                                             | 비고 | 업무기여율<br>(해당 사업비/총사업비)                                                                                                                                               |
|-------|-----------------------------------------------------------------------------------|----|----------------------------------------------------------------------------------------------------------------------------------------------------------------------|
| 과장 1  | 청소년활동진흥과 업무 총괄<br>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학교 안팎 청소년활동 지원, 청소년 지도사 양성 등                      | 겸무 | (세부사업)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비/(단위사업)<br>청소년참여 및 활동 지원<br>(2022년) 29,440백만 원 /32,492백만 원=90.6%<br>(2023년) 31,729백만 원 /34,422백만 원=92.2%<br>(2024년) 31,588백만 원 /31,588백만 원=100% |
| 주무관 1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원사업 관리<br>청소년방과후 활동 지원센터 운영지원<br>법정부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br>법인·단체 신청·관리·점검 업무 | 겸무 | 상동                                                                                                                                                                   |

주: (세부사업)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에 (내역사업)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단 운영, (내역사업)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원이 해당됨.

출처: “조직 및 기능”, 여성가족부, 2024.10.31. 검색, [https://www.mogef.go.kr/mi/osg/mi\\_osg\\_s001.do](https://www.mogef.go.kr/mi/osg/mi_osg_s001.do); “2022년 여성가족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여성가족부, 2022, p.582.; “2024년 여성가족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여성가족부, 2024a, p.608. 참고하여 저자 작성.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을 담당하는 인력은 총 5명으로 부장 1명, 과장 2명, 대리 2명으로 구성된다. 과장과 대리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업무만 단독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부장은 여러 업무를 함께하고 있으나, 사업별 예산액이 공개되지 않은 한계가 있어서 해당 부서의 업무 개수를 기준으로 업무기여율을 추정하였다.

〈표 3-31〉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담당 인력 및 업무기여율 추정

| 인력            | 업무 내용                                                                                | 비고 | 업무기여율                                                                                        |
|---------------|--------------------------------------------------------------------------------------|----|----------------------------------------------------------------------------------------------|
| 교류협력부<br>부장 1 | 교류협력부 업무 총괄<br>청소년교류사업 기획<br>청소년박람회 운영<br>교류활동프로그램 지원<br>청소년특별회의 운영<br>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 겸무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사업별 예산액이 공개되지 않아, 교류협력부 업무 5개 업무 개수로 기여율 반영(20% 적용)<br>(임원 연봉 기본급 109,204천 원 반영) |
| 과장 1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    | 직원 평균 보수 100% 적용<br>(정규직 평균 보수액 52,738천 원 반영)                                                |
| 과장 2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    | 직원 평균 보수 100% 적용<br>(정규직 평균 보수액 52,738천 원 반영)                                                |
| 대리 1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    | 직원 평균 보수 100% 적용<br>(신입사원 평균 보수액 37,755천 원 반영)                                               |
| 대리 2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    | 직원 평균 보수 100% 적용<br>(신입사원 평균 보수액 37,755천 원 반영)                                               |

출처: “일하는 사람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24.10.21. 검색, [https://www.kywa.or.kr/about/about04\\_6.jsp#tap00](https://www.kywa.or.kr/about/about04_6.jsp#tap00); “직원 평균 보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2024.11.1. 검색, <https://alio.go.kr/item/itemReportTerm.do?apbald=C0447&reportFormRootNo=2060&disclosureNo>; “임원연봉”,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2024.11.1. 검색, <https://alio.go.kr/item/itemReport.do?seq=2024061302828936&disclosureNo=2024061302828936>.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담당하는 시도청의 부서는 평생교육국, 아동청소년과, 교육청소년과, 청소년정책과, 청소년활동팀 등 다양하다. 주로 팀장 1명과 주무관 1명이 이 업무를 담당하며, 다른 업무와 겸무하는 것이 특징이다. 사업 예산을 기준으로 산출한 시도청 담당 팀장의 업무기여율은 평균 23.7~29.7% 정도이며, 주무관은 56.5~67.6%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2〉 시도의 담당 인력 및 업무기여율 추정(시도 일부)

| 시도 | 인력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업무 내용                                                                                                                                                                | 비고 | 업무기여율(%)<br>(해당 사업비/총사업비) |      |      |
|----|------------------------|---------------------------------------------------------------------------------------------------------------------------------------------------------------------------------|----|---------------------------|------|------|
|    |                        |                                                                                                                                                                                 |    | 2022                      | 2023 | 2024 |
| 서울 | 평생교육국<br>청소년시설평가<br>팀장 | 청소년시설평가팀 업무 총괄<br>청소년시설 운영평가 등                                                                                                                                                  | 겸무 | 5.91                      | 6.0  | 5.9  |
|    | 주무관 1                  | 청소년시설 지도 점검 추진 총괄(정기)<br>청소년시설 특별 지도점검 실시<br>청소년시설 평가위원회 운영 및 협약<br>불이행 제재조치 처분 총괄<br>청소년시설 회계감사 시행<br>청소년시설 종사자 청렴 및 전문성 특별<br>교육 추진<br>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운영<br>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 겸무 | 26.4                      | 27.4 | 25.5 |
| 부산 | 아동청소년과<br>청소년정책팀장      | 청소년정책팀 업무 총괄<br>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 정책 분석 등                                                                                                                                            | 겸무 | 70.5                      | 71.8 | 79.5 |
|    | 주무관 1                  |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br>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br>청소년 열린축제<br>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br>청소년 어울림마당 및 동아리 지원<br>청소년 공부방 운영<br>한러, 한일청소년 국제교류 업무                                                              | 겸무 | 70.5                      | 78.8 | 79.8 |
| 대구 | 교육청소년과<br>청소년지원팀       | 청소년지원팀 업무 총괄<br>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안전망<br>관련<br>학교폭력 예방, 청소년 지원 관련 법인,<br>단체 관리<br>청소년 복지시설 운영, 학교밖청소년,<br>청소년 유해 환경<br>대구청소년창의센터, 성문화센터, 참<br>여예산제, 성범죄자 취업, 생리용품 지<br>원, 협의회 운영 등 | 겸무 | 11.1                      | 13.6 | 13.1 |
|    | 주무관 1                  | 청소년 활동프로그램 공모 및 사업<br>추진<br>청소년 활동지원 방과후아카데미, 꿈<br>의오케스트라, 특화거리 조성<br>청소년 수련시설 민간위탁 운영<br>청소년증 발급<br>청소년단체 민간인 포상                                                               | 겸무 | 23.5                      | 41.9 | 42.0 |

| 시도 | 인력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업무 내용                                                                                                      | 비고 | 업무기여율(%)<br>(해당 사업비/총사업비) |      |      |
|----|-------------------|-----------------------------------------------------------------------------------------------------------------------|----|---------------------------|------|------|
|    |                   |                                                                                                                       |    | 2022                      | 2023 | 2024 |
| 인천 | 여성가족국<br>청소년정책과   | 청소년정책팀 업무 총괄<br>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지원<br>청소년국제교류 및 저소득층 해외체<br>험, 청소년 근로보호센터 운영 등                                          | 검무 | 5.8                       | 6.3  | 6.4  |
|    | 주무관 1             | 청소년 지도자 처우 개선, 청소년문<br>화대축제<br>청소년 진로 프로그램 운영<br>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br>청소년 지도자 배치 지원<br>아동청소년 꿈나무 멘토링 추진<br>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등 | 검무 | 71.5                      | 70.9 | 75.6 |
| 광주 | 아동청소년과<br>청소년정책팀장 | 청소년정책팀 업무 전반<br>청소년지도사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br>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관리, 청소년<br>방과후아카데미 사업 운영 등                                        | 검무 | 20.3                      | 19.6 | 22.1 |
|    | 주무관 1             |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운영지원<br>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운영<br>청소년어울림마당 및 청소년 동아리<br>활동 운영<br>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지원<br>청소년의 달 행사 추진 등           | 검무 | 20.3                      | 19.6 | 22.1 |
| 세종 | 청소년팀장             | 청소년팀 업무 총괄<br>청소년정책, 청소년 안전망, 청소년<br>특별지원, 수련시설, 학교 밖 청소년<br>지원,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 검무 | 31.5                      | 26.8 | 28.9 |
|    | 주무관 1             | 청소년정책, 청소년안전망, 청소년특<br>별지원, 방과후아카데미운영, 유해환<br>경단속 업무                                                                  | 검무 | 96.7                      | 90.4 | 89.9 |
|    | 주무관 2             | 청소년 꿈끼카드 지원, 청소년증 발<br>급,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방과<br>후아카데미 운영지원                                                               | 검무 | 50.6                      | 49.9 | 51.0 |

| 시도 | 인력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업무 내용                                                        | 비고 | 업무기여율(%)<br>(해당 사업비/총사업비) |      |      |
|----|---------|-------------------------------------------------------------------------|----|---------------------------|------|------|
|    |         |                                                                         |    | 2022                      | 2023 | 2024 |
| 경기 | 청소년활동팀장 | 청소년활동팀 업무 총괄<br>공공청소년수련시설 건립<br>청소년 종합예술, 연극, 관악제<br>경기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지원 | 겸무 | 20.5                      | 24.0 | 28.3 |
|    | 주무관 1   | 경기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지원                                                     |    | 100                       | 100  | 100  |

주: 여성가족정책실(2022년)에서 2023년 평생정책국으로 변동됨에 따라, 담당 국의 총사업비를 산출하는 것이 어려움. 업무기여율은 2023년과 2024년의 평균값을 적용함.

출처: “조직도”, 서울특별시, 2024.10.14. 검색, <https://org.seoul.go.kr/org/orgChart.do>; “서울시 2022~2024년 예산서(세출예산)”, 서울특별시, 2024.10.14. 검색, [https://news.seoul.go.kr/gov/archives/category/tax-news\\_c1/info\\_budget\\_c1/data\\_document\\_budget-n2](https://news.seoul.go.kr/gov/archives/category/tax-news_c1/info_budget_c1/data_document_budget-n2); “조직도”, 부산광역시, 2024.10.14. 검색, <https://www.busan.go.kr/bhorganization01>; “세입세출예산서”, 부산광역시, 2024.10.14. 검색, <https://www.busan.go.kr/ghstat>; “행정조직도”, 대구광역시, 2024.10.14. 검색, [https://www.daegu.go.kr/index.do?menu\\_id=00000248](https://www.daegu.go.kr/index.do?menu_id=00000248); “세입세출예산서”, 대구광역시, 2024.10.14. 검색, <https://jumin.daegu.go.kr/budget/information/informationBudgetBill.do>; “시 조직도”, 인천광역시, 2024.10.14. 검색, <https://www.incheon.go.kr/IC040221>; “세입세출예산서”, 인천광역시, 2024.10.14. 검색, <https://www.incheon.go.kr/open/OPEN030101>; “조직도”, 광주시청, 2024.10.14. 검색, <https://www.gjcity.go.kr/portal/contents.do?mId=0103010000>; “세입세출결산서”, 광주시청, 2024.10.14. 검색, <https://www.gjcity.go.kr/portal/contents.do?mId=0303030000>; “조직도”, 세종특별자치시청, 2024.10.14. 검색, [https://www.sejong.go.kr/kor/sub01\\_010101.do#sub01\\_010101](https://www.sejong.go.kr/kor/sub01_010101.do#sub01_010101); “세종특별자치시 재정정보 공개 예산정보”, 세종특별자치시청, 2024.10.14. 검색, [https://www.sejong.go.kr/prog/yesanInfo/finance/sub05\\_01/list.do](https://www.sejong.go.kr/prog/yesanInfo/finance/sub05_01/list.do); “경기도 조직도”, 경기도청, 2024.10.14. 검색, <https://www.gg.go.kr/org/orgChart.do?menuId=1808>; “세입세출예산서”, 경기도청, 2024.10.14. 검색, <https://www.gg.go.kr/bbs/board.do?bsIdx=515&menuId=1946#page=1>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 3.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차별적 특성

주요 광역자치단체의 아동돌봄 관련 인프라 사업은 <표 3-33>과 같다. 먼저, 서울시는 맞벌이 가구 등의 자녀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초등학교 대상 방과후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지만, 특별히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아동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인천시는 영유아와 부모를 위한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자 혁

신육아복합센터를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다(김지혜, 2024.4.2.). 세종시는 지역 내 돌봄 환경 개선을 위한 목적에서 놀이·활동 공간, 프로그램실, 가족상담실, 장난감 대여존, 세척실, 수유실 등으로 구성된 공동육아나눔터를 총 18개소로 늘려 운영하고 있다(세종특별자치시, 2023.12.21.). 이와 함께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조성하여 미세먼지나, 폭우, 대설과 같은 기후변화나 계절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이은파, 2023.12.22.).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주민이 함께 이웃의 아이를 돌보고 정보를 교류할 수 있도록 제주방언으로 ‘품앗이’를 의미하는 ‘수눔음’에서 따온 명칭으로 ‘수눔음육아나눔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고성식, 2020.2.10.).

이처럼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아동돌봄지원은 국가의 표준적인 아동돌봄체계를 바탕으로 지역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를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지자체 사업은 특히 지역사회 중심으로 공동육아지원에 초점을 두고 중앙정부 사업을 해당 지역의 수요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운영하는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표 3-33〉 지방자치단체 돌봄 관련 인프라 사업

| 시도 | 사업명                           | 지원 기준                                  | 지원 내용                      | 지원 기간    | 2023<br>수혜 인원<br>(명/개소) | 2022<br>결산<br>(백만 원) | 2023<br>예산<br>(백만 원) |
|----|-------------------------------|----------------------------------------|----------------------------|----------|-------------------------|----------------------|----------------------|
| 서울 | 우리동네<br>키움센터<br>설치운영          | 돌봄 필요<br>6~12세 아동<br>(소득무관,<br>초등생 중심) | 리모델링 활용                    | 연중       | 277개소                   | 40,208               | 48,067               |
|    | 공동육아방<br>및 공동육아<br>나눔터<br>활성화 | 66㎡ 이상<br>공간 확보                        | 가정양육 가정<br>육아커뮤니티<br>공간 제공 | 12<br>개월 | 130개소                   | 3,486                | 3,339                |

| 시도 | 사업명               | 지원 기준                                          | 지원 내용                                  | 지원 기간 | 2023 수혜 인원 (명/개소) | 2022 결산 (백만 원) | 2023 예산 (백만 원) |
|----|-------------------|------------------------------------------------|----------------------------------------|-------|-------------------|----------------|----------------|
| 인천 | 혁신육아 복합센터 건립      | -                                              | 혁신육아복합센터(아이사랑 누리센터, 공공 산후조리원) 건립       | -     | -                 | 327            | 10,825         |
| 세종 | 지역사회 내 돌봄 여건 확충   | 영유아 돌봄서비스 필요 세종시민                              | 공동육아나눔터 2개소 추가 확충 및 총 18개소 운영          | 연중    | 170,000           | 90             | 749            |
|    | 공공형 실내, 실외 놀이터 조성 | 세종시민                                           | 공공형 실내 놀이터 조성 (신규 2개소)                 | 연중    | 10,000            | 900            | 1,600          |
| 경기 | 아이사랑 놀이터 설치       | 아이사랑 놀이터 미설치 시군, 인구 대비 시설 부족, 상대적 열악한 지역 우선 설치 | 아이사랑놀이터 확대 설치                          | 연중    | 2개소               | 300            | 900            |
| 제주 | 수놓음 육아나눔터 조성 운영   | 33㎡(10평) 이상 유휴공간 확보 나눔터 운영(하고자 비영리단체 (법인) 등    | 지역 내 33㎡(10평) 이상 유휴공간 활용 돌봄 공간 조성 및 운영 | 연중    | 35개소              | 380            | 410            |

출처: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2023, pp.122-123.

## 제3절 비용분석

### 1. 전달비용의 개념과 추계 방법

본 절에서는 정책 대상과 프로그램 내용 측면에서 유사성과 중복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 및 청소년방과

후아카데미, 세 개 사업에 대한 비용분석을 통해 사업 조정을 통한 지출 효율화 가능 여부를 진단하고 그 규모를 가늠해 보고자 한다. 사회복지사업에서 전달비용(Administrative cost)은 복지급여가 수급자에게 전달되기까지 발생하는 행정·운영 비용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항목으로는 정책의 설계, 관리, 집행, 평가에 소요되는 인건비(행정관리 인력, 사업담당자 등의 급여 및 복리후생비)와 운영비(사무실 임대료, 공공요금, 소모품 구입비, 홍보비), 시스템 유지비(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관리비)와 사업 수행을 위한 기타 행정비용 등이 있다. 이처럼 직접적인 행정·운영비를 중심으로 전달비용을 정의하고 사업별 지출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기준으로 행정 비효율성을 비교해 볼 수 있다. 한편, 사업별 지출효율성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전달비용 이외에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비용까지 포함한 보다 넓은 의미의 전달비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살펴보는 세 개 사업은 시설을 기반으로 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각 사업은 자격 요건과 서비스 내용 등을 달리하면서 사업별로 추정된 수요와 공간적 배치 계획에 따라 인프라를 확대해 왔다. 앞에서 보았듯이 각 사업이 지원하는 대상은 중첩되거나 일반적으로 서비스의 중복 이용은 제한된다. 이러한 제도적 제약이 없더라도 물리적으로 한 아동이 동일한 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한 개에 한정된다. 이는 달리 보면, 세 개 사업의 인프라 총량이 전체 아동돌봄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확충되었다 하더라도 사업별로 지역에 따라 수요에 미달하거나 과잉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어떤 사업의 시설 이용률이 최적 수준보다 낮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나, 유사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중첩적인 지원 대상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서비스의 존재도 하나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 이에 사업별 지출 효율성을 검토하기 위해 직접적인 전달비용(관리운영비) 이외의 사업운

영에 따른 손실비용을 고려하여 살펴본다.

전달비용을 추계할 때 지출의 분류와 구성은 <표 3-34>와 같다. 관리 운영비, 즉 직접 전달비용은 관리 인건비와 시스템 구축·유지비로 구성된다. 사무실 임대료나 홍보비 같은 운영비는 사업비와 구분되지 않거나, 추정할 수 있는 자료의 한계로 여기에서는 포함하지 않는다. 관리 인건비의 경우 1인이 해당 업무를 100% 전담하는 경우에는 전제 인건비를 반영하고, 겸무인 경우 앞에서 계산한 업무 비율을 적용하여 추정하였다. 사업비는 급여를 구성하는 사업 인건비, 돌봄시설 운영비, 프로그램 교재 및 기자재비로 구분하며, 국비와 지방비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총사업비는 추정된 관리운영비와 사업비의 합계이다.

<표 3-34> 지출 항목 분류와 고려사항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고려사항                                                                                                           |
|--------|----------------|---------------------------------------------------------------------------|----------------------------------------------------------------------------------------------------------------|
| 관리 운영비 | 관리 인건비         |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아동권리 보장원, 청소년활동진흥원, 17개 시도 및 기초자치단체의 사업 운영·관리를 위한 담당 직원 인건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업무 기여율 반영</li> <li>• (산출식) 기여율(%)=해당 사업비/담당업무 사업비 합계</li> </ul>    |
|        | 시스템 구축         | 사업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도와 상관없이 최초 시스템 구축 비용 반영</li> </ul>                                   |
|        | 시스템 유지보수       | 사업운영을 위한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 -                                                                                                              |
| 사업비    | 사업 인건비         | 돌봄교사 등 센터 종사자 인건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달비용 추계 시에는 사업비 총계로 산출</li> <li>• 손실비용 추정 시 가동률(=현원/정원) 반영</li> </ul> |
|        | 센터 운영비         |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연료비, 기관운영비, 회의비, 사업운영비                        |                                                                                                                |
|        | 프로그램 교재 등 기자재비 | 사무용품, 전자제품, 학습기자재, 안전용품 등                                                 |                                                                                                                |
|        | 설치비            | 시설구축비, 리모델링비 및 공사와 직접 관련 있는 부대 경비, 환경개선비 등                                |                                                                                                                |

출처: 저자 작성.

다음으로 손실비용은 크게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예산불용에 따른 손실이다. 불용된 예산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잠재적 수익 또는 이익을 추정할 수 있다. 아동돌봄에 대한 사회적 수익률에 대해서 알려진 바 없으나, 재정운용상의 손실이라는 점에서 국고채(3년) 수익률을 적용하여 불용예산의 기회비용을 측정하였다. 예산불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행정비용이나 추가적인 조정비용도 존재할 것이나 여기에서는 반영하지 않는다. 두 번째 요소는 유희자원의 손실비용이다. 우선 돌봄시설이 저가동 상태라고 하여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운영비용은 계속 발생하며 이에 따른 고정비 부담이 증가한다. 여기에는 관리운영비를 포함하여 시설의 유지보수비, 공공요금, 감가상각비, 교사 인건비 등이 포함된다. 또한, 시설을 활용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기대수익의 손실 또는 사회적 기회비용도 손실비용에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 추정을 위한 자료가 매우 제한적이며 사업 목적 외에는 사용이 제한된 공공서비스 제공 시설이라는 점에서 고정비 부담 증가만을 손실비용으로 반영하여 추정한다. 유희 자원 손실비용은  $(1 - \text{현재이용률}) \times \text{고정비}$ 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사업비 중에서 아동 간식비나 연료비와 같이 저가동 시 비용이 감소하는 가변비용을 분리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재정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별 실행행위를 적용하여 재추정한 사업비와 관리운영비를 합산한 금액 전체를 고정비로 가정하여 손실비용을 추정한다. 다만, 사업별 현재 이용률은 정원 대비 이용아동 수 비율로 가정하여 적용한다.

## 2. 총비용과 전달비용 추계

### 가.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의 예산 지원은 「아동복지법」 제59조(비용 보조),<sup>15)</sup>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4조(비용 보조),<sup>16)</sup>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보조금의 교부 조건)<sup>17)</sup>에 따른다. 지원 대상은 기존 국고보조금 지원시설 중 정기 평가(기존 시설) 결과 등을 반영하여 선정한다. 신규 지원 시설은 정기 평가(신규 시설) 결과에 따라 설치 신고일 기준에서 24개월이 되는 해당 월부터 지원된다(보건복지부, 2024a, pp. 106-107.). 2024년 사업 예산은 국비 기준 2,518억 원 규모이며, 전년 대비 229억 원(10.0%)이 증가하였다.

15) 「아동복지법」

제59조(비용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수탁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

16)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4조

제54조(비용 보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9조에 따라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용료를 받는 아동 전용시설의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 비용으로 한정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 2에 따른 시설의 평가 결과 등 해당 아동 복지시설의 운영 실적을 고려하여 보조할 수 있다.

1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

제18조(보조금의 교부 조건)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과 예산에서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2조(용도 외 사용 금지) ①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간접보조사업은 법령과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표 3-35〉 지역아동센터 예산(국비)

(단위: 백만 원, %)

| 사업명                      | 계정              | 2022년<br>결산 | 2023년<br>예산<br>본예산(A) | 2024년   |         | 증감<br>(B-A) | (B-A)/<br>A |
|--------------------------|-----------------|-------------|-----------------------|---------|---------|-------------|-------------|
|                          |                 |             |                       | 정부안     | 확정(B)   |             |             |
| 지역아동센터<br>운영비 지원<br>(자율) | 지역<br>자율        | 155,045     | 185,580               | 213,666 | 213,666 | 28,086      | 15.1        |
| 지역아동센터<br>지원             | 지역<br>지원        | 38,742      | 39,721                | 33,930  | 33,930  | △5,791      | △14.6       |
| 지역아동센터<br>운영비<br>지원(제주)  | 제주<br>특별<br>자치도 | 2,517       | 2,993                 | 3,472   | 3,472   | 479         | 16.0        |
| 지역아동센터<br>운영비<br>지원(세종)  | 세종<br>특별<br>자치시 | 520         | 625                   | 719     | 719     | 94          | 15.0        |
| 합계                       |                 | 196,824     | 228,919               | 251,787 | 251,787 | 22,868      | 10.0        |

출처: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보건복지부, 2024c, p.3945, p.4240, p.4294. 참고하여 저자 작성.

지역아동센터의 예산 집행 방식은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이루어지며, 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다. 국고보조율은 지역별로 차등 적용되며, 서울은 30%, 지방은 50%, 평택시는 70%로 설정되어 있다. 본 분석에서는 국비와 지방비를 합산한 사업비를 기준으로 제시한다.

지역아동센터의 인건비 단가는 센터장 월 3,050천 원, 생활복지사 2,675천 원이며,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변동된다.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은 2023년에는 1인당 월 1,332.8천 원으로 책정되었으나, 2024년부터 근무시간별(12시간, 25시간, 40시간)로 구분하여 지원 단가를 적용하고 있다.

〈표 3-36〉 2023~2024년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단가

(단위: 천 원)

| 구분 | 인건비             | 2023                   | 2024                                                   |
|----|-----------------|------------------------|--------------------------------------------------------|
| 자율 | 센터장             | 2,976                  | 3,050                                                  |
|    | 생활복지사           | 2,610                  | 2,675                                                  |
| 지원 | 아동복지교사<br>파견 지원 | 1,332.8천 원<br>(단일가 적용) | 40시간: 2,464.3천 원<br>25시간: 1,544.6천 원<br>12시간: 677.5천 원 |

출처: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보건복지부, 2024c, p. 3939. 참고하여 저자 작성.

지역아동센터의 기본운영비는 센터 규모에 따라 단가가 다르게 측정되는데, 10인 이하 정원의 센터는 읍면·동 지역과 상관없이 월 1,060천 원이 지원되며, 30인 이상 정원의 센터는 동 지역에 월 1,460천 원, 읍면 지역에 월 1,645천 원이 지원되고 있다. 연 기준으로 산출하면, 10인 이하 정원의 센터는 약 12,720천 원이 지원되며, 30인 이상 정원의 센터는 약 19,740천 원이 지원된다고 할 수 있다.

〈표 3-37〉 2024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단가

| 구분                            | 정원 구분     |         | 단가(천 원)          | 법정<br>종사자 | 다센터 운영<br>비영리 법인<br>추가 운영비 |
|-------------------------------|-----------|---------|------------------|-----------|----------------------------|
| 지역아동센터<br>기본운영비 <sup>1)</sup> | 10인 이하    |         | 월 1,060          | 2명        | 월 20만 원                    |
|                               | 10~19인 이하 | 동 지역    | 월 1,060          |           |                            |
|                               |           | 읍면 지역   | 월 1,231          |           |                            |
|                               | 20~29인 이하 | 동 지역    | 월 1,384          |           |                            |
|                               |           | 읍면 지역   | 월 1,580          |           |                            |
|                               | 30인 이상    | 동 지역    | 월 1,460          | 3명        | 월 30만 원                    |
| 읍면 지역                         |           | 월 1,645 |                  |           |                            |
| 시도지원단 운영비 지원 <sup>2)</sup>    |           |         | 연 204,000        | -         | -                          |
| 경상경비                          | 일반 수용비    |         | 연 19,000         |           |                            |
|                               | 국내 여비     |         | 연 9,000          |           |                            |
|                               | 사업추진비     |         | 연 2,000          |           |                            |
|                               | 일반연구비     |         | 연 90,000~120,000 |           |                            |

주: 1) 2022~2024년 단가 변동 없음.

2) 2023년 198,000천 원에서 2024년 204,000원으로 변동.

출처: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보건복지부, 2024c, p. 3938, p.4017. 참고하여 저자 작성.

2024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비 내에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시간 연장’ 내역사업이 포함되어 편성·지출되었다. 해당 내역 사업은 지역아동센터 지원(세부사업)의 지역지원 계정에서 지출되었으나, 다함께돌봄사업의 연장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추가적인 인건비와 운영비에 해당한다. 이에 해당 사업 내용은 지역아동센터 사업비에서 제외하고, 다함께돌봄사업에 포함하였다.

〈표 3-38〉 지역아동센터 지원(지역지원계정)사업에 편성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시간 연장 추가 지원비

(단위: 백만 원)

| 구분   | 산출식                                                                                               | 국비  | 지방비 | 합계  |
|------|---------------------------------------------------------------------------------------------------|-----|-----|-----|
| 합계   | - 인건비+운영비+기본경비                                                                                    | 353 | 359 | 712 |
| 인건비  | - 서울 1개소 × 1명 × 1,470천 원 × 12개월 × 30% = 5백만 원<br>- 지방 29개소 × 1명 × 1,470천 원 × 12개월 × 50% = 256백만 원 | 261 | 268 | 529 |
| 운영비  | - 서울 1개소 × 500천 원 × 12개월 × 30% = 2백만 원<br>- 지방 29개소 × 500천 원 × 12개월 × 50% = 87백만 원                | 89  | 91  | 180 |
| 기본경비 | - 3백만 원                                                                                           | 3   | -   | 3   |

출처: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보건복지부, 2024c, p.4018. 참고하여 저자 작성.

2024년 지역아동센터의 총비용은 약 5,3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 중 관리운영비는 약 109억 원(2.1%)으로,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17개 시도 및 시군구 담당 공무원의 인건비와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비용이 포함된다.

전체 예산의 약 80%는 지역아동센터 인건비(센터장, 아동복지교사 등)로 사용되며, 약 16%는 센터 운영비에 해당된다. 지역아동센터는 2004년 도입된 이후 중앙정부(보건복지부) 차원의 시설비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를 포함한 시설비는 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했을 가능성이 크다.

〈표 3-39〉 지역아동센터 전달비용 추계

(단위: 백만 원, %)

| 구분                    |                       | 세부 항목<br>(계정)           | 산출식 <sup>1)4)</sup>                                                                                                                                                                                                                                         | 총비용(국비+지방비)        |                    |
|-----------------------|-----------------------|-------------------------|-------------------------------------------------------------------------------------------------------------------------------------------------------------------------------------------------------------------------------------------------------------|--------------------|--------------------|
|                       |                       |                         |                                                                                                                                                                                                                                                             | 2023               | 2024               |
| 총계                    |                       |                         |                                                                                                                                                                                                                                                             | 488,921<br>(100.0) | 530,017<br>(100.0) |
| 관리운영비 합계              |                       |                         |                                                                                                                                                                                                                                                             | 11,237<br>(2.3)    | 10,867<br>(2.1)    |
| 관<br>리<br>운<br>영<br>비 | 관<br>리<br>인<br>건<br>비 | 보건복지부<br>담당 직원<br>인건비   | 보건복지부 담당 직원 수(과장 1, 사무관 1, 주무관 2)×(공무원) 인건비 단가×근무 월수<br>* 각 연도 공무원보수규정 반영(평균 호봉인 15호봉 반영) <sup>2)</sup><br>** 과장 업무기여율(81.7%), 팀장(사무관) 업무기여율(81.7%), 주무관(100%기여율 적용)<br>= (과장 1명×4,817천 원×12개월×0.817)+(사무관 1명×4,361천 원×12개월×0.817)+(주무관 2명×3,377천 원×12개월×1) | 167                | 171                |
|                       |                       | 아동권리보장원<br>담당 직원<br>인건비 | 부장 1(겸무), 팀장 1, 과장 2, 대리 1, 주임 5 (임원 1명×임원 평균 보수(연봉))×업무기여율(24년 6.7%, 23년 6.0%, 22년 6.3%) + (직원 9명×평균임금×업무기여율(100%))<br>= (임원 1명×127,000천 원×0.67)+(직원 9명×47,000천 원)                                                                                         | 499                | 508                |
|                       |                       | 17개 시도<br>담당 직원<br>인건비  | 17개 시도 담당 직원 수(팀장, 주무관 등)×(공무원) 인건비 단가×근무 월수×업무기여율<br>* 각 연도 공무원보수규정 반영(평균 호봉인 15호봉 반영)<br>** 각 17개 시도담당자의 업무기여율 비중=지역아동돌봄센터 사업비/담당업무의 총사업비<br>= (서울 예시) (사무관 1명×4,361천 원×12개월×기여율 0.993)+(주무관 1명×3,377천 원×12개월×기여율 0.993)(주무관 3명×3,377천 원×12개월×기여율 1)      | 1,167              | 1,183              |

| 구분     |           | 세부 항목<br>(계정)          | 산출식 <sup>1)4)</sup>                                                                                                                                                                     | 총비용(국비+지방비)                                                                              |                   |         |
|--------|-----------|------------------------|-----------------------------------------------------------------------------------------------------------------------------------------------------------------------------------------|------------------------------------------------------------------------------------------|-------------------|---------|
|        |           |                        |                                                                                                                                                                                         | 2023                                                                                     | 2024              |         |
|        |           | 기초자치단체<br>담당 직원<br>인건비 | 각 지자체의 평균 담당 직원 수×(공무원) 인건비 단가×근무월×226개 시군구<br>* 각 연도 공무원보수규정 반영(평균 호봉인 15호봉 반영)<br>= (경기도 광주시 예시) {(사무관 1명×4,361천 원×12개월×기여율 0.2)+(주무관 1명×3,377천 원×12개월×기여율 0.716)}<br>=시군구 평균×226 지자체 | 9,325                                                                                    | 8,925             |         |
|        | 시스템       | 시스템<br>구축 및 운영         |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sup>3)</sup><br>((구)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1,354)                                                                                  | (508)             |         |
|        |           | 유지<br>보수               |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시스템 유지보수<br>(아동권리보장원 사업설명자료 참고)                                                                                                                                               | 79                                                                                       | 79                |         |
| 사업비 합계 |           |                        |                                                                                                                                                                                         | 477,684<br>(97.7)                                                                        | 519,150<br>(97.9) |         |
| 사업비    | 사업<br>인건비 | 인건비 소계                 |                                                                                                                                                                                         | 386,356<br>(79.0)                                                                        | 432,750<br>(81.6) |         |
|        |           | 센터장<br>인건비             | 자<br>율                                                                                                                                                                                  | 센터 개소수×센터장 1명×단가×근무 월수<br>= 4,108개소×센터장 1명×월 3,050천 원×12개월                               | 146,491           | 150,353 |
|        |           |                        | 제<br>주                                                                                                                                                                                  | = 65명×월 3,050천 원×12개월                                                                    | 2,300             | 2,379   |
|        |           |                        | 세<br>종                                                                                                                                                                                  | = 13명×월 3,050천 원×12개월                                                                    | 464               | 476     |
|        |           | 생활복지사<br>(종사자)         | 자<br>율                                                                                                                                                                                  | 종사자 수×단가×근무 월수<br>= {5,430명×월 2,675천 원×12개월}<br>+{25인 이상 시설 생활복지사 2,612명×월 2,675천 원×6개월} | 168,157           | 216,226 |
|        |           |                        | 제<br>주                                                                                                                                                                                  | = {81명×2,675천 원×12개월}+{25인 이상 시설 생활복지사 47명×월 2,675천 원×6개월}                               | 2,518             | 3,354   |
|        |           |                        | 세<br>종                                                                                                                                                                                  | = {13명×월 2,675천 원×12개월}+{25인 이상 시설 생활복지사 6명×월 2,675천 원×6개월}                              | 532               | 514     |

110 유사 사회복지사업 전달비용과 지출효율성

| 구분  | 세부 항목<br>(계정)    |    | 산출식 <sup>1)4)</sup>                                                                                                                                       | 총비용(국비+지방비)      |                  |
|-----|------------------|----|-----------------------------------------------------------------------------------------------------------------------------------------------------------|------------------|------------------|
|     |                  |    |                                                                                                                                                           | 2023             | 2024             |
|     |                  | 지원 | 근무시간×파견교사 수×단가×12개월<br>= (40시간×200명×월 2,464천 원×12개월)+(25시간×2,576명×월 1,545천 원×12개월)+(12시간×712명×월 677천 원×12개월)<br>* 23년에는 근무시간 구분 없이 단가 1,332.7천 원으로 단일가 적용 | 65,894           | 59,449           |
| 운영비 | 운영비 소계           |    |                                                                                                                                                           | 85,827<br>(17.6) | 86,400<br>(16.3) |
|     | 기본운영비            | 자율 | 센터 개소수×단가×근무 월수<br>= 기본 4,108개소×(월 1,060~1,645천 원)×12개월                                                                                                   | 68,392           | 68,473           |
|     | 추가운영비            | 자율 | 센터 개소수×단가×근무 월수<br>= 기본 1,387개소×(월 200~300천 원)×12개월                                                                                                       | 3,380            | 4,329            |
|     | 기본운영비            | 제주 | 센터 개소수×단가×근무 월수<br>= 기본 4,108개소×(월 1,060~1,645천 원)×12개월                                                                                                   | 1,081            | 1,089            |
|     | 추가운영비            | 제주 | 센터 개소수×단가×근무 월수<br>= 기본 38개소×(월 200~300천 원)×12개월                                                                                                          | 97               | 121              |
|     | 기본운영비            | 세종 | 센터 개소수×단가×근무 월수<br>= 기본 13개소×(월 1,060~1,645천 원)×12개월                                                                                                      | 233              | 228              |
|     | 추가운영비            | 세종 | 센터 개소수×단가×근무 월수<br>= 기본 8개소×(월 200~300천 원)×12개월                                                                                                           | 19               | 28               |
|     | 특성별 지역 아동센터 추가지원 | 지원 | 센터 개소수×단가×근무 월수<br>= (특수 목적형 840개소×월 600천 원×12개월) + (토요 운영 750개소×월 300천 원×12개월)                                                                           | 9,278            | 8,748            |
|     | 시도지원단 운영         | 지원 | 센터 개소수×단가<br>= 16개소×204,000천 원                                                                                                                            | 3,168            | 3,264            |

| 구분  | 세부 항목<br>(계정)               |    | 산출식 <sup>1)4)</sup>                                                                                         | 총비용(국비+지방비)    |            |
|-----|-----------------------------|----|-------------------------------------------------------------------------------------------------------------|----------------|------------|
|     |                             |    |                                                                                                             | 2023           | 2024       |
|     | 경상경비                        | 지원 | 일반수용비+국내 여비+사업추진비+일반연구비 등<br>= 19,000천 원+9,000천 원+2,000천 원<br>+90,000천 원<br>* 23년 대비 24년 일반연구비 60,000천 원 감소 | 180            | 120        |
| 설치비 | 설치비 소계                      |    |                                                                                                             | 5,500<br>(1.1) | 0<br>(0.0) |
|     | 리모델링비 등 환경개선비 <sup>5)</sup> | 지원 | 운영 주체에 따른 단가×센터 개소수<br>= (개인)10,000천 원×250개소<br>= 2,500,000천 원+(지자체, 법인)30,000천 원×100개소<br>= 3,000,000천 원   | 5,500          | 순감         |

주: 1) 센터 개소수, 센터장 수. 종사자 수는 보건복지부 각 연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의 예산산출 근거 자료에 기초하여 산출하였고, 산출식은 지면의 한계로 2024년 기준으로 작성함.

2) 과장(4급, 15호봉 반영) 보수는 2022년 4,621천 원, 2023년은 4,700천 원, 2024년은 4,817천 원임. 팀장(5급, 15호봉 반영) 보수는 2022년 4,184천 원, 2023년 4,255천 원, 2024년 4,361천 원임. 주무관(7급, 15호봉 반영)은 2022년 3,239천 원, 2023년 3,295천 원, 2024년 3,377천 원 반영함.

3)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은 해당 사업의 직접적인 시스템 구축 비용이 아니므로 산출에서 제외함.

4) 2023년에는 다함께돌봄센터 지원(지역지원계정)이었으나, 2024년에 지역아동센터 지원(지역지원계정)으로 이관됨.

5) 돌봄환경 개선을 위한 내부 리모델링비 및 화재 안전 성능 보강 비용 지원

출처: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보건복지부, 2024c, pp. 3937-4297.; “각 연도 직종별 공무원 보수표”, 인사혁신처, 2024.10.10. 검색, <https://www.mpm.go.kr/mpm/info/resultPay/bizSalary/2024/> 참고하여 저자 작성.

## 나. 다함께돌봄

돌봄이 필요한 만 6~12세 아동에게 방과 후 돌봄, 문화·예술·체육 및 지역탐방 프로그램 제공 등 지역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돌봄센터에는 센터의 운영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설치비가 지원된다. 다함께돌봄사업은 2023년 이후 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자율, 세종, 제주)과 지역지원계정으로 분리·이관되어 과년도 예산·집행·결산 값은 내역별로 각각 계산하여 작성한다. 사업 추진은 직접 수행과 자치단체보조 사업으로 시행되며, 국고보조율은 서울이 30%, 지방이 50%이다. 2024년 확정 예산을 기준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자율계정은 565억 2천만 원, 다함께돌봄센터지원(제주)은 6억 5천만 원, 다함께돌봄센터지원(세종)은 4억 8천만 원이 각각 정부 예산으로 편성되었다. 총지출은 576억 6천만 원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시간 연장 시범사업’(2023년, 5억 400만 원)이 2023년까지 다함께돌봄센터 사업의 지역지원계정에서 운영되다가, 2024년부터 지역아동센터 사업의 지역지원계정으로 이관되어 집행되었다는 것이다. 이 시범사업은 출퇴근 시간대의 돌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오전과 야간에 각각 2시간씩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다함께돌봄센터에 추가적인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의 예산이 기존 다함께돌봄센터 계정이 아닌 지역아동센터 사업의 지역지원계정에서 지출된 점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는 운영 목적과 체계가 구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계정 이동이 이루어진 이유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사업설명자료나 국회 예산심사보고서 등의 문서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표 3-40〉 다함께돌봄센터 예산(국비)

(단위: 백만 원, %)

| 사업명                          | 계정            | 2022년<br>결산 | 2023년<br>예산<br>본예산(A) | 2024년  |        | 증감<br>(B-A) | (B-A)/A |
|------------------------------|---------------|-------------|-----------------------|--------|--------|-------------|---------|
|                              |               |             |                       | 정부안    | 확정(B)  |             |         |
| 다함께돌봄센터<br>지원(자율)            | 지역<br>자율      | 36,123      | 54,570                | 56,520 | 56,520 | 1,950       | 3.6     |
| 다함께 돌봄센터<br>사업 <sup>1)</sup> | 지역<br>지원      | 191         | 504                   | -      | -      | △504        | △100.0  |
| 다함께 돌봄센터<br>지원(제주)           | 제주특별<br>자치도   | 280         | 428                   | 656    | 656    | 228         | 53.3    |
| 다함께 돌봄센터<br>지원(세종)           | 세종특별<br>자치시계정 | 289         | 375                   | 488    | 488    | 113         | 30.1    |
| 합계                           |               | 36,883      | 55,877                | 57,664 | 57,664 | 1,787       | 3.2     |

주: 1) 2022~2023년 지역지원계정으로 운영되는 ‘다함께돌봄센터 지원사업’에는 (내역사업) 다함께돌봄과 (내역사업) 학교돌봄터가 합산되었으나, 본 자료에서는 학교돌봄터 내역사업은 제외하고 다함께돌봄센터 지원사업만 산출함. 2024년도에는 해당 사업이 없음.

출처: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보건복지부, 2024c, p.3946, p.4013, p.4251, p.4304 참고하여 저자 작성.

다함께돌봄센터의 센터장 인건비 단가는 2022년 월 2,309천 원에서 2024년 월 3,166천 원으로 증가하였고, 돌봄 선생님 인건비(8시간)는 2023년부터 적용되어 2024년에 소폭 상승하였다. 돌봄 선생님 인건비(4시간)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2024년에도 2023년 대비 소폭 상승하였다. 다함께돌봄센터 돌봄 선생님 인건비 산출에서 활용되는 단가는 돌봄 선생님 인건비(4시간) 단가가 활용되고 있다.

〈표 3-41〉 2022~2024년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단가

(단위: 천 원)

| 구분 | 인건비                       | 2022    | 2023    | 2024    |
|----|---------------------------|---------|---------|---------|
| 자율 | 센터장                       | 월 2,309 | 월 3,089 | 월 3,166 |
|    | 돌봄 선생님(8시간)               | -       | 월 2,867 | 월 2,939 |
|    | 돌봄 선생님(4시간) <sup>1)</sup> | 월 1,143 | 월 1,434 | 월 1,470 |

주: 1) 다함께돌봄센터의 돌봄 선생님 산출 내역에서는 모두 4시간 시간제 돌봄 선생님 단가(월 1,470천 원)로 계상되어 있음.  
출처: “2023년 다함께돌봄사업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23a, p. xv.; “2024년 다함께돌봄사업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24b, p. xxi.;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보건복지부, 2024c, p. 3949. 참고하여 저자 작성.

다함께돌봄센터의 기본 운영비 단가는 2022년 센터당 월 300천 원에서 2023년과 2024년에 월 1,000천 원으로 크게 상승하였다. 2022년에 비해 2023년부터 지원 금액이 크게 증가한 것은 돌봄서비스 확대 및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운영시간 연장 시범사업의 추가 지원은 출퇴근 시간대의 돌봄 수요에 대응하려는 노력으로 해석된다.

〈표 3-42〉 2022~2024년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단가

| 구분             | 2022                       | 2023                                                                              | 2024                                                                              |
|----------------|----------------------------|-----------------------------------------------------------------------------------|-----------------------------------------------------------------------------------|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단가 | 센터당 월 300천 원<br>(정원수 상관없음) | 센터당 월 1,000천 원<br>(정원수 상관없음)<br>※운영시간 연장<br>시범사업에 선정된<br>센터의 경우,<br>월 50만 원 추가 지원 | 센터당 월 1,000천 원<br>(정원수 상관없음)<br>※운영시간 연장<br>시범사업에 선정된<br>센터의 경우, 월<br>50만 원 추가 지원 |

출처: “2023년 다함께돌봄사업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23a, p. xvi.;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보건복지부, 2024c, p. 3950, p. 4253, pp. 4307~4308. 참고하여 저자 작성.

2024년도 예산에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시설 면적별 리모델링비와 기자재비가 반영되어 있다. 일반 리모델링비와 생활 SOC 복합화 대상 리모델링비는 국비와 지방비의 비율이 다르며, SOC 복합화 대상의 경우 국비 지원 비율이 더 높다. 기자재비는 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면적이 클수록 지원 금액이 증가하는 구조이며, 본 분석에서는 국비와 지방비를 모두 합산한 비용을 제시한다.

〈표 3-43〉 다함께돌봄센터 면적별 설치비 차등 지원 기준

| 면적                  | 리모델링비                          |                                | 기자재비                |
|---------------------|--------------------------------|--------------------------------|---------------------|
|                     | 일반                             | 생활 SOC 복합화 대상                  |                     |
| 132㎡ 미만             | 50백만 원<br>(국비 서울 30%, 지방 50%)  | 50백만 원<br>(국비 서울 40%, 지방 60%)  | 20백만 원<br>(국비 100%) |
| 132㎡ 이상~<br>198㎡ 미만 | 75백만 원<br>(국비 서울 30%, 지방 50%)  | 75백만 원<br>(국비 서울 40%, 지방 60%)  | 30백만 원<br>(국비 100%) |
| 198㎡ 이상             | 100백만 원<br>(국비 서울 30%, 지방 50%) | 100백만 원<br>(국비 서울 40%, 지방 60%) | 40백만 원<br>(국비 100%) |

출처: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보건복지부, 2024c, p. 3950.

2024년 기준 다함께돌봄사업의 총비용은 1,275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 중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시도 및 시군구, 돌봄센터 센터장의 인건비를 포함한 관리운영비는 58억 원으로, 총비용 중 약 4.6%를 차지한다.

반면, 급여를 구성하는 다함께돌봄사업의 사업비는 총비용의 약 9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가 전체 비용의 약 74%에 해당하며, 이는 약 945억 원에 이른다. 또한, 시스템 구축비는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일부 기능만 활용하고 있으며, 주로 자료 저장 기능에 한정되어 있어 직접적인 전달비용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표 3-44〉 다함께돌봄센터 전달비용 추계

(단위: 백만 원, %)

| 구분        |           | 세부 항목<br>(계정)            | 산출식 <sup>1)</sup>                                                                                                                                                                                                                                            | 총비용(국비+지방비)        |                    |
|-----------|-----------|--------------------------|--------------------------------------------------------------------------------------------------------------------------------------------------------------------------------------------------------------------------------------------------------------|--------------------|--------------------|
|           |           |                          |                                                                                                                                                                                                                                                              | 2023               | 2024               |
| 총계        |           |                          |                                                                                                                                                                                                                                                              | 120,123<br>(100.0) | 127,517<br>(100.0) |
| 관리운영비 합계  |           |                          |                                                                                                                                                                                                                                                              | 4,559<br>(3.8)     | 5,811<br>(4.6)     |
| 관리<br>운영비 | 관리<br>인건비 | 보건복지부<br>담당 직원<br>인건비    | 보건복지부 담당 직원 수(과장 1, 사무관 1, 주무관 1)×(공무원) 인건비 단가×근무 월수<br>* 각 연도 공무원보수규정 반영(평균 호봉인 15호봉 반영) <sup>2)</sup><br>** 과장 업무기여율(18.7%), 팀장(사무관) 업무기여율(18.7%), 주무관(100% 기여율 적용)<br>= (과장 1명×4,817천 원×12개월×0.187)+(사무관 1명×4,361천 원×12개월×0.187)+(주무관 1명×3,377천 원×12개월×1) | 60                 | 61                 |
|           |           | 아동권리<br>보장원 담당<br>직원 인건비 | 부장 1(겸무), 주임 3<br>(임원 1명×임원 평균 보수(연봉))×업무기여율(24년 6.7%, 23년 6.0%, 22년 6.3%) + (직원 9명×평균 임금×업무 기여율(100%))<br>= (임원 1명×127,000천 원×0.67)+(직원 3명×47,000천 원)                                                                                                       | 217                | 226                |
|           |           | 17개 시도<br>담당 직원<br>인건비   | 17개 시도 담당 직원 수(팀장, 주무관 등)×(공무원) 인건비 단가×근무 월수×업무기여율2)<br>* 각 연도 공무원보수규정 반영(평균 호봉인 15호봉 반영)<br>** 각 17개 시도담당자의 업무기여율 비중=다함께돌봄센터 사업비/담당업무의 총사업비<br>= (서울 예시) (사무관 1명×4,361천 원×12개월×기여율 1)+(주무관 4명×3,377천 원×12개월×기여율 1)                                          | 583                | 596                |

| 구분     |           | 세부 항목<br>(계정)                 | 산출식 <sup>1)</sup>                                                                                                                                                                       | 총비용(국비+지방비)                                                                                      |                   |        |
|--------|-----------|-------------------------------|-----------------------------------------------------------------------------------------------------------------------------------------------------------------------------------------|--------------------------------------------------------------------------------------------------|-------------------|--------|
|        |           |                               |                                                                                                                                                                                         | 2023                                                                                             | 2024              |        |
|        |           | 기초<br>자치단체 담당<br>직원 인건비       | 각 지자체의 평균 담당 직원 수×(공무원 인건비 단가×근무 월수×(시군구 담당자 평균 업무기여율)×226개 시군구 * 각 연도 공무원보수규정 반영(평균 호봉인 15호봉 반영)<br>= (경기도 광주시 예시) {(사무관 1명×4,361천 원×12개월×기여율 0.207)+(주무관 1명×3,377천 원×12개월×기여율 0.283)} | 3,621                                                                                            | 4,849             |        |
|        | 시스템       | 시스템<br>구축 및 운영                |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sup>3)</sup><br>((구)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1,354)                                                                                          | (508)             |        |
|        |           | 유지보수                          |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시스템 유지보수<br>(아동권리보장원 사업설명자료 참고)                                                                                                                                               | 79                                                                                               | 79                |        |
| 사업비 합계 |           |                               |                                                                                                                                                                                         | 115,564<br>(96.2)                                                                                | 121,705<br>(95.4) |        |
| 사업비    | 사업<br>인건비 | 인건비 소계                        |                                                                                                                                                                                         | 84,381<br>(70.2)                                                                                 | 94,460<br>(74.1)  |        |
|        |           | 다함께<br>돌봄<br>센터<br>센터장<br>인건비 | 자율                                                                                                                                                                                      | 센터 개소수×센터장 1명×단가×근무 월수<br>= (기존 1,160개소×센터장 1명×월 3,166천 원×12개월)+(신규 125개소×센터장 1명×월 3,166천 원×4개월) | 41,034            | 45,654 |
|        |           |                               | 제주                                                                                                                                                                                      | = (기존 8개소×센터장 1명×월 3,166천 원×12개월)+(신규 3개소×센터장 1명×월 3,166천 원×4개월)                                 | 259               | 342    |
|        |           |                               | 세종                                                                                                                                                                                      | = (기존 9개소×센터장 1명×월 3,166천 원×12개월)+(신규 1개소×센터장 1명×월 3,166천 원×4개월)                                 | 272               | 355    |
|        |           | 돌봄<br>선생님<br>(종사자)<br>인건비     | 자율                                                                                                                                                                                      | 종사자 수×단가×근무 월수<br>= (기존 2,542명×월 1,470천 원×12개월)+(신규 340명×월 1,470천 원×4개월)                         | 41,569            | 46,840 |
|        |           |                               | 제주                                                                                                                                                                                      | = (기존 20명×월 1,470천 원×12개월)+(신규 10명×월 1,470천 원×4개월)                                               | 241               | 412    |

| 구분 | 세부 항목<br>(계정) |                                       | 산출식 <sup>1)</sup>                                                                   | 총비용(국비+지방비)      |                  |
|----|---------------|---------------------------------------|-------------------------------------------------------------------------------------|------------------|------------------|
|    |               |                                       |                                                                                     | 2023             | 2024             |
|    |               | 세종                                    | = (기존 18명×월 1,470천 원×12개월)<br>+(신규 2명×월 1,470천 원×4개월)                               | 252              | 329              |
|    |               | 운영<br>시간<br>연장 <sup>4)</sup>          | 센터 개소수×단가×근무 월수<br>= 30개소×1,470천 원×12개월                                             | 753              | 529              |
|    | 운영비 소계        |                                       |                                                                                     | 18,708<br>(15.6) | 18,370<br>(14.4) |
|    | 운영비           | 자율                                    | 센터 개소수×단가×근무 월수<br>= (기존 1,160개소×월 1,000천 원×<br>12개월)+(신규 125개소×월 1,000<br>천 원×4개월) | 13,284           | 14,420           |
|    |               |                                       | 제주                                                                                  | 84               | 108              |
|    |               |                                       | 세종                                                                                  | 88               | 112              |
|    |               | 운영<br>시간<br>연장 월<br>운영비 <sup>4)</sup> | 지역<br>아동<br>센터<br>지원<br>(지원)                                                        | 262              | 180              |
|    | 기<br>자재비      | 기<br>자재비                              | 자율                                                                                  | 4,900            | 3,410            |
|    |               |                                       | 제주                                                                                  | 60               | 100              |
|    |               |                                       | 세종                                                                                  | 30               | 40               |

| 구분  | 세부 항목<br>(계정) |    | 산출식 <sup>1)</sup>                                                                                      | 총비용(국비+지방비)      |                |
|-----|---------------|----|--------------------------------------------------------------------------------------------------------|------------------|----------------|
|     |               |    |                                                                                                        | 2023             | 2024           |
| 설치비 | 설치비 소계        |    |                                                                                                        | 12,475<br>(10.4) | 8,875<br>(7.0) |
|     | 리모<br>텔링<br>비 | 자율 | 면적×센터 개소수×단가<br>= (132㎡ 미만 63개소×50,000천 원)+<br>(132~198㎡ 33개소×75,000천 원)+<br>(198㎡ 이상 29개소×100,000천 원) | 12,250           | 8,525          |
|     |               | 제주 | = (132~198㎡ 2개소×75,000천 원)+<br>(198㎡ 이상 1개소×100,000천 원)                                                | 150              | 250            |
|     |               | 세종 | = (198㎡ 이상 1개소×100,000천 원 )                                                                            | 75               | 100            |

주: 1) 센터 개소수, 센터장 수, 종사자 수는 보건복지부 각 연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의 예산 산출 근거 자료에 기초하여 산출하였고, 산출식은 지면의 한계로 2024년 기준으로 작성함.

2) 과장(4급, 15호봉 반영) 보수는 2022년 4,621천 원, 2023년은 4,700천 원, 2024년은 4,817천 원임. 팀장(5급, 15호봉 반영) 보수는 2022년 4,184천 원, 2023년 4,255천 원, 2024년 4,361천 원임. 주무관(7급, 15호봉 반영)은 2022년 3,239천 원, 2023년 3,295천 원, 2024년 3,377천 원 반영함.

3)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은 해당 사업의 직접적인 시스템 구축 비용이 아니므로 산출에서 제외함.

4) 2023년에는 다함께돌봄센터 지원(지역지원계정)이었으나, 2024년에 지역아동센터 지원(지역지원계정)으로 이관됨.

출처: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보건복지부, 2024c, p. 3950, p. 4253, pp. 4307-4308. ; “각 연도 직종별 공무원 보수표”, 인사혁신처, 2024.10.10. 검색, <https://www.mpm.go.kr/mpm/info/resultPay/bizSalary/2024/> 참고하여 저자 작성.

## 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은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며, 공식 세부 사업명은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이다. 해당 사업은 청소년육성기금에서 재원을 마련하며, 국고보조율은 서울 지역의 경우 30%, 지방은 50%로 차등 적용된다. 2022년 결산액은 국비 기준 27,910백만 원이며, 2023년 31,729백만 원, 2024년 31,485백만 원으로 최근 3년간 사업 예산은 큰 변동 없이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 3-45〉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세부사업명: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 예산(국비)  
(단위: 백만 원, %)

| 사업명               | 2022년<br>결산 | 2023년 계획 |        | 2024년<br>계획(B) | 증감<br>(B-A) | (B-A)/<br>A |
|-------------------|-------------|----------|--------|----------------|-------------|-------------|
|                   |             | 당초(A)    | 수정     |                |             |             |
| 청소년 방과 후<br>활동 지원 | 27,910      | 31,729   | 31,729 | 31,485         | △244        | △0.8        |

출처: “2024년 여성가족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여성가족부, 2024a, p.608.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비 단가는 인건비, 급식비, 프로그램비로 구성되며, 2023년부터 통학버스 임차료가 새롭게 추가되었다. 인건비는 서울보다 지방의 단가가 약간 높게 책정되어 있으며, 이는 지방 정규직 전환에 따른 비용을 포함한 결과이다. 급식비는 2022년 1인당 4천 원에서 2023년부터 5천 원으로 인상하였고, 프로그램비는 연도별로 단가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6〉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운영비 단가  
(단위: 천 원)

| 구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 인건비<br>(팀장 및 담임)                  | (서울) 25,647<br>(지방) 26,509.5<br>* 지방 정규직 전환 단<br>가 포함 | (서울) 27,668<br>(지방) 28,085<br>* 지방 정규직 전환 단<br>가 포함 | (서울) 28,771<br>(지방) 29,207<br>* 지방 정규직 전환 단<br>가 포함 |
| 급식비                               | 1인당 4천 원                                              | 1인당 5천 원                                            | 1인당 5천 원                                            |
| 프로그램비<br>(통학버스 임차료) <sup>1)</sup> | 1개소당 46,500                                           | 1개소당 43,870<br>(해당 개소당 8,040)                       | 1개소당 39,100<br>(해당 개소당 6,600)                       |

주: 1) 통학버스 임차료 추가 지원은 2023년부터 추가됨.  
출처: “2022년 여성가족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여성가족부, 2022, p.632. ; “2024년 여성가족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여성가족부, 2024a, p.645. 참고하여 저자 작성.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총비용 추정 결과, 2023년에는 65,607백만 원, 2024년에는 65,200백만 원으로 두 해의 예산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중 관리운영비는 전체 예산의 약 1.5%를 차지하며, 여성가족부 담당 직원 인건비,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담당 직원 인건비, 17개 시도의 담당 공무원 인건비 등이 포함된다. 앞에서 분석한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사업과의 주요 차이점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경우 시·군·구에 전담 인력이 배정되지 않았고, 해당 사업도 시·군·구 차원에서 별도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한, 시스템 구축 비용은 별도로 책정되지 않았으며, 기능 개선 및 유지·보수를 위해 2024년 기준 51백만 원이 지출되었다.

추정된 총비용의 98%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비는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성되며, 두 항목은 약 5:5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인건비는 31,075백만 원, 운영비는 33,120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운영비에는 급식비, 프로그램비, 방과후아카데미 지원단 운영비, 경상 경비 등이 포함된다.

〈표 3-47〉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전달비용 추계<sup>18)</sup>

(단위: 백만 원, %)

| 구분       | 세부 항목<br>(계정) | 산출식 <sup>1)</sup> | 총비용(국비+지방비)       |                   |
|----------|---------------|-------------------|-------------------|-------------------|
|          |               |                   | 2023              | 2024              |
| 총계       |               |                   | 65,607<br>(100.0) | 65,200<br>(100.0) |
| 관리운영비 합계 |               |                   | 1,016<br>(1.5)    | 1,005<br>(1.5)    |

18)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경우 2024년 사업설명자료(상세내용)를 확보하지 못하여 2022년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산출함. 여성가족부 예산 기준으로 보았을 때, 2024년과 2022년은 약 2,045백만 원 차이가 있음.

| 구분                                 |           | 세부 항목<br>(계정)                  | 산출식 <sup>1)</sup>                                                                                                                                                                                                                                             | 총비용(국비+지방비)      |                  |
|------------------------------------|-----------|--------------------------------|---------------------------------------------------------------------------------------------------------------------------------------------------------------------------------------------------------------------------------------------------------------|------------------|------------------|
|                                    |           |                                |                                                                                                                                                                                                                                                               | 2023             | 2024             |
| 관리<br>운영비                          | 관리<br>인건비 | 여성가족부<br>담당 공무원<br>인건비         | 보건복지부 담당 직원 수(과장 1, 사무관 1, 주무관 2)×(공무원) 인건비 단가×근무 월수<br>* 각 연도 공무원보수규정 반영(평균 호봉 인 15호봉 반영) <sup>2)</sup><br>** 과장 업무기여율(81.7%), 팀장(사무관) 업무기여율(81.7%), 주무관(100% 기여율 적용)<br>= (과장 1명×4,817천 원×12개월×0.817)+(사무관 1명×4,361천 원×12개월×0.817)+(주무관 2명×3,377천 원×12개월×1) | 92               | 98               |
|                                    |           | 한국청소년<br>활동진흥원<br>담당 직원<br>인건비 | 부장 1(겸무), 팀장 1, 과장 2, 대리 1, 주임 5 (임원 1명×임원 평균 보수(연봉))×업무기여율(24년 6.7%, 23년 6.0%, 22년 6.3%) + (직원 9명×평균 임금×업무기여율(100%)) = (임원 1명×127,000천 원×0.67)+(직원 9명×47,000천 원)                                                                                             | 198              | 203              |
|                                    |           | 17개 시도<br>담당 공무원<br>인건비        | 17개 시도 담당 직원 수(팀장, 주무관 등)×(공무원) 인건비 단가×근무 월수×평균 업무기여율<br>* 각 연도 공무원보수규정 반영(평균 호봉 인 15호봉 반영)<br>** 각 17개 시도 담당자의 업무기여율 비중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비/담당업무의 총사업비                                                                                                           | 611              | 653              |
|                                    |           | 기초자치단체<br>담당 직원<br>인건비         | 각 지자체의 평균 담당 직원 수×(공무원) 인건비 단가×근무 월수×226개 시군구 (※ 업무 담당자 없음)                                                                                                                                                                                                   | -                | -                |
|                                    | 시스템       | 유지<br>보수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기능 개선 예산(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지출) <sup>3)</sup><br>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기능 개선                                                                                                                                                                                          | 30               | 5                |
| 방과후아카데미 지원단 시스템 유지보수비 (여성가족부에서 지출) |           |                                | 86                                                                                                                                                                                                                                                            | 46               |                  |
| 사업비 합계                             |           |                                |                                                                                                                                                                                                                                                               | 64,591<br>(98.5) | 64,195<br>(98.5) |

| 구분  | 세부 항목<br>(계정) | 산출식 <sup>1)</sup>     | 총비용(국비+지방비)      |                  |
|-----|---------------|-----------------------|------------------|------------------|
|     |               |                       | 2023             | 2024             |
| 사업비 | 사업<br>인건비     | 인건비 소계                | 29,882<br>(45.5) | 31,075<br>(47.7) |
|     |               | 팀장 및<br>담임 인건비        | 29,882           | 31,075           |
|     | 운영비           | 운영비 소계                | 34,709<br>(52.9) | 33,120<br>(50.8) |
|     |               | 급식비                   | 17,182           | 17,182           |
|     |               | 프로그램비                 | 17,190           | 15,603           |
|     |               | 방과후<br>아카데미<br>지원단 운영 | 328              | 327              |
|     |               | 경상경비                  | 9                | 8                |
|     |               |                       |                  |                  |

주: 1) 센터 개소수, 센터장 수, 종사자 수는 여성가족부 각 연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의 예산산출 근거 자료에 기초하여 산출하였고, 산출식은 지면의 한계로 2024년 기준으로 작성함.

2) 과장(4급, 15호봉 반영) 보수는 2022년 4,621천 원, 2023년은 4,700천 원, 2024년은 4,817천 원임. 팀장(5급, 15호봉 반영) 보수는 2022년 4,184천 원, 2023년 4,255천 원, 2024년 4,361천 원임. 주무관(7급, 15호봉 반영)은 2022년 3,239천 원, 2023년 3,295천 원, 2024년 3,377천 원 반영함.

3)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홈페이지 기능 개선비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예산에서 집행됨. 최초 시스템 구축 비용은 없음(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내부자료).

출처: “2024년 여성가족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여성가족부, 2024a, p. 645; “각 연도 직종별 공무원 보수표”, 인사혁신처, 2024.10.10. 검색, <https://www.mpm.go.kr/mpm/info/resultPay/bizSalary/2024/> 참고하여 저자 작성.

## 제4절 전달비용과 지출효율성

### 1. 사업별 비용구조의 특징

이상에서 살펴본 세 개의 아동돌봄사업은 지원 대상과 제공 프로그램의 내용 측면에서 현격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사업별 차이를 찾아보면, 지원 대상 측면에서 지역아동센터가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아동 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반면에 다함께돌봄센터는 맞벌이가구를 포함한 일반 가구의 돌봄 수요 대응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후기 초등학교 및 중학생 등 청소년기 아동의 학습 및 활동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프로그램 내용 측면에서는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는 돌봄과 학습지원, 놀이, 체험활동과 같이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상대적으로 고학령 아동의 성장 발달 수요에 맞춘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사업별 종사자 자격 기준을 보면,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기본적으로 요구하며, 다함께돌봄센터의 돌봄교사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된다. 이에 비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필요로 하며, 팀 체제의 조직적 인력 구성을 보이는 것도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는 정책 대상과 프로그램 측면에서 높은 유사성을 보이지만, 인건비와 운영비 책정 방식 등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아동센터의 센터장 인건비는 월 3,050천 원이며, 생활복지사 등 종사자는 시간기준 없이 월 2,675천 원으로 책정된다. 이에 비해, 다함께돌봄센터는 센터장은 월 3,166천 원, 돌봄 선생님 등 종사자는 8시간 기준 월 2,939천 원, 4시간 기준 월 1,470천 원으로 책정되어 있

다. 그러나 실제 예산상에서는 대부분 4시간 기준 월 1,470천 원으로 단가를 적용하고 있어, 두 기관 간 센터장과 종사자의 인건비 단가에서 구조적 차이가 존재한다. 운영비를 살펴보면, 지역아동센터는 정원에 따라 월 1,060천 원에서 월 1,645천 원까지 기본운영비가 책정되며, 이는 시설의 정원 규모와 운영 여건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월 1,000천 원의 기본운영비 이외에 추가 지원으로 월 1,470천 원이 책정되어 총운영비 지원 규모가 비교적 탄력적인 구조를 보이며, 운영시간 연장 시 지역아동센터 대비 약 2배 이상의 지원 수준을 보인다.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는 운영비 측면에서 월 7,292천 원에서 월 7,842천 원으로 책정되며, 이는 급식비, 프로그램비, 통학버스 임차료(해당 기관 한정) 등이 포함된 금액으로, 앞의 두 사업과 비교하여 프로그램 중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마지막으로 기자재비 등 리모델링비 측면에서도 다함께돌봄사업은 지역아동센터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단가를 적용하고 있어 시설 개선 및 환경조성을 위한 투자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8〉 2024년 아동돌봄사업 사업비 단가 비교

(단위: 천 원)

| 구분  |                                | 지역아동센터                                                               | 다함께돌봄센터                                               | 청소년방과후<br>아카데미 <sup>1)</sup>                       |
|-----|--------------------------------|----------------------------------------------------------------------|-------------------------------------------------------|----------------------------------------------------|
| 인건비 | 센터장                            | 월 3,050                                                              | 월 3,166                                               | 월 2,398(서울)~<br>월 2,434(지방)<br>*지방 정규직 전환<br>단가 포함 |
|     | 종사자<br>(생활복지사,<br>돌봄<br>선생님 등) | 월 2,675<br>(예산서에 그대로<br>적용(시간 기준<br>없음))                             | 월 2,939(8시간)<br>월 1,470(4시간)<br>(예산서에 4시간<br>기준으로 산정) |                                                    |
|     | 아동복지<br>교사 파견<br>지원            | 시간별 차등 지원<br>(40시간 2,464.3천 원,<br>25시간 1,544.6천 원,<br>12시간 677.5천 원) | -                                                     | -                                                  |

| 구분        |                           | 지역아동센터                                       | 다함께돌봄센터                                                                     | 청소년방과후<br>아카데미 <sup>1)</sup>                                                  |
|-----------|---------------------------|----------------------------------------------|-----------------------------------------------------------------------------|-------------------------------------------------------------------------------|
| 운영비       | 기본운영비                     | 정원에 따라,<br>월 1,060~1,645                     | 센터당 월 1,000                                                                 | 개소당 월<br>7,292~7,842<br>(급식비 월 4,033,<br>프로그램비 월<br>3,258, 통학버스<br>임차료 월 550) |
|           | 운영시간<br>연장 시              | -                                            | 월 1,470 추가 지원<br>(예산서 기준)<br>(인건비 1,470,<br>운영비 500,<br>기본경비 연 3,000<br>별도) | -                                                                             |
|           | 다센터 운영<br>비영리법인<br>추가 운영비 | 정원에 따라,<br>월 200~300                         | -                                                                           | -                                                                             |
| 기자재비      |                           | -                                            | 면적에 따라,<br>20,000~40,000<br>(국비 100%)                                       | -                                                                             |
| 리모<br>텔링비 | 일반                        | 운영 주체에 따라,<br>개인<br>10,000~지자체,<br>법인 30,000 | 면적에 따라,<br>50,000~100,000<br>(국비 서울 30%,<br>지방 50%)                         | -                                                                             |
|           | 생활 SOC<br>복합화             | -                                            | 면적에 따라<br>50,000~100,000<br>(국비 서울 40%,<br>지방 60%)                          | -                                                                             |

주: 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연간 기준 단가를 12개월로 나누어 월 기준으로 재산정함.  
출처: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보건복지부, 2024c, pp. 3937~4297;  
“2024년 여성가족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여성가족부, 2024a, p. 645. 참  
고하여 저자 작성.

종합적으로,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는 정책 대상과 프로그램 구성 면에서 높은 유사성을 보이나, 인건비 및 운영비 책정 방식, 그리고 시설 투자비에서 차이가 나는데, 두 사업의 운영 목적과 지원 범위에 따라 나타나는 특징으로 분석된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이와 달리 청

소년 대상 특화 프로그램과 학습 지원 중심의 예산 구조를 가지고 있어, 다른 두 사업과는 차별적인 특징을 보인다.

## 2. 손실비용을 고려한 지출효율성

아동돌봄사업별 인건비 단가, 대상 인원 수, 센터 수 등을 반영하여 추정한 총비용은 관리운영비와 사업비로 구분되며, 세부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총비용은 지역아동센터가 가장 크고, 그다음으로 다함께돌봄사업과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순으로 나타났다. 2023년 12월 말 이용아동 현황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정원 기준 아동 1인당 투입 비용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약 491만 원), 다함께돌봄사업(약 467만 원), 지역아동센터(약 438만 원) 순으로 확인된다.

전체 사업비에서 관리운영비, 즉 직접 전달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1.5%(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서 4.6%(다함께돌봄사업, 2024년)에 해당하며, 나머지 95% 이상은 직접 사업비로 지출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업 인건비 비중이 가장 높은 사업은 지역아동센터로, 2024년 기준 총비용의 81.6%가 사업 인건비로 지출되었으며, 사업운영비는 16.3%를 차지하였다. 다함께돌봄사업의 경우 사업 인건비는 총비용의 74.1%를 차지하고, 사업운영비는 14.4%로 나타났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다른 사업에 비해 관리운영비의 비중은 낮지만 프로그램 중심의 예산 구조로, 사업운영비(활동비 포함) 항목이 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다함께돌봄사업의 경우 관리운영비 비중(4.6%)은 다른 사업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아, 사업 전반에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운용 및 구조적 개선 방안 마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3-49〉 아동돌봄사업 비용구조 비교

| 구분                                    |        | 지역아동센터  |       | 다함께돌봄사업 |       | 청소년방과후<br>아카데미       |       |
|---------------------------------------|--------|---------|-------|---------|-------|----------------------|-------|
|                                       |        | 2023    | 2024  | 2023    | 2024  | 2023                 | 2024  |
| 총비용                                   |        | 100     | 100.0 | 100     | 100.0 | 100.0                | 100.0 |
| 관리운영비                                 | 합계     | 2.3     | 2.1   | 3.8     | 4.6   | 1.5                  | 1.5   |
|                                       | 관리 인건비 | 2.3     | 2.0   | 3.7     | 4.5   | 1.4                  | 1.5   |
|                                       | 시스템    | 0.0     | 0.0   | 0.1     | 0.1   | 0.2                  | 0.1   |
| 사업비                                   | 합계     | 97.7    | 97.9  | 96.2    | 95.4  | 98.5                 | 98.5  |
|                                       | 사업 인건비 | 79.0    | 81.6  | 70.2    | 74.1  | 45.5                 | 47.7  |
|                                       | 운영비    | 17.6    | 16.3  | 15.6    | 14.4  | 52.9                 | 50.8  |
|                                       | 설치비    | 1.1     | 0.0   | 10.4    | 7.0   | 0.0                  | 0.0   |
| 센터 수(2023.12.기준) <sup>1)</sup>        |        | 4,230개소 |       | 1,048개소 |       | 350개소                |       |
| 가동률(=이용률) <sup>1)</sup><br>(이용아동수/정원) |        | 93.3%   |       | 98.9%   |       | 109.2% <sup>2)</sup> |       |

주: 1) 센터 수와 가동률(=이용률)은 2023년 12월 말 기준임.  
2) 현원은 3개월 이상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참여한 누계기준으로, 한 명의 청소년이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경우, 참여 기간에 따라 중복으로 집계됨.  
출처: 저자 작성.

앞에서 전달비용의 개념을 정의하면서 직접적인 전달비용인 관리운영비 이외에 손실비용까지 고려하여 사업별 지출효율화 가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보았다. 이와 관련해서 다른 두 개 세출사업과 달리 사업성 기금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을 제외<sup>19)</sup>하고 유사성이 매우 큰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사업의 손실비용을 추정해 볼 수 있다.

19)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은 탄력적인 재정운용이 가능한 사업성 기금을 재원으로 하며, 다른 두 개 사업과 달리 이용아동의 중복 산정 가능성이 높기에 손실비용 추정에서 제외함.

〈표 3-50〉 2022년 예산비용 현황(국비)

(단위: 백만 원)

| 구분                  | 예산<br>현액 | 부처<br>집행 | 부처<br>비용(A) | 교부<br>현액 | 집행액     | 사업<br>시행<br>주체<br>비용(B) | A+B    |
|---------------------|----------|----------|-------------|----------|---------|-------------------------|--------|
| 지역아동센터              | 196,943  | 196,823  | 48          | 196,823  | 189,449 | 5,460                   | 5,508  |
| 지역아동센터<br>운영비지원(자율) | 155,092  | 155,044  | 48          | 155,044  | 153,082 | 48                      | 96     |
| 지역아동센터지원            | 38,814   | 38,742   | -           | 38,742   | 33,370  | 5,372                   | 5,372  |
| 지역아동센터<br>운영비지원(제주) | 2,517    | 2,517    | -           | 2,517    | 2,486   | 31                      | 31     |
| 지역아동센터<br>운영비지원(세종) | 520      | 520      | -           | 520      | 511     | 9                       | 9      |
| 다함께돌봄               | 44,717   | 36,692   | 8,025       | 41,239   | 27,332  | 9,437                   | 17,462 |
| 다함께돌봄센터<br>지원(자율)   | 43,874   | 36,123   | 7,751       | 40,670   | 26,912  | 9,298                   | 17,049 |
| 다함께돌봄센터<br>지원(제주)   | 445      | 280      | 165         | 280      | 197     | 83                      | 248    |
| 다함께돌봄센터<br>지원(세종)   | 398      | 289      | 109         | 289      | 223     | 56                      | 165    |

출처: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보건복지부, 2024c, pp.3942-3943, pp.3954-3955, p. 4021, pp.4247-4248, p.4259, pp.4300-4301, p.4311. 기초로 작성.

세부 비용 내역 확인이 가능한 2022년 결산 현황을 보면, 지역아동센터 사업예산의 비용액(국비 기준)은 5,508백만 원이고, 국고채 3년(평균) 금리(3.2%)를 적용하여 2023년 기준 명목 손실비용을 계산하면 5,684백만 원으로 산출된다. 다함께돌봄센터의 비용 예산(17,462백만 원)의 2023년 기준 명목 손실비용은 18,021백만 원으로 추정된다.

한편, 사업별 이용률(정원 대비 현원 비율)은 해당 사업의 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사용할 수 있다. 사업 인건비나 센터 운영비 등은 시설 이용아동 수와 상관없이 계속 투입되어야 하는 반면에 급식비 같은 가

변비용은 이용아동 수에 따라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예산 자료를 통해서 가변비용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이용 수요를 기준으로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는 재정사업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사실상 급여의 제공과 관련해서 실제 지출한 비용 전체가 고정비용의 성격을 갖는다고도 볼 수 있다. 이에 세부사업별 추경예산과 실집행액에 기초하여 산출한 실집행률<sup>20)</sup>을 적용하여 사업비를 재추정하고 관리운영비를 더하여 구한 비용을 기준으로 이용률을 반영하여 손실비용을 추정할 수 있다.

〈표 3-51〉 전달비용과 손실비용 추정치 비교(2023년)

(단위: %)

| 구분          | 지역아동센터 | 다함께돌봄사업 |
|-------------|--------|---------|
| 계           | 4.1    | 19.6    |
| 전달비용(관리운영비) | 2.3    | 3.8     |
| 손실비용        | 1.8    | 15.8    |
| - 불용예산      | 1.2    | 15.0    |
| - 유희자원      | 0.6    | 0.8     |

주: 사업별 총비용 대비 비율로 제시함.  
출처: 저자 작성.

2023년 기준 이용아동 수가 정원에 미달하여 발생하는 손실은 지역아동센터가 3,058백만 원, 다함께돌봄사업이 939백만 원으로 추산되며, 불용예산의 기회비용을 포함한 전체 손실비용은 총비용 대비 각각 1.8%와 15.8%로 나타났다. 두 사업의 전달비용과 손실비용 추정 결과를 보았을 때, 다함께돌봄사업이 자원의 활용과 예산의 집행 모두에 있어 상대적

20) 2023년 12월 기준, 지역아동센터 4개 세부사업 기준 실집행률 89.1%, 다함께돌봄 3개 세부사업 실집행률 69.9%로 계산됨(“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보건복지부, 2024c, pp.3942-3943, pp.3954-3955, p.4021, pp.4247-4248, p.4259, pp.4300-4301, p.4311. 기초로 작성)

으로 낮은 효율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이들 두 사업의 지원 대상이 사실상 가구소득에 대한 자격조건으로 구분된다는 점에서, 유사 사업의 통합적 조정을 통해 관리운영비와 손실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제4장

### 결론 및 시사점



##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우호적이지 않은 재정운용 여건에서,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재정지출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전통적인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강화와 함께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생활 안정을 위한 청년 자산형성 지원을 비롯하여 부모급여의 도입, 육아휴직 확대 등 최근 들어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주목받고 있는 청년세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중앙부처 단위에서 사업을 패키지로 하는 것을 목표로 사회보장제도의 통합관리와 사회보장 전달체계 효율화를 중심으로 복지재정 혁신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유사한 정책 목적과 지원 대상을 갖는 사회복지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 비효율의 문제를 인식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서로 다른 부처나 기관이 유사한 사업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지원 기준이나 절차, 대상의 선정에서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고, 서로 다른 전달체계를 운영하기 위한 행정비용과 업무가 증가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지출효율성 제고를 위한 일반적인 재정혁신의 형태는 유사 사업의 조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다양한 인적 속성을 지닌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사업의 경우 정책 목적과 지원 대상이 유사하더라도 통폐합 같은 구조조정은 수급자의 편익을 변동시킴으로써 예상치 못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정책 목적별로 사업의 구성과 내용 그리고 세부적인 비용구조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절감 가능한 중복 비용의 존재 여부를 먼저 확인할 수 있어야 지출효율화의 가능성에 대한 진단이 가능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정책 수요와 투

입 재정이 확대되고 있는 아동돌봄사업의 지출분석을 통해 사업별 전달 비용을 추정하고, 유사 사업 조정을 통한 지출효율화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우리나라 사회보장 분야의 유사 사업 관리제도 현황을 보면, 행정부와 국회로 이원화된 관리체계에서 각 정부부처, 재정당국, 사회보장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지만 여러 가지 한계를 갖는다. 우선 유사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판정 기준이 공개되지 않아 각 부처와 위원회가 전문가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고 있으며, 검토 결과가 공개되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둘째, 유사 사업 검토 시기가 각 주체마다 다르며,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셋째, 국회예산정책처의 검토 역시 기준이 불명확하며, 최근 들어서는 상세한 지출분석 결과가 분석보고서에서 제외되는 등 관리가 약화되었다. 넷째, 유사 사업의 판정 기준이 모호하며, 유사 사업으로 판정된 후에도 조정 방향을 설정하기 어렵고, 발생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지 못한다. 다섯째, 사회보장위원회의 유사 사업 관리의 수급의 중복을 제한하는 형태로의 예산 조정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뚜렷하며, 다부처 협업 방안이 미흡하여 사업 분절이 반복된다. 특히 모든 유사 사업 검토의 경우 구체적인 지출구조 분석을 통해 유사 사업으로 인한 비용이나 유사 사업 정비를 통해 얻은 편익 추계 등을 수행하지 않거나 그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데, 이 점이 중요한 개선 과제로 확인된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정책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아동돌봄 관련 사업에서 유사 사업의 지출 내역을 분석하고 사업별 전달비용과 손실비용을 추정하여 사업 조정에 따른 지출효율화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이 3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추진 근거와 목적, 지원 대상 및 시설 운영시간, 프로그램 내용, 시설수와 이용실적, 전달체계를 비교 검토하고 세부 지출 내역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사업별 전달비용은 2023년 기준 총비용 대비 각각 2.3%, 3.8%, 1.5%로 추정되었다. 추가적으로 사업별 지출효율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예산불용에 따른 기회비용과 시설가동률을 고려한 유허자원의 손실비용을 추정해보았다. 이와 관련해서 사업성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제외하고,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사업의 손실비용을 추정한 결과, 2023년 기준 각각 1.5%와 15.8%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들 사업이 지원 대상이나 내용에 있어 차별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유사 사업 간의 통합적 조정을 통해 지출효율성을 개선할 여지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책 목적과 대상이 유사한 복지사업이 여러 집행 주체에 의해 서로 다른 전달체계를 통해 개별적으로 추진될 경우, 행정비용의 중복이나 사업 운영에 따른 손실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았다. 이는 유사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의 통합적 추진을 통해 재정 낭비를 최소화하는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유사 사업의 판정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더불어 표준화된 평가 절차를 마련하여 유사 사업 관리의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유사 사업 검토가 현행과 같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사 사업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국회와 정부 관련 기관 간 협력 강화를 도모하여 유사 사업 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유사 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비효율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복지 분야에서 유사 사업의 검토는 단순한 사업 조정을 통한 비용 절감이 아니라 정책 목표 달성에 효과적인 조정전략을 구상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밀한 비용분석이 요구되며, 더불어 수혜자 편익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 넷째, 유사 사업의 검토 결과나 조정 과정에 대한 정보의 체계적 관리가 요구되며, GAO(미국 정부 회계감사국) 등 해외 사례를 참고

하여 관련 정보의 표준적 기록 및 보고 방식을 마련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가용 자료의 한계로 아동돌봄 관련 유사 사업의 편익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했지만, 사업별 비용분석을 통해 사업 조정을 통한 지출효율화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다만, 본 연구의 분석 과정에서 검무 관리자의 업무 비율 추정, 인건비 산정, 손실비용 추계 등에 있어 정확한 비용을 산출하기 위한 내부자료의 확보에 큰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 가정이 포함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정부나 국회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유사 사업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는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지출분석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전달비용과 손실비용을 고려한 지출효율성 분석의 정확성과 정책적 활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자료적 한계를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 감사원. (2017). 감사보고서. 주요 재정사업 유사중복 통폐합 등 추진실태.
- 감사원. (2021). 감사보고서. 복지사업 협의·조정제도 운영실태.
- 강신옥·이현주·손병돈·금현섭·김성한·김용득·민소영·정희선·이경진. (2011). 복지정책의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44 (2024.8.14. 제안).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7428 (2022.9.20. 제안).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기획재정부공고 제2017-1호 ( 2016.12.23., 일부개정).
- 국회예산정책처. (2008). 2009년도 예산안 분석 I. (총괄 및 중점분석).
- 국회예산정책처. (2009a). 2010년도 예산안 분석 가이드라인.
- 국회예산정책처. (2009b). 2010년도 예산안 분석 II. (중점분석).
- 국회예산정책처. (2010a). 2011년도 예산안 분석 가이드라인.
- 국회예산정책처. (2010b). 2011년도 예산안 분석 종합.
- 국회예산정책처. (2010c). 2009회계연도 결산 분석 가이드라인.
- 국회예산정책처. (2011a). 2012년도 예산안 중점 분석 II.
- 국회예산정책처. (2011b). 2010회계연도 결산분석 종합.
- 국회예산정책처. (2012a). 2013년도 예산안 중점 분석 II (재정운용).
- 국회예산정책처. (2012b). 2011회계연도 결산 중점 분석 II (재정운용).
- 국회예산정책처. (2013). 2014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 국회예산정책처. (2014). 2015년도 예산안 분석 종합.
- 국회예산정책처. (2015a). 2016년도 예산안 거시·총량분석.
- 국회예산정책처. (2015b). 2014회계연도 결산. 거시·총량분석.
- 국회예산정책처. (2016). 2017년도 예산안 거시·총량분석.
- 국회예산정책처. (2022). 2023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I.
- 국회예산정책처. (2023). 2024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I.
- 김송이. (2022). 서울시 초등돌봄 통합체계 구축 방안 연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김영평. (1995). 불확실성과 정책의 정당성.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 김은희. (2023). 수요자중심의 경기도 아동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방안 모색. 경기도여성가족재단.
- 김찬수·오윤섭. (2013). 공공부문 유사중복사업 식별·관리 실태와 주요이슈. 감사연구원.
- 박유리. (2022). 다함께돌봄센터 아동돌봄 서비스 체계의 효과성 연구. 숙명여자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보건복지부. (2023a). 2023년 다함께돌봄사업 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2023b).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24a). 2024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24b). 2024 다함께돌봄사업안내.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24c).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2024). 2024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
-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4a). 2022년 12월말 기준 전국 지역아동센터 통계조사 보고서.
-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4b). 2022년 12월 말 기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현황 보고서.
-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4c). 2023년 12월 말 기준 다함께돌봄센터 통계조사 보고서.
-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2023).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보건복지부훈령 제157호, [별표1] 보조사업 선정기준(제5조 관련) (2020.9.11., 타법개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3264호 (2011.10.26., 일부개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9347호 (2009.1.30., 일부개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898호 (2011.7.25., 일부개정).
- 사회보장기본법, 법률 제11238호 (2012. 1. 26., 전부개정).
- 아동복지법, 법률 제20218호 (2024. 2. 6., 일부개정).

- 아동복지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4952호 (2024. 10. 22., 일부개정).
- 여성가족부. (2022). 2022년 여성가족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24a). 2024년 여성가족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24b). 2024년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침.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24c). 2012~2024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이용아동 현황 [내부자료]. 자료 제공자: 청소년활동진흥과.
- 여성가족부. (2024d). 2018~2024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이용률 [내부자료]. 자료 제공자: 청소년활동진흥과.
- 여성가족부. (2024e).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우선돌봄아동 이용현황(2004년 기준) [내부자료]. 자료 제공자: 청소년활동진흥과.
- 여성가족부·복권위원회·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24). 2024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실무자 업무매뉴얼. 여성가족부.
- 영유아보육법, 법률 제20380호 (2024. 3. 19., 일부개정).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보고서.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보고서.
- 유아교육법, 법률 제19737호 (2023. 9. 27., 일부개정).
- 윤건. (2013). 공공기관간 기능중복에 관한 연구: 정보통신진흥분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4(3), 279-312.
- 이희현·김효정·최형주·김은경·손호성. (2021).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의 성과 및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 재정건전화법안, 의안번호 2200529 (2024.6.17. 제안).
- 지은초. (2023). 지출구조조정의 성과 및 과제. 한국재정정보원.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375호 (2020.1.29., 일부개정).
- 청소년기본법, 법률 제20420호 (2024.3.26., 일부개정).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422호 (2024. 3. 26., 일부개정).

- Aagaard, Todd S. (2011). Regulatory Overlap, Overlapping Legal Fields, and Statutory Discontinuities. Virginia Environmental Law Journal, 29(3), Villanova Law/Public Policy Research Paper No. 2012-2004,
- Braga, C. R. A., James, B. (2019). Addressing Fragmentation, Overlap and duplication in the Brazilian Government: an Approach for TCU.
- Brown, G. R. (1994). Canadian Federal-Provincial Overlap and Presumed Government Inefficiency. The Journal of Federalism 24(1): 21-37.
- Farrell, M. J. (1957). The Measurement of Production Efficiency. Journal of the Royal Statistical Society, Series A (General) 120, 253-90.
- GAO. (2015). Fragmentation, Overlap, and Duplication: An evaluation and Management Guide.
- Landau, M. (1969). Redundancy, Rationality, and the Problem of duplication and Overlap.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29(4), 346-358.
- Streeter, C. L. (1992). Redundancy in Organizational systems. Social Service Review, 66(1), 97-111.

#### [온라인 자료]

- NABO STATS 재정경제통계시스템. **재정수지** <https://www.nabostats.go.kr/portal/stat/directStatPage.do>(검색일: 2024.11.20.).
- 강원특별자치도. **세입세출예산서**. <https://state.gwd.go.kr/portal/administration/finance/budget/2024>(검색일: 2024.10.14.).

- 강원특별자치도. **조직도**. <https://state.gwd.go.kr/portal/introduce/guidance/organization>(검색일: 2024.10.14.).
- 경기도청. **세입세출예산서**. <https://www.gg.go.kr/bbs/board.do?bsIdx=515&menuId=1946#page=1>(검색일: 2024.10.14.).
- 경기도청. **조직도**. <https://www.gg.go.kr/org/orgChart.do?menuId=1808>(검색일: 2024.10.14.).
- 경상남도.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서**. [https://www.gyeongnam.go.kr/index.gyeong?menuCd=DOM\\_000000138003005001&searchYear=2022](https://www.gyeongnam.go.kr/index.gyeong?menuCd=DOM_000000138003005001&searchYear=2022)(검색일: 2024.10.14.).
- 경상남도.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서**. [https://www.gyeongnam.go.kr/index.gyeong?menuCd=DOM\\_000000138003005001&searchYear=2024](https://www.gyeongnam.go.kr/index.gyeong?menuCd=DOM_000000138003005001&searchYear=2024)(검색일: 2024.10.14.).
- 경상남도. **조직도**. [https://www.gyeongnam.go.kr/index.gyeong?menuCd=DOM\\_000000137001001000](https://www.gyeongnam.go.kr/index.gyeong?menuCd=DOM_000000137001001000)(검색일: 2024.10.14.).
- 고성식. (2020.2.10.) 제주도, 육아 공동 나눔 ‘수놓음 터’ 7곳 추가 조성.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210140000056>.
- 공공기관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임원연봉**. <https://alio.go.kr/item/itemReport.do?seq=2024061302828936&disclosureNo=2024061302828936>(검색일: 2024.11.1.).
- 공공기관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직원평균보수**. <https://alio.go.kr/item/itemReportTerm.do?apbaId=C0447&reportFormRootNo=2060&disclosureNo=>(검색일: 2024.11.1.).
- 광주시청. **세입세출결산서**. <https://www.gjcity.go.kr/portal/contents.do?mId=0303030000>(검색일: 2024.10.14.).
- 광주시청. **조직도**. <https://www.gjcity.go.kr/portal/contents.do?mId=0103010000>(검색일: 2024.10.14.).
- 기획재정부. (2015).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으로 공공부문 구조개혁에 도움을!. **기획재정부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mosfnet/2204838>

53473?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photoView=3  
(검색일: 2024.7.8.).

기획재정부. (2023.4.4). **2022년도 나라살림 결산 결과 세계잉여금 9.1조원 [보  
도자료]**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63607&menuNo=4010100](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63607&menuNo=4010100) (검색일: 2024.6.11.).

김지혜. (2024.4.2.). 인천시, 26년 개관하는 '혁신육아복합센터' 운영 방안 구  
상. **경기일보**.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0402580313>.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서**. <https://jumin.daegu.go.kr/budget/information/informationBudgetBill.do>(검색일: 2024.10.14.).

대구광역시. **조직도**. [https://www.daegu.go.kr/index.do?menu\\_id=00000248](https://www.daegu.go.kr/index.do?menu_id=00000248)(검색일: 2024.10.14.).

보건복지부. **조직도**. <https://www.mohw.go.kr/menu.es?mid=a10604010000>(검색일: 2024.10.31.).

보건복지부. (2023.5.31). **국민이 체감하는 선진 복지국가 전략 수립 [보도자료]**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0&bid=0027&tag=&act=view&list\\_no=376513&cg\\_code=](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0&bid=0027&tag=&act=view&list_no=376513&cg_code=)(검색일: 2024. 5.20.).

부산광역시. **세입세출예산서**. <https://www.busan.go.kr/ghstat>(검색일: 2024.10.14.).

부산광역시. **조직도**. <https://www.busan.go.kr/bhorganization01>(검색일: 2024.10.14.).

사회보장위원회. **협의회도** <https://www.ssc.go.kr/home/kor/contents.do?menuPos=50>.

서울특별시. **서울시 2022~2024년 예산서(세출예산)**. [https://news.seoul.go.kr/gov/archives/category/tax-news\\_c1/info\\_budget\\_c1/data\\_document\\_budget-n2](https://news.seoul.go.kr/gov/archives/category/tax-news_c1/info_budget_c1/data_document_budget-n2)(검색일: 2024.10.14.).

서울특별시. **조직도**. <https://org.seoul.go.kr/org/orgChart.do>(검색일: 2024.10.14.).

- 서울특별시. **우리동네키움포털**. <https://icare.seoul.go.kr/icare/indexP.do#none>(검색일: 2024.10.1.).
- 세종특별자치시. (2023.12.21.). ‘**육아 사랑방**’ 공동육아나눔터 18호 문 열었다  
[보도자료]. <https://www.sejong.go.kr/bbs/R0079/view.do?nttId=B000000102117Jg1iX4e>(검색일: 2024.10.1.).
- 세종특별자치시청. **세종특별자치시 재정정보 공개 예산정보**. [https://www.sejong.go.kr/prog/yesanInfo/finance/sub05\\_01/list.do](https://www.sejong.go.kr/prog/yesanInfo/finance/sub05_01/list.do)(검색일: 2024.10.14.).
- 세종특별자치시청. **조직도**. [https://www.sejong.go.kr/kor/sub01\\_010101.do#sub01\\_010101](https://www.sejong.go.kr/kor/sub01_010101.do#sub01_010101)(검색일: 2024.10.14.).
- 아동권리보장원. **다함께돌봄사업 수행체계**. [https://dadol.or.kr/biz/biz\\_system](https://dadol.or.kr/biz/biz_system)  
(검색일: 2024.10.1.).
- 아동권리보장원. **아동권리보장원 담당업무**. <https://www.ncrc.or.kr/ncrc/cm/composition.do>(검색일: 2024.10.10.).
- 여성가족부. **조직 및 기능**. [https://www.mogef.go.kr/mi/osg/mi\\_osg\\_s001.do](https://www.mogef.go.kr/mi/osg/mi_osg_s001.do)(검색일: 2024.10.31.).
- 열린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 **국가 채무(결산 기준)**. <https://www.openfis caldata.go.kr/op/ko/sm/UOPKOSMA17?acntSYr=2019&acntEYr=2025&langCd=ko>(검색일: 2024.11.20.).
- 이은파. (2023.12.22.). “날씨 걱정 없어요”...세종 첫 공공형 실내 놀이터 개장.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31222028000063>.
- 인사혁신처. **각 연도 직종별 공무원 보수표**. <https://www.mpm.go.kr/mpm/info/resultPay/bizSalary/2024/>(검색일: 2024. 10. 10).
- 인천광역시. **세입세출예산서**. <https://www.incheon.go.kr/open/OPEN030101>  
(검색일: 2024.10.14.).
- 인천광역시. **시 조직도**. <https://www.incheon.go.kr/IC040221>(검색일: 2024. 10.14.).
- 전북특별자치도. **2022년 예산**. <https://www.jeonbuk.go.kr/index.jeonbuk?>

menuCd=DOM\_000000103001004006(검색일: 2024.10.14.).

전북특별자치도. **2024년 예산**. [https://www.jeonbuk.go.kr/index.jeonbuk?](https://www.jeonbuk.go.kr/index.jeonbuk?menuCd=DOM_000000103001004050)

menuCd=DOM\_000000103001004050(검색일: 2024.10.14.).

전북특별자치도. **조직도**. [https://www.jeonbuk.go.kr/index.jeonbuk?menu](https://www.jeonbuk.go.kr/index.jeonbuk?menuCd=DOM_000000101003001001)

Cd=DOM\_000000101003001001(검색일: 2024.10.14.).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일하는 사람들. ([https://www.kywa.or.kr/about/about04\\_](https://www.kywa.or.kr/about/about04_6.jsp#tap00)

6.jsp#tap00)(검색일: 2024.10.21.).



## [부록] 아동돌봄사업 시도 담당 인력 업무기여율

〈부표 1-1〉 지역아동돌봄센터 시도 담당 인력 및 업무기여율(%)

| 시도 | 인력               | 지역아동돌봄사업 업무 내용                                                                                             | 비고 | 업무기여율(%)<br>(해당 사업비/총사업비) |      |      |
|----|------------------|------------------------------------------------------------------------------------------------------------|----|---------------------------|------|------|
|    |                  |                                                                                                            |    | 2022                      | 2023 | 2024 |
| 서울 | 아동지원<br>팀장       | - 아동지원팀 업무 총괄<br>- 지역아동센터 관련 정책 개발 및<br>운영개선<br>- 지역아동센터 현안 사항, 협의조정                                       | 겸무 | 56.8                      | 99.2 | 99.3 |
|    | 주무관 1            | - 지역아동센터 운영총괄                                                                                              |    |                           |      |      |
|    | 주무관 2            | - 아동수당 지원<br>- 어린이안전체험교실 운영<br>- 디지털격차 해소를 위한 역량강화<br>사업<br>- 지역아동센터 스마트센터블 보급<br>사업 운영                    | 겸무 | 56.8                      | 99.2 | 99.3 |
|    | 주무관 3            | - 지역아동센터 예산 총괄                                                                                             |    |                           |      |      |
|    | 주무관 4            | -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특화센터 시<br>범운영<br>- 지역아동센터 아동돌봄교사 인력<br>지원 사업                                                  |    |                           |      |      |
| 부산 | 아동청소년과<br>아동복지팀장 | - 아동복지팀 업무 총괄<br>- 아동생활시설 운영지원, 지역아동<br>센터, 드림스타트사업, 복지교사지<br>원사업 등                                        | 겸무 | 31.1                      | 25.4 | 25.9 |
|    | 주무관 1            | - 아동복지팀 내 비영리법인, 단체<br>설립허가 및 지도감독<br>- 지역아동센터 지원단 운영 지원에<br>관한 사항<br>-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br>- 드림스타트사업 지원 | 겸무 | 85.1                      | 83.2 | 84.4 |

| 시도 | 인력               | 지역아동돌봄사업 업무 내용                                                                                                                 | 비고 | 업무기여율(%)<br>(해당 사업비/총사업비) |      |      |
|----|------------------|--------------------------------------------------------------------------------------------------------------------------------|----|---------------------------|------|------|
|    |                  |                                                                                                                                |    | 2022                      | 2023 | 2024 |
| 대구 | 교육청소년과<br>아동친화팀장 | - 아동친화팀 업무 총괄<br>- 아동친화도시, 아동정책영향평가, 어린이날 행사지원, 지역아동센터, 온종일돌봄, 다함께돌봄, 아동급식, 아동수당, 드림스타트 운영 등                                   | 검무 | 21.1                      | 21.1 | 22.1 |
|    | 주무관 1            | - 지역아동센터 법인 및 시설 지도·감독<br>-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 운영<br>- 대구 온종일 사업 추진<br>- 온종일돌봄 협의체, 플랫폼 구축 및 운영<br>-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및 운영지원               | 검무 | 90.3                      | 93.3 | 92.4 |
| 인천 | 아동정책과<br>아동돌봄담당  | - 아동돌봄팀 업무 총괄<br>- 아동돌봄관련 시설 지도·감독<br>- 온종일돌봄, 아동돌봄지원, 다함께돌봄, 지역아동센터, 결식아동급식, 드림스타트사업,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 등                          | 검무 | 25.9                      | 26.7 | 26.6 |
|    | 주무관 1            | - 지역아동센터 균특보조 사업 운영 지원<br>- 지역아동센터 자체사업 운영지원                                                                                   |    |                           |      |      |
| 광주 | 아동청소년과<br>아동친화팀장 | - 아동친화팀 업무 전반<br>- 어린이 아트 앤 사이언스파크 건립, 광주광역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 어린이날 행사<br>-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지원 사업<br>-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의회구성, 다함께돌봄사업 | 검무 | 91.1                      | 91.6 | 91.4 |
|    | 주무관 1            | - 지역아동센터 운영<br>-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    |                           |      |      |
| 대전 | 아동보육과장           | - 아동보육과 업무 총괄                                                                                                                  | 검무 | 18.5                      | 3.1  | 3.4  |
|    | 주무관 1            | -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도감독<br>-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확충에 관한 사항<br>- 아동복지교사지원에 관한 사항                                                            | 검무 | 98.1                      | 86.1 | 80.9 |

| 시도 | 인력                     | 지역아동돌봄사업 업무 내용                                                                                                                                                   | 비고               | 업무기여율(%)<br>(해당 사업비/총사업비) |      |      |
|----|------------------------|------------------------------------------------------------------------------------------------------------------------------------------------------------------|------------------|---------------------------|------|------|
|    |                        |                                                                                                                                                                  |                  | 2022                      | 2023 | 2024 |
| 울산 | 복지정책과<br>아동복지팀장        | - 아동복지업무 총괄<br>- 아동복지시설, 아동수당, 아동급식,<br>자립지원, 온종일돌봄, 돌봄서비스,<br>가정위탁, 입양아동, 지역아동, 다<br>함께돌봄 등                                                                     | 겸무               | 21.7                      | 13.7 | 10.0 |
|    | 주무관 1                  | - 가정위탁, 입양아동, 지역아동센터,<br>다함께돌봄, 울산양육원, 어린이테<br>마파크                                                                                                               | 겸무               | 58.4                      | 58.8 | 53.8 |
| 세종 | 아동청소년과<br>아동친화정책<br>팀장 | - 아동친화정책담당 업무 총괄<br>- 아동친화도시, 공공형놀이터, 아동<br>놀권리보장지원, 아이돌봄사업, 아<br>동수당, 지역아동센터                                                                                    | 겸무               | 26.7                      | 23.8 | 18.4 |
|    | 주무관 1                  | - 아동수당, 지역아동센터                                                                                                                                                   |                  |                           |      |      |
|    | 직원                     | - 지역아동센터 업무지원                                                                                                                                                    |                  |                           |      |      |
| 경기 | 아동돌봄과<br>아동돌봄팀장        | - 아동돌봄팀 업무 총괄<br>-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추진, 지역<br>아동센터, 가족돌봄수당                                                                                                             | 겸무               | 55.6                      | 63.9 | 62.4 |
|    | 주무관 1                  | - 지역아동센터 운영                                                                                                                                                      |                  |                           |      |      |
|    | 주무관 2                  | - 지역아동센터 업무                                                                                                                                                      |                  |                           |      |      |
|    | 주무관 3                  | - 지역아동센터 지원업무                                                                                                                                                    |                  |                           |      |      |
| 강원 | 육아지원팀장                 | - 육아지원팀 업무 총괄관리<br>- 육아기본수당 등 아동 관련 수당<br>지원 총괄<br>- 다함께돌봄센터 및 지역아동센터<br>협의회 관리<br>- 팀 소관 주요 계획 수립 및 업무<br>총괄                                                    | 겸무               | 80.8                      | 80.8 | 81.6 |
|    | 주무관 1                  | -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 교사 운영<br>- 다함께돌봄사업 확충 및 운영지원<br>-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기능보강사<br>업 추진<br>- 지역아동센터 강원지원단 운영지<br>원 관리<br>- 지역협력형 아동돌봄사업 추진<br>- 온종일 돌봄체계 원스톱 서비스<br>및 학교돌봄터 지원 | 겸무 <sup>1)</sup> | 79.4                      | 84.2 | 82.9 |

150 유사 사회복지사업 전달비용과 지출효율성

| 시도 | 인력     | 지역아동돌봄사업 업무 내용                                                                                                                                                           | 비고               | 업무기여율(%)<br>(해당 사업비/총사업비) |      |      |
|----|--------|--------------------------------------------------------------------------------------------------------------------------------------------------------------------------|------------------|---------------------------|------|------|
|    |        |                                                                                                                                                                          |                  | 2022                      | 2023 | 2024 |
| 충북 | 아동복지팀장 | - 아동복지팀 업무 총괄<br>- 다함께돌봄, 아동 관련 법인, 아동 학대, 다함께돌봄,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지역아동 센터, 아동급식, 아동발달지원계좌                                                                           | 겸무               | 29.3                      | 36.5 | 34.9 |
|    | 주무관 1  | -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 아동발달 지원계좌                                                                                                                                                | 겸무 <sup>1)</sup> | 79.4                      | 84.2 | 82.9 |
| 충남 | 아동돌봄팀장 | - 아동돌봄팀 업무 총괄<br>- 아동정책, 아동복지, 아동돌봄, 힘 쉼찬남 아동돌봄, 충남형 온종일 돌봄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 동센터, 아동수당 급여 등                                                                               | 겸무               | 17.7                      | 22.7 | 23.0 |
|    | 주무관 1  | -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점검<br>- 지역아동센터 충남지원단 지원 및 관리<br>-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 운영<br>- 아동돌봄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br>- 아동돌봄시설 기능보강지원<br>- 아동심리상담 전문가양성 및 아동 역사 창의성 교육<br>- 아동수당 급여 지원<br>- 아동급식 지원   | 겸무 <sup>1)</sup> | 79.4                      | 84.2 | 82.9 |
| 전북 | 아동보호팀장 | - 아동보호업무 종합기획<br>-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br>- 자립준비청소년지원 협력체계구축<br>- 아동복지시설 기능전환<br>- 아동복지 신규시책 발굴                                                                                 | 겸무               | 27.2                      | 42.2 | 42.6 |
|    | 주무관 1  | - 아동정책 시행계획 수립지원<br>- 아동정책 영향평가 수행<br>- 지방자치단체 합동 평가 대응<br>-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및 지도감독<br>- 지역아동센터 위원회 운영<br>- 지역아동센터지원단<br>-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운영지원<br>- 돌봄협의체, 온종일돌봄회계<br>- 아동복지교사지원 | 겸무 <sup>1)</sup> | 79.4                      | 84.2 | 82.9 |

| 시도 | 인력             | 지역아동돌봄사업 업무 내용                                                                                                                                | 비고               | 업무기여율(%)<br>(해당 사업비/총사업비) |      |      |
|----|----------------|-----------------------------------------------------------------------------------------------------------------------------------------------|------------------|---------------------------|------|------|
|    |                |                                                                                                                                               |                  | 2022                      | 2023 | 2024 |
| 전남 | 아동복지팀장         | - 아동복지 업무 전반<br>- 아동정책 종합계획, 아동친화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아동복지법인, 양육시설 일시보호 비용 지원, 요보호아동, 자립준비청년, 학대피해 아동, 아동학대, 가정위탁아동, 아동발달지원계좌, 희망디딤돌센터 운영지원, 아동수당 등 | 겸무               | 18.1                      | 21.2 | 22.4 |
|    | 주무관 1          | -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및 지도감독<br>- 다함께돌봄사업<br>- 학교돌봄터 사업<br>- 결식아동 급식 지원<br>- 실내놀이환경 조성지원                                                              | 겸무               | 70.5                      | 72.5 | 73.6 |
| 경북 | 교육청소년과 팀장      | - 교육정책팀 업무 총괄<br>- 아동학대, 지역아동센터, 자립지원 전담기관, 아동복지시설, 아동수당, 드림스타트, 아동발달지원계좌                                                                     | 겸무               | 31.1                      | 40.9 | 39.2 |
|    | 주무관 1          | - 지역아동센터, 자립지원전담기관 등                                                                                                                          | 겸무               | 96.5                      | 96.3 | 95.9 |
| 경남 | 보육정책과 아동시설 파트장 | - 마을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원(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등)<br>- 아동친화담당 운영위원회 지원<br>- 지역아동센터 운영 내실화 업무<br>- 마을돌봄 관련 시책 발굴 추진<br>- 드림스타트 지원                                | 겸무               | 33.3                      | 31.6 | 29.2 |
|    | 주무관 1          | - 아동 관련 사회복지법인 인허가 등 관리<br>- 마을돌봄 추진계획 수립 및 지도 점검 추진<br>-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 겸무 <sup>1)</sup> | 79.4                      | 84.2 | 82.9 |
| 제주 | 아동친화팀장         | - 아동친화도시,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공공형 실내 어린이 놀이터, 아동급식, 아동정책, 보호종료아동, 아동학대, 학대피해, 자립지원시설 운영 관리                                                       | 겸무               | 23.3                      | 19.8 | 19.7 |

| 시도 | 인력    | 지역아동돌봄사업 업무 내용                                                                                                     | 비고               | 업무기여율(%)<br>(해당 사업비/총사업비) |      |      |
|----|-------|--------------------------------------------------------------------------------------------------------------------|------------------|---------------------------|------|------|
|    |       |                                                                                                                    |                  | 2022                      | 2023 | 2024 |
|    | 주무관 1 | - 다함께돌봄센터, 돌봄협의체 운영 지원<br>-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br>- 지역연계형 초등 주말돌봄센터 운영지원<br>-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 조성<br>- 아등급식<br>-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 겸무 <sup>1)</sup> | 79.4                      | 84.2 | 82.9 |

주: 담당업무의 예산액 구분이 어려운 경우, 기여율은 해당 직책 기여율 평균값을 적용함.

출처: “조직도”, 서울특별시, 2024.10.14. 검색, <https://org.seoul.go.kr/org/orgChart.do>; “서울시 2022~2024년 예산서(세출예산)”, 서울특별시, 2024.10.14. 검색, [https://news.seoul.go.kr/gov/archives/category/tax-news\\_c1/info\\_budget\\_c1/data\\_document\\_budget-n2](https://news.seoul.go.kr/gov/archives/category/tax-news_c1/info_budget_c1/data_document_budget-n2); “조직도”, 부산광역시, 2024.10.14. 검색, <https://www.busan.go.kr/bhorganization01>; “세입세출예산서”, 부산광역시, 2024.10.14. 검색, <https://www.busan.go.kr/ghstat>; “행정조직도”, 대구광역시, 2024.10.14. 검색, [https://www.daegu.go.kr/index.do?menu\\_id=00000248](https://www.daegu.go.kr/index.do?menu_id=00000248); “세입세출예산서”, 대구광역시, 2024.10.14. 검색, <https://jumin.daegu.go.kr/budget/information/informationBudgetBill.do>; “시 조직도”, 인천광역시, 2024.10.14. 검색, <https://www.incheon.go.kr/IC040221>; “세입세출예산서”, 인천광역시, 2024.10.14. 검색, <https://www.incheon.go.kr/open/OPEN030101>; “조직도”, 광주시청, 2024.10.14. 검색, <https://www.gjcity.go.kr/portal/contents.do?mId=0103010000>; “세입세출결산서”, 광주시청, 2024.10.14. 검색, <https://www.gjcity.go.kr/portal/contents.do?mId=0303030000>; “조직도”, 세종특별자치시청, 2024.10.14. 검색, [https://www.sejong.go.kr/kor/sub01\\_010101.do#sub01\\_010101](https://www.sejong.go.kr/kor/sub01_010101.do#sub01_010101); “세종특별자치시 재정정보 공개 예산정보”, 세종특별자치시청, 2024.10.14. 검색, [https://www.sejong.go.kr/prog/yesanInfo/finance/sub05\\_01/list.do](https://www.sejong.go.kr/prog/yesanInfo/finance/sub05_01/list.do); “경기도 조직도”, 경기도청, 2024.10.14. 검색, <https://www.gg.go.kr/org/orgChart.do?menuId=1808>; “세입세출예산서”, 경기도청, 2024.10.14. 검색, <https://www.gg.go.kr/bbs/board.do?bsIdx=515&menuId=1946#page=1>; “조직도”, 강원특별자치도, 2024.10.14. 검색, <https://state.gwd.go.kr/portal/introduce/guidance/organization>; “세입세출예산서”, 강원특별자치도, 2024.10.14. 검색, <https://state.gwd.go.kr/portal/administration/finance/budget/2024>; “조직도”, 전북특별자치도, 2024.10.14. 검색, [https://www.jeonbuk.go.kr/index.jeonbuk?menuCd=DOM\\_000000101003001001](https://www.jeonbuk.go.kr/index.jeonbuk?menuCd=DOM_000000101003001001); “2024년 예산”, 전북특별자치도, 2024.10.14. 검색, [https://www.jeonbuk.go.kr/index.jeonbuk?menuCd=DOM\\_000000103001004050](https://www.jeonbuk.go.kr/index.jeonbuk?menuCd=DOM_000000103001004050); “2022년 예산”, 전북특별자치도, 2024.10.14. 검색, [https://www.jeonbuk.go.kr/index.jeonbuk?menuCd=DOM\\_000000103001004006](https://www.jeonbuk.go.kr/index.jeonbuk?menuCd=DOM_000000103001004006); “조직도”, 경상남도, 2024.10.14. 검색, [https://www.gyeongnam.go.kr/index.gyeongnam?menuCd=DOM\\_000000137001001000](https://www.gyeongnam.go.kr/index.gyeongnam?menuCd=DOM_000000137001001000);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서, 경상남도, 2024.10.14. 검색, [https://www.gyeongnam.go.kr/index.gyeongnam?menuCd=DOM\\_000000138003005001&searchYear=2024](https://www.gyeongnam.go.kr/index.gyeongnam?menuCd=DOM_000000138003005001&searchYear=2024);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서, 경상남도, 2024.10.14. 검색, [https://www.gyeongnam.go.kr/index.gyeongnam?menuCd=DOM\\_000000138003005001&searchYear=2022](https://www.gyeongnam.go.kr/index.gyeongnam?menuCd=DOM_000000138003005001&searchYear=2022)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부표 1-2〉 다함께돌봄사업 시도 담당 인력 및 업무기여율(%)

| 시도 | 인력            | 다함께돌봄사업 관련 업무 내용                                                                                                                                  | 비고 | 업무기여율(%)<br>(해당 사업비/총사업비) |                   |                   |
|----|---------------|---------------------------------------------------------------------------------------------------------------------------------------------------|----|---------------------------|-------------------|-------------------|
|    |               |                                                                                                                                                   |    | 2022                      | 2023              | 2024              |
| 서울 | 키움센터팀장        | - 키움센터팀 업무 총괄<br>- 일반, 융합, 거점형 키움센터 운영 등 추진<br>- 키움센터 늘봄학교 연계 추진                                                                                  |    |                           |                   |                   |
|    | 주무관 1         | - 키움센터 늘봄학교 연계사업 총괄                                                                                                                               |    |                           |                   |                   |
|    | 주무관 2         | - 일반, 융합형 키움센터 설치 운영 계획 수립                                                                                                                        |    |                           |                   |                   |
|    | 주무관 3         | - 키움센터 운영비(임차료) 관련 업무                                                                                                                             |    |                           |                   |                   |
|    | 주무관 4         | - 거점형 키움센터 운영<br>- 늘봄학교 관련 연계 지원<br>- 늘봄학교 관련 유관기관 협력<br>- 학교 돌봄터 지원 사업                                                                           | 겸무 | 100<br>(늘봄 예산 없음)         | 100<br>(늘봄 예산 없음) | 100<br>(늘봄 예산 없음) |
| 부산 | 아동청소년과 아동친화팀장 | - 아동친화팀장 업무 총괄<br>- 아동생활시설 운영지원,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사업, 복지교사지원사업 등                                                                                      | 겸무 | 7.3                       | 6.7               | 6.6               |
|    | 주무관 1         | - 다함께돌봄센터 업무 운영<br>-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사항<br>- 아동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 아동 보호구역에 관한 사항<br>- 어린이 박람회 행사에 관한 사항<br>- 아동권리 교육, 모니터링, 아동친화도시 홍보에 관한 사항 등 총 9개 업무 | 겸무 | 7.3                       | 6.7               | 6.6               |
| 대구 | 교육청소년과 아동친화팀장 | - 아동친화팀 업무 총괄<br>- 아동친화도시, 아동정책 영향평가, 어린이날 행사지원, 지역아동센터, 온종일돌봄, 다함께돌봄, 아동급식, 아동수당, 드림스타트 운영 등                                                     | 겸무 | 2.3                       | 1.5               | 1.8               |
|    | 주무관 1         | - 지역아동센터 법인 및 시설 지도·감독<br>-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 운영<br>- 대구 온종일 사업 추진<br>- 온종일돌봄 협의체, 플랫폼 구축 및 운영<br>-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및 운영지원                                  | 겸무 | 9.7                       | 6.7               | 7.6               |

154 유사 사회복지사업 전달비용과 지출효율성

| 시도 | 인력                     | 다함께돌봄사업 관련 업무 내용                                                                                                                                                             | 비고 | 업무기여율(%)<br>(해당 사업비/총사업비) |      |      |
|----|------------------------|------------------------------------------------------------------------------------------------------------------------------------------------------------------------------|----|---------------------------|------|------|
|    |                        |                                                                                                                                                                              |    | 2022                      | 2023 | 2024 |
| 인천 | 아동정책과<br>아동돌봄담당        | - 아동돌봄팀 업무 총괄<br>- 아동돌봄 관련 시설 지도·감독                                                                                                                                          | 겸무 | 4.4                       | 4.6  | 5.4  |
|    | 주무관 1                  | - 아동돌봄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br>-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광역돌봄협의회 관련 업무<br>- 아동돌봄지원조례 제·개정에 관한 사항<br>-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및 운영 지원(균특 및 자체사업)<br>- 학교·지자체 협업모델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br>- 돌봄사업 현안업무 추진(국정평가 등) | 겸무 | 4.4                       | 4.6  | 5.4  |
| 광주 | 아동청소년과<br>아동친화팀장       | - 아동친화팀 업무 전반<br>- 어린이 아트앤 사이언스파크 건립, 광주광역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조례, 어린이날 행사<br>-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br>-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의회구성, 다함께돌봄사업                                                  | 겸무 | 7.9                       | 7.7  | 8.1  |
|    | 주무관 1                  |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br>- 아동청소년 의회구성 및 운영<br>- 다함께돌봄사업                                                                                                                           | 겸무 | 87.9                      | 91.8 | 94.1 |
| 대전 | 아동보육과                  | - 아동보육과 업무 총괄                                                                                                                                                                | 겸무 | 0.4                       | 0.5  | 0.8  |
|    | 주무관 1                  | -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도감독<br>-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확충에 관한 사항<br>- 아동복지교사지원에 관한 사항                                                                                                          | 겸무 | 1.9                       | 13.9 | 19.1 |
| 울산 | 복지정책과<br>아동복지팀장        | - 아동복지업무 총괄                                                                                                                                                                  | 겸무 | 6.9                       | 4.2  | 3.8  |
|    | 주무관 1                  | - 가정위탁, 입양아동,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 울산양육원, 어린이테마파크                                                                                                                                  | 겸무 | 18.6                      | 17.9 | 20.3 |
| 세종 | 아동청소년과<br>아동친화정책<br>팀장 | - 아동친화정책담당 업무 총괄<br>- 아동친화도시, 공공형놀이터, 아동놀권리보장지원, 아이돌봄사업, 아동수당, 지역아동센터                                                                                                        | 겸무 | 5.8                       | 7.8  | 7.2  |

| 시도 | 인력               | 다함께돌봄사업 관련 업무 내용                                                                                                                                     | 비고 | 업무기여율(%)<br>(해당 사업비/총사업비) |      |      |
|----|------------------|------------------------------------------------------------------------------------------------------------------------------------------------------|----|---------------------------|------|------|
|    |                  |                                                                                                                                                      |    | 2022                      | 2023 | 2024 |
|    | 주무관 1            | - 어린이날 행사, 다함께돌봄센터, 아동돌봄사업 등                                                                                                                         |    | 10.4                      | 10.3 | 8.9  |
| 경기 | 아동돌봄과<br>언제나돌봄팀장 | - 언제나돌봄팀 총괄<br>- 아동돌봄센터, 학교돌봄터                                                                                                                       | 겸무 | 92.3                      | 100  | 96.0 |
|    | 주무관 1            | - 경기도 아동돌봄광역지원센터 업무                                                                                                                                  |    |                           |      |      |
|    | 주무관 2            | - 다함께돌봄센터(도비), 학교돌봄터                                                                                                                                 | 겸무 | 92.3                      | 100  | 96.0 |
|    | 주무관 3            | - 아동돌봄센터                                                                                                                                             |    |                           |      |      |
| 강원 | 육아지원팀장           | - 육아지원팀 업무 총괄관리<br>- 육아기본수당 등 아동 관련 수당 지원 총괄<br>- 다함께돌봄센터 및 지역아동센터 협의회 관리<br>- 팀 소관 주요 계획 수립 및 업무 총괄                                                 | 겸무 | 14.0                      | 17.1 | 18.4 |
|    | 주무관 1            | -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운영<br>- 다함께돌봄사업 확충 및 운영지원<br>-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 추진<br>- 지역아동센터 강원지원단 운영지원 관리<br>- 지역협력형 아동돌봄사업 추진<br>- 온종일 돌봄체계 원스톱 서비스 및 학교돌봄터 지원 | 겸무 | 14.0                      | 17.1 | 18.4 |
| 충북 | 아동복지팀장           | - 아동복지팀 업무 총괄<br>- 다함께돌봄, 아동 관련 법인, 아동학대, 다함께돌봄,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 아동발달지원계좌                                                         | 겸무 | 5.7                       | 7.2  | 6.1  |
|    | 주무관 1            | - 다함께돌봄, 아동 관련 법인 등                                                                                                                                  | 겸무 | -                         | -    | -    |
| 충남 | 아동돌봄팀장           | - 아동돌봄팀 업무 총괄<br>- 아동정책, 아동복지, 아동돌봄, 힘센충남 아동돌봄, 충남형 온종일 돌봄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아동수당 급여 등                                                             | 겸무 | 1.8                       | 4.2  | 4.4  |

| 시도 | 인력     | 다함께돌봄사업 관련 업무 내용                                                                                                                                                                                                                                                                                                          | 비고 | 업무기여율(%)<br>(해당 사업비/총사업비) |      |      |
|----|--------|---------------------------------------------------------------------------------------------------------------------------------------------------------------------------------------------------------------------------------------------------------------------------------------------------------------------------|----|---------------------------|------|------|
|    |        |                                                                                                                                                                                                                                                                                                                           |    | 2022                      | 2023 | 2024 |
|    | 주무관 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힘센충남 풀케어·도자체 아동돌봄 사업 운영·관리</li> <li>- 힘센충남 마을돌봄터</li> <li>- 365×24 거점아동돌봄센터</li> <li>- 충남형 온종일 돌봄센터</li> <li>- 충남형 초등돌봄교실 연장운영</li> <li>-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및 점검</li> <li>- 다함께돌봄센터 교육 프로그램 운영</li> <li>- 학교돌봄터 운영 및 점검</li> <li>- 공공형 키즈카페 설치 및 운영</li> <li>- 어린이주간 운영지원</li> </ul> | 겸무 | 1.8                       | 4.2  | 4.4  |
| 전북 | 아동보호팀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보호업무 종합기획</li> <li>-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li> <li>- 자립준비청소년지원 협력체계구축</li> <li>- 아동복지시설 기능전환</li> <li>- 아동복지 신규시책 발굴</li> </ul>                                                                                                                                                        | 겸무 | 4.4                       | 8.7  | 7.5  |
|    | 주문관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정책시행계획 수립지원</li> <li>- 아동정책영향평가 수행</li> <li>-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대응</li> <li>-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및 지도감독</li> <li>- 지역아동센터 위원회 운영</li> <li>- 지역아동센터지원단</li> <li>-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운영지원</li> <li>- 돌봄협의체, 온종일돌봄체계</li> <li>- 아동복지 교사 지원</li> </ul>                                                 | 겸무 | 13.9                      | 17.1 | 15.0 |
| 전남 | 아동복지팀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복지 업무 전반</li> <li>- 아동정책 종합계획, 아동친화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아동복지법인, 양육시설 일시보호 비용 지원, 요보호아동, 자립준비청년, 학대피해 아동, 아동학대, 가정위탁아동, 아동발달지원계좌, 희망디딤돌센터 운영지원, 아동수당 등</li> </ul>                                                                                                                     | 겸무 | 1.6                       | 1.7  | 1.9  |
|    | 주무관 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및 지도감독</li> <li>- 다함께돌봄사업</li> <li>- 학교돌봄터 사업</li> <li>- 결식아동급식 지원</li> <li>- 실내놀이환경 조성지원</li> </ul>                                                                                                                                                                 | 겸무 | 6.0                       | 5.7  | 6.1  |

| 시도 | 인력             | 다함께돌봄사업 관련 업무 내용                                                                                                                            | 비고 | 업무기여율(%)<br>(해당 사업비/총사업비) |      |      |
|----|----------------|---------------------------------------------------------------------------------------------------------------------------------------------|----|---------------------------|------|------|
|    |                |                                                                                                                                             |    | 2022                      | 2023 | 2024 |
| 경북 | 아동돌봄과 팀장       | - 아동돌봄정책업무 총괄<br>- 돌봄정책, 아이돌봄서비스, K-보듬,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돌봄, 대학생서포터즈 운영, 처우 개선비                                                                  | 겸무 | 9.3                       | 8.7  | 6.6  |
|    | 주무관 1          | - 예산, 다함께돌봄                                                                                                                                 |    |                           |      |      |
| 경남 | 보육정책과 아동시설 파트장 | - 주요 업무 계획 수립 및 도의회 관련 업무<br>- 마을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원(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등)<br>- 아동친화담당 운영위원회 지원<br>- 지역아동센터 운영 내실화 업무<br>- 마을돌봄 관련 시책 발굴 추진<br>- 드림스타트 지원 | 겸무 | 6.7                       | 4.2  | 3.5  |
|    | 주무관 1          | - 결식아동 급식 지원<br>- 아동급식 위원회 운영<br>- 다함께돌봄센터 사업 추진<br>- 우리마을 아이돌봄사업 추진<br>- 아동수당 급여 지원<br>-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                                      | 겸무 | 6.7                       | 4.2  | 3.5  |
| 제주 | 아동친화팀장         | - 아동친화도시,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공공형 실내 어린이 놀이터, 아동급식, 아동정책, 보호종료아동, 아동학대, 학대피해, 자립지원시설 운영 관리                                                     | 겸무 | 2.9                       | 2.5  | 2.7  |
|    | 주무관 1          | - 다함께돌봄센터, 돌봄협의체 운영 지원<br>-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br>- 지역연계형 초등주말돌봄센터 운영지원<br>-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 조성<br>- 아동급식<br>-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                          | 겸무 | 2.9                       | 2.5  | 2.7  |

주: 다함께돌봄센터 담당과(팀)의 업무 중 아동수당 업무에 대한 예산액은 제외함.

출처: “조직도”, 서울특별시, 2024.10.14. 검색, <https://org.seoul.go.kr/org/orgChart.do>;  
“서울시 2022~2024년 예산서(세출예산)”, 서울특별시, 2024.10.14. 검색, [https://news.seoul.go.kr/gov/archives/category/tax-news\\_c1/info\\_budget\\_c1/data\\_document\\_budget-n2](https://news.seoul.go.kr/gov/archives/category/tax-news_c1/info_budget_c1/data_document_budget-n2);  
“조직도”, 부산광역시, 2024.10.14. 검색, <https://www.busan.go.kr/bhorganization01>;  
“세입세출예산서”, 부산광역시, 2024.10.14. 검색, <https://www.busan.go.kr/ghstat>;  
“행정조직도”, 대구광역시, 2024.10.14. 검색, [https://www.daegu.go.kr/index.do?menu\\_id=00000248](https://www.daegu.go.kr/index.do?menu_id=00000248);  
“세입세출예산서”, 대구광역시, 2024.10.14. 검색, <https://jumin.daegu.go.kr/budget/information/informationBudgetBill>.

do: “시 조직도”, 인천광역시, 2024.10.14. 검색, <https://www.incheon.go.kr/IC040221>; “세입세출예산서”, 인천광역시, 2024.10.14. 검색, <https://www.incheon.go.kr/open/OPEN030101>; “조직도”, 광주시청, 2024.10.14. 검색, <https://www.gjcity.go.kr/portal/contents.do?mId=0103010000>; “세입세출결산서”, 광주시청, 2024.10.14. 검색, <https://www.gjcity.go.kr/portal/contents.do?mId=0303030000>; “조직도”, 세종특별자치시청, 2024.10.14. 검색, [https://www.sejong.go.kr/kor/sub01\\_010101.do#sub01\\_010101](https://www.sejong.go.kr/kor/sub01_010101.do#sub01_010101); “세종특별자치시 재정정보 공개 예산정보”, 세종특별자치시청, 2024.10.14. 검색, [https://www.sejong.go.kr/prog/yesanInfo/finance/sub05\\_01/list.do](https://www.sejong.go.kr/prog/yesanInfo/finance/sub05_01/list.do); “경기도 조직도”, 경기도청, 2024.10.14. 검색, <https://www.gg.go.kr/org/orgChart.do?menuId=1808>; “세입세출예산서”, 경기도청, 2024.10.14. 검색, <https://www.gg.go.kr/bbs/board.do?bsIdx=515&menuId=1946#page=1>; “조직도”, 강원특별자치도, 2024.10.14. 검색, <https://state.gwd.go.kr/portal/introduce/guidance/organization>; “세입세출예산서”, 강원특별자치도, 2024.10.14. 검색, <https://state.gwd.go.kr/portal/administration/finance/budget/2024>; “조직도”, 전북특별자치도, 2024.10.14. 검색, [https://www.jeonbuk.go.kr/index.jeonbuk?menuCd=DOM\\_000000101003001001](https://www.jeonbuk.go.kr/index.jeonbuk?menuCd=DOM_000000101003001001); “2024년 예산”, 전북특별자치도, 2024.10.14. 검색, [https://www.jeonbuk.go.kr/index.jeonbuk?menuCd=DOM\\_000000103001004050](https://www.jeonbuk.go.kr/index.jeonbuk?menuCd=DOM_000000103001004050); “2022년 예산”, 전북특별자치도, 2024.10.14. 검색, [https://www.jeonbuk.go.kr/index.jeonbuk?menuCd=DOM\\_000000103001004006](https://www.jeonbuk.go.kr/index.jeonbuk?menuCd=DOM_000000103001004006); “조직도”, 경상남도, 2024.10.14. 검색, [https://www.gyeongnam.go.kr/index.gyeong?menuCd=DOM\\_000000137001001000](https://www.gyeongnam.go.kr/index.gyeong?menuCd=DOM_000000137001001000);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서, 경상남도, 2024.10.14. 검색, [https://www.gyeongnam.go.kr/index.gyeong?menuCd=DOM\\_000000138003005001&searchYear=2024](https://www.gyeongnam.go.kr/index.gyeong?menuCd=DOM_000000138003005001&searchYear=2024);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서, 경상남도, 2024.10.14. 검색, [https://www.gyeongnam.go.kr/index.gyeong?menuCd=DOM\\_000000138003005001&searchYear=2022](https://www.gyeongnam.go.kr/index.gyeong?menuCd=DOM_000000138003005001&searchYear=2022)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 Abstract

### **Redundant Program Spending and Its Implications for Welfare Efficiency**

**: Focusing on Childcare Support Services in Korea**

Project Head: Ko, Jayee

Amid increasing fiscal pressure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s seeking ways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welfare spending. A growing concern is the presence of redundant programs that serve similar purposes and target groups but are managed separately by different agencie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management of such overlapping programs and assesses their cost efficiency, focusing on childcare services as a representative case.

Based on the 2023 budget allocations for each program, we analyzed three major initiatives: Community Childcare Centers, “All Together” Care Centers, and Youth After-school Academies. Delivery costs ranged from 1.5% to 3.8% of total budgets, while estimated losses due to unused funds and idle resources reached up to 15.8% in some case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greater efficiency could be achieved through program integration, especially where service overlaps are significant.

To minimize fiscal waste and enhance policy coherence, the study highlights the need for clear criteria, standardized evaluation procedures, and ongoing oversight in the management of

redundant programs. While subject to data limitations, this analysis offers a practical framework for improving expenditure efficiency in the social welfare sector.

Key words: welfare efficiency, Redundant programs, Childcare policy